유니텔연수원

국경없는 교실을 위한 다문화 교육

〈알림〉
본 자료는 유니텔연수원에 저작권이 있는 강의 자료로써 학습 보조자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여 법적인 조치를 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1강. 다문화 사회의 이해]

1. 다문화란 무엇인가?

다문화란 무엇인가? 다문화는 다인종, 다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와 국가에서 문화의 중심이 되는 주류문화에 대한 하위 개념으로서 위계 관계 혹은 다양성의 존중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다문화 공동체사회는, 서로 다른 문화의 이해와 존중, 노력을 통하여 형성된다. 문화는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교류, 충돌, 전이, 지배, 호환 등의 과장을 통해 발전 한다. 단일 민족문화란 지역 경계 내이든 밖이든 사실상 그 주변과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독립적이지 않고 주변 문화와 관계적이며 상호 소통적임을 알 수 있다. 문화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서로 다름을 통해서 배우고 이러한 다름의 문화적 교류가 우리 사회를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숙한 성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문화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고정관념, 편견, 선입관을 내려놓는 일에서부터 출발 한다.

2. 우리 사회의 다문화 현상

1) 저 출산

2008년 한국의 출산율은 1.2명으로서 홍콩 다음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낮다. 한국이 세계 최저의 저 출산 국가가 되고 있다. 2002년 국제결혼의 증가로 출산율이 잠깐 높아졌다가 현재는 다시 저 출산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저 출산은 급격히 한국 사회로 이주민을 불러들이게 된다. 인구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출산의 증가 추세라면, 인구 대비 외국인 체류자가 2010년 2.8%, 2020년 5%, 2030년 6%, 2040년 7.4%, 2050년 9.2%로 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민사회로 분류하는 외국인 10% 시대가 그리 머지않은 셈이다. 특히 50년 후 한국 인구는 3천만 명, 200년 후는 500만 명으로 인구가 줄어든다.

지금과 같은 노인인구 급증과 노동인력 부족으로 10년 내에 한국의 경제구조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65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도 2005년 38세에서 2020년 41.8세, 2030년 43.1세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50년에 한국 사회는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이 되는 전형적인 초 고령 사회의 인구 구조가 된다. 50세 이상 취업자가 노동인구의 50%가 넘어선다.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1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부족 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즉 매년 20만 명의 인구가 외부에서 유입이 되어야 한국사회가 경제적, 복지적인 적정 인구수인 5천만 명을 유지한다.

선진국의 전체 인구는 2050년까지 현재의 12억 명에서 큰 변화가 없지만 50여 개 저개발국·개도국은 현재 53억 명에서 78억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개도국의 인구증가는 곧 바로 식량부족,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진다. 국내 저 출산 고령화는 이러한 개도국의 인구 흡인 요인이 된다.

2) 국제결혼과 그 자녀의 증가

한국사회의 국제결혼 비중도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결혼한 10쌍 중 한 쌍 가까이가 외국인과 맺어지는 '국제결혼 10% 시대'다. 2003년 현재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의 8.4%(2만5658건)에 달했다. 국제결혼 가정은 2050년 81만 명으로 증가 할 것으로 추정하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며, 그 자녀들도 2020년이면 167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절반 가까이가 국제결혼을 선택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다.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다. 변화에 따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은 저 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국내 인구의 변동과도 연계 된다. 이주민의 증가는 당연한 것이고, 이주민의 증가로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게 된다. 지금과 같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문화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3) 국내 이주민의 증가

2050년 이면 한국 체류 외국인 400만 추정(10%)된다. 1995년 269,641명이던 국내 체류외국인이 2005년도 747,467명으로 지난 10년 사이 177% 증가하였다. 특히 2007년 말 국내 체류외국인은 100만 명을 넘어서며 우리나라 총인구의 2%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체류외국인의 급격한 증가는 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다. 국가별 체류외국인은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의 순이며 중국은 동포에 대한 우대정책인 취업관리제 및 결혼이민자의 수, 미국은 외국적 동포의 방문동거와 주한 미군의 수, 일본은 관광 통과 및 국민의 배우자 수, 베트남과 필리핀은 고용허가제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4) 국제 이주 현상의 증가

이민 규제가 세계적으로 낮아지면서 이주 형상이 높아지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1996년 국제적 이민 규제율이 40%였으나 2005년에는 22%로 낮아졌다. 특히 선진국의 이민규제가 60%에서 12%로 대폭 낮아졌다. 이민국의 경우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96년 52개국이던 것이 2005년엔 75개국으로 늘어났다. 전 세계 이민자 2억 명 중 60%가 선진국으로의 이민이다. 이민자들은 주로 미국(4천만 명), 러시아(1,210만 명), 독일(1,001만 명)등지로 이주한다. 특히 일본, 유럽의 경우 2010~2030년 자국민의 인구증가율이 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192개국 중 이민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 한국 밖에 없다. 일부 학자들은 '한국과 일본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극단적인 전망까지 내놓았다.
세계 이주자 규모는 1970년 8150만 명에서 2000년 1억7490만 명으로 30년 만에 2배 이상 폭증했다. OECD 국제이주 2007년 보고서, 총인구에서 이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일랜드가 1996년 6.9%에서 2005년 11%로 4%포인트 이상 늘었고, 노르웨이도 5.6%에서 8.2%에 이르렀다.

5) 내국인의 해외 이주의 증가

2000년 이후 한국에서 매년 2만5000명 정도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민이 늘면서 각국이 인재 유출로 고민하고 있다.

3. 다문화가 필요한 이유

새로운 이주민의 증가는 국민의 정체성에 도전을 주고 있다.
한 신문에서 '누가 가장 한국인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피부색이 다른 결혼이주자 자녀 55.6% ▲한국에 취업한 조선족 18.0% ▲한국인과 결혼해 귀화한 외국인 15.9% ▲해외 입양된 한국인 7.5% ▲한국어를 못하는 재외동포 2세 3.0% 순으로 꼽았다. 한국인으로 판단하는 기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당사자의 인식 94.3% ▲국적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보유 여부 89.4% ▲혈통 83.1% ▲한국어 구사 여부 74.3% ▲태생지 74.3% 순으로 높았다.

또 '당신 자녀의 학교에서 결혼이주자 자녀가 반장이 되어도 괜찮으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2.2%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베트남인 또는 필리핀인과 어느 정도 사회적 관계를 허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가까운 이웃(39.6%) ▲절친한 친구(36.2%) ▲직장 동료(14.0%) ▲배우자(7.2%) ▲자녀의 배우자(3.0%) 순이었다. 아직 외국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 내국인(사례중심)

(1) 타문화의 차별 만연

2007년 8월 유엔 인종철폐위원회가 "한국은 단일민족국가라는 의식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이 순수혈통을 내세우면서 은연중 인종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현실적인 예로 외국 여성배우자들에 대한 잠재적인 학대를 지적했다. 우리 농어촌 남성들이 외국인 신부를 받아들이면서 언어와 관습 등의 차이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차별과 배제의 문화의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적 접근이 우리 사회에 절실히 요청된다.

우리의 현실은 이주민들이 제대로 대우받지도, 그들의 인권이 지켜지지도 못한다. 임금체불은 기본이고, 욕설과 폭력과 구타, 산업재해를 당해도 제대로 치료해 주지 않는다. 심지어 다친 사람을 회사에서 몰아내기도 한다.'자신의 노동을 팔 자유가 있는' 개방된 시장에서 노동자는 시장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기업인들도 격심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은 임금을 주고 이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관계의 논리는 이주 노동자들을 저임금 시장으로 내몰아가고, 기업인들은 신념, 동기, 의도에 관계없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이윤을 증가시키도록 강요당한다. 결혼 이민자들의 이혼율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가정폭력과 비인간적 대우, 문화적 차별 등으로 한국까지 시집온 이들이 집을 나가고 있다. 이들을 받아 주는 곳이 부족하다.

(2) 타문화권 출신자의 범죄노출

① 위장결혼

중국인 여성 2명이 국적 취득 목적 배모(47)·박모(47)씨에게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주고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검거 됐다. 국내 취업 목적의 위장 결혼이었다. 이 사실은 수천만 원의 사례비를 받아 챙긴 혐의 알선 책 서모(57,여)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들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한국 입국 희망 중국 교포들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아왔다. 생활이 곤란하거나 직업이 없는 내국인에게 '중국 동포와 결혼하면 공짜 외국여행과 400만 원의 사례비를 주겠다'며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2천만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2008. 8.)

한편 위장결혼을 하였어도 그것이 사랑으로 승화됐다면 `무죄'가 될도 한다. 취업 위해 한국인 박모 씨와 2003년 5월 위장 결혼한 혐의 기소 중국 동포 전모(46,여) 소심 선고공판 벌금 100만원 선고 원심 파기 무죄선고를 하였다. 중국 여자 측이 통상 700만~8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주었고, 한국 남자 측은 사례비로 300만원 정도를 받았다. 그러나 중국출신 여성이 "돈을 줄 형편이 못된다"는 전 씨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듣고 박 씨가 돈을 받지 않기로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한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지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2008.11. 7)

② 범죄적 상품화

국내 마사지업소에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하기 위해 1인당 900만원을 받고 한국인과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시키는 방법으로 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준 A씨(40)가 구속 되었다. (2008.7.30.)

돈 받고 네팔인들과 위장 결혼한 박모(42)씨 등 한국인 14명과 국내 취업 등 위해 한국인과 위장 결혼한 네팔인 구릉리타(33·여)씨 등 13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구속된 구릉비노드씨 등은1인당 2천 만 원(네팔화 160만루피)을 받고 한국인들과 위장결혼을 알선, 모두 2억 6천 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8.7.30.)

(3) 결혼이민자 이혼 증가 및 사회 문제화

지난 2003년 이후 5년간 혼인 무효 소송 접수건수는 2003년 207건에서 2007년 487건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 처리 건수는 2003년 142건에서 2007년 548건으로 4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이처럼 혼인 무효 소송이 갈수록 급증하는 이유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국제결혼 형식을 취한 위장 결혼증가와 결혼 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의 가정불화를 이유로 가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의 생활의 안정화가 긴급히 요청된다.

베트남서 시집온 지 8개월 된 스므살 뚜엣(가명,20)이 정신 병원에 입원하였다. 뚜엣은 2008년 4월 12일 영동군 학산면의 시댁서 농약 마셔 의식 잃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남편(39)은 변변한 직업 없는 '백수'이자 정신질환을 앓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였다. 뚜엣은 시아버지까지 모시는 가난한 살림을 일구었다. 지난 3월 남편이 병세악화로 정신병원에 입원, 말도 통하지 않는 시아버지와 단 둘이 외로운 삶을 살아왔다. "사경을 헤매다가 간신히 의식을 찾은 뚜엣의 첫마디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베트남으로 보내달라' 였다.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뒤 삶에 대한 애착마저 놓아 버린 듯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변했다"고 가슴 아파했다. 의식을 되찾은 뚜엣 씨가 줄곧 귀국하기를 원해 시댁 측의 양해를 구하고 출국했다.(2008.5.15. 연합뉴스)

(4) 이주민을 등치는 추한 한국인 이미지

2006년 9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담양의 한 농부와 결혼한 캄보디아 출신 T모(여·21)씨가 있다. 남편 김 모씨는 T씨보다 25살이나 많았지만, 성실하고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그러나 2007년 11월 생활고를 비관하던 남편 김씨가 집에 등유를 뿌리고 동반자살을 기도하였다. T씨는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간신히 화마에서 빠져 나와 목숨을 건졌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숨졌다.

T씨가 찾아간 곳이 자신의 결혼을 알선해준 중개업소 대표 이모(여·42)씨의 집이다. 이씨는 T씨가 남편의 형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목돈이 있는 사실을 알고 "돈이 있으면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한다."면서 통장과 도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 받은 뒤 50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T씨가 농지를 상속받은 사실을 알고 "지금 땅을 팔지 않으면 값이 내린다."며 땅을 대신 팔아주고 받은 땅값 3천350만원 가운데 2천150만원을 가로챘다. 이씨는 T씨의 재산을 다 빼돌린 뒤 T씨에게 다른 한국인과의 재혼을 제의했지만 거절당하자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했다. (2008.09.19. 국민일보)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5) 이주민에 대한 인권유린

대구 옆 영천에 있는 한 사출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 닥살라(28·남)씨는 2008년 12월 6일 작업복을 빨리 입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상관에게서 발로 가슴과 배를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했다. 거기다 각목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구타 후 닥살라씨는 피를 토하고 음식물을 토해내야 했다.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했지만 회사 측은 묵살했다. 결국 이주노동자 상담소로 피신한 닥살라씨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해 회사 측의 책임을 물었지만 오히려 회사 측은 닥살라씨가 회사의 물건을 훔쳤다고 뒤집어 씌웠다. 우여곡절 끝에 회사 측을 형사고발 한 후 합의가 이뤄져 합의금과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6) 불법체류 상황과 단속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을 피하다가 어처구니없는 일도 당한다. 2008년 10월 1일 출입국관리소 단속 과정 베트남 출신 H씨가 추락, 양 발목 뼈 으스러지는 사고 발생하였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따쏘에(39·미얀마)는 2008년 9월26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단속을 피해 전력 질주로 도주 다음날 새벽 2시30분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지난 2008년 11월 12일에는 `토끼몰이'식 방법으로 280여명 정부 합동단속반 경기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과 연천군의 `청산농장' 급습하였다. 단속되는 공장의 담을 넘다 바닥으로 떨어져 골절상을 입는 등 5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날 불법체류자 100여명 단속되었다. (2008.11.12)

2) 이주민의 문화충격과 문화적응 문제

(1) 문화충격

자신의 나라를 떠나 새로운 문화권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이주민들에게는 '문화충격(Culture Shock)'이 있다. 문화충격은 새로운 문화를 대할 때 일어나는 방향상실 혹은 정서적 혼란이다. 이러한 문화 충격은 이주민뿐만 아니라 해외 장기 체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다. 때론 내국인들도 이주민들의 낯선 문화에 대한 경계와 배타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문화충격의 원인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생소함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언어충격으로 인한 자존감 상실, 일상생활 변화에서 오는 혼돈, 관계성의 변화에서 경험하는 자신의 정체성 상실감, 이해력의 상실, 감정과 가치관의 혼돈 등이다.

이주민들이 새로운 문화권에서의 만나는 충격은 대략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① 첫 번째 충격은, 의사소통의 불능이다. 의사소통의 문제는 국내 지역주민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주민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말이 통하지 않아 갑자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주된 수단을 잃어버린 것이다. 가장 단순한 말을 하려 하여도 어린아이 같이 사용해야 하고, 계속적으로 실수를 하게 된다. 자신의 교육이나 지식 그리고 고향에서의 지위나 신분 안정을 주던 상징들을 늘어놓을 능력이 없다. 그래서 자신감을 잃어가고 나약한 존재로 전락한다. ② 두 번째는 일상생활의 변화이다. 새로운 문화 환경을 처음 만난 사람은 아주 단순한 일처리도 커다란 정신적 부담이 되고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차비를 탈 때 내는지 내릴 때 내는지, 교통수단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쇼핑은 어떻게 하는지 등 단순한 일에서도 적응하지 못하여 혼란을 겪는다. ③ 세 번째는, 관계의 변화이다.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자신의 자아인식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상충될 때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있을 것을 변화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된다. 본국에서의 직위, 학위 그리고 다양한 집단의 회원자격 등을 가지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었고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이주민들은 본국에서의 모든 정체성이 사라진다. 한국의 새로운 상황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④네 번째는, 이해력의 상실이다.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 문화를 배우고 상황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삶 가운데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남들이 내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다. 이주민 대부분은 한국에 오면 그 동안 본국에서 배운 지식의 대부분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거나 때로는 문화의 차이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주민 자신이 확실하다고 여기던 것이 한국에서는 혼동으로 다가온다. 이 때문에 삶의 의미 상실 및 현실감각의 상실로 파괴적이 되기도 한다. ⑤ 다섯 번째는, 감정과 가치관의 혼돈이다. 문화충격은 지식의 측면도 있지만 감정과 평가의 방향 상실도 포함된다. 감정적인 차원에서는 상실감과 혼동을 경험하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본국에서 누리던 것 같은 형태의 오락을 즐기고 싶은 갈망이 생긴다. 한국말을 알아듣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말에 대해서도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세밀한 감정적 뉘앙스는 이해하지 못한다. 이때 이주민들은 자신이 기대하는 만큼 새로운 사회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고 좌절감과 죄의식, 거부감을 갖기도 한다.

(2) 문화적응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문화충격에 대하여 나타나는 네 가지 정도의 현상이 있다. 첫 번째는 배타문화(Anti Stranger)현상이다. 타문화를 피하여 주변에 작은 고향문화(Home Culture)를 만든다. 두 번째는 타문화 몰입현상(Going Stranger)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의 문화를 무차별적으로 무시하고 다른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려 몰입하는 현상이다. 타문화를 수용하고 맹신(Accept-believe)하게 된다. 세 번째는 타문화를 수용하고 존경(Accept-respect)하고 동일시(Identification)하는 이중문화(Biculture)현상이다. 네 번째는 자신의 공유한 정체성(Identity)을 유지하며 살아가려는 경향이다.

4. 문화에 대한 기본 인식

1) 문화란?

문화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으로 얼마든지 변화 가능하다. 문화라는 말은 라틴어의 경작하다, 재배 하다는 뜻을 가진 말에서 파생 된 말로서 사람의 인위적 행동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농업이라든가 양식진주(A Cultured Pearl), 박테리아배양 (Bacteria Culture) 같은 용어의 'Culture'에서 문화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다. 즉 문화는 인간의 '경작' 혹은 '재배' 행위로부터 비롯된 말로서 자연에 대응하여 먹고 살고자 한 인간의 본능과 생산 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6세기에 'Culture'의 의미는 '농작물 가꾸기'에서 '정신(마음) 가꾸기'와 혼용되었다. 18세기 독일에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독일 상류 귀족들의 지적 활동 즉 학문, 과학, 철학, 예술 등을 'Kultur'라고 불렀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반에 와서는 인간능력을 발전시키고 고양시키는 과정, 사람이나 민족의 신체적, 정신적 질을 개선하고 높이는 과정으로서 정신적 의미로 바뀌어 사용되었다. 19세기 후반, 인류학이 형성 발전하면서 문화라는 개념은 모든 인간 활동을 총괄하는 크고 중립적인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인간의 문화에는 정치나 경제, 법과 제도, 문학, 예술, 도덕, 종교, 풍속 등 모든 인간적 산물이 포함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산물들의 관계와 산물을 둘러싼 소유와 분배의 권력 그리고 지적 헤게모니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사무엘 헌팅톤(Samuel P. Huntington)은 문화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는 한 사회 내에서 우세하게 발현하는 가치, 태도, 신념, 지향점, 그리고 전제조건이라 하였다. 아울러 문화가 사회의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발전과 정치가 문화를 바꾸어 놓기도 한다고 보고 있다.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더라도 문화는 자연 상태의 어떤 것에 인간적인 작용을 가하여 그것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것으로서 얼마든지 변화 가능하다는 것에는 이의가 별로 없다.

2) 문명(civilization)과 문화(culture)의 차이점

문명이라는 용어를 문화와 대치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과 문화의 특수한 한 형태로 파악하는 입장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문명을 문화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보는 견해이다. 문화를 정신적·지적인 발전으로, 문명을 물질적·기술적인 발전으로 구별하기도 하는데 이는 독일철학이나 사회학에서 전통적이다. 인류의 정신적이고 가치적인 소산을 문화라고 하는 데 대하여 물질적 ·기술적 소산을 문명이라고 하였다. 이 견해는 통속적인 용법으로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둘째, 문화가 문명을 포함하는 개념이 있다. 문화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뜻한다.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이때 문명은 문화의 특수한 한 형태로 보는 견해이다. 이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문화인류학의 보급에 따라 일반화되었다. 여기에 따르면 문화 중에서 도시적인 요소, 고도의 기술, 작업의 분화, 사회의 계층분화를 갖는 복합문화(문화의 복합체)를 큰 단위로서 파악한 총체를 구체적으로 문명이라고 하였다.

3) 문화 상대주의

20세기에 대두된 문화상대주의 논리는 "서구사회의 가치 기준에서 타 문화권을 인식하기보다 각 문화권의 특수성을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노력" 이다. 문화 상대주의는 지식, 기술, 가치, 태도 등으로 표현되는 모든 문화가 그 나름대로의 체제, 의미, 기능을 가진다는 입장이다. 즉,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문화는 문화의 독특한 환경과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다. 문화의 상대성을 부정하는 극단적 태도는 자민족 중심주의로 자기 민족의 모든 것이 타민족의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타민족의 문화를 배척하는 태도를 말한다. 문화상대주의의 장점은 상대 나라의 문화에 대해 더욱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타 문화권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그들 나름의 문화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이해해 볼 필요는 있다. 문화 상대주의는 하나의 비교되는 문화 자체가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오류가 있다. 그러나 문화는 변하는 것이며, 현재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문화적 가치로 보기에는 비난 받을 만한 습관, 법, 제도가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중동의 일부다처제나 여성의 성욕을 억제하고 남성에 복속시키려는 폐습은 전쟁으로 과부가 많아지자 생긴 문화이다. 스페인 사람들이 야만적인 투우에 열광한다고 그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도 투우 금지 법안이 제정되었다. 영국의 여우사냥은 사냥꾼이 말을 탄 채 수십 마리의 개를 동원해 여우를 쫓다 사냥개가 여우를 물어 죽이게 하는 것으로 영국 귀족들의 전통적인 오락인데, 그 잔인성 때문에 비난을 받아왔다. 오랜 논란 끝에 2005년 2월부터 개를 동원한 여우, 사슴, 토끼 사냥이 금지되었다. 농촌주민들은 '여우사냥이 농작물과 가축을 해치는 골칫거리를 해결하는 동시에, 관광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수입까지 올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돈벌이로 이를 금지한다면, 농가 수입이 줄고 시골 학교와 병원도 재정난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금지를 반대해 왔었다고 한다.
참고로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문화인류학의 이론들은 문화진화론(Cultural Evolutionism), 문화결정주의(Cultural Determinism), 문화 기능주의(Cultural Functionalism), 문화구조주의(Cultural Structuralism), 문화상징주의(Cultural Symbolism) 등이 있다.

5. 다문화 사회의 문화적 사고

1) 문화는 변한다.

문화적 사고라는 것은 '문화는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이며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끊임없이 변화해온 것이며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변해 갈 것이다.'는 비판적인 사고이다. 문화적 사고는 영원불변 하는 자연의 원리인 것처럼 강요되는 문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대안 문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문화 간의 접촉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나라 간에 일어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국제화되고 운송수단의 발달로 국가 간의 접촉과 동일국가 내에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현실에서는 동일 국가 내에서도 문화 간 접촉이 이루어진다. 특히 통신수단의 발달로 다양한 문화의 접촉에 따른 문화변화의 가능성은 더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국내 거주로 인하여 이주노동자들의 놀이문화, 종교문화, 생활문화가 우리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문화 간의 접촉은 때로는 배타적이거나 차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전통문화를 살찌우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서로 다른 문화가 상호에 대하여 열린 자세로 다가설 때 낯 선 문화와의 접촉은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서로 다른 문화와의 공존을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의 모습으로 자리 잡아가기도 한다.

2) 문화는 만들어진다.

문화적 사고는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문화도 역시 사람이 만들어낸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문화적 사고란 역사적 사고이며 비판적 사고이며 자유롭고 창조적인 사고이다. 문화를 커뮤니케이션, 혹은 그것의 기반이 되는 상징체계라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정신적 작용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내의 관습, 가치규범, 제도, 전통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생활양식을 의미하게 된다. 문화를 한 인간의 집단, 종족의 총체적인 생활양식으로 정의할 때 집단 간의 문화적인 차별성은 좋고 나쁨이나 위계의 문제가 아니라 차이의 문제로 인식된다. 문화적 사고는 문화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서구식 소비문화로서의 세계화 문화(Global Culture)의 관점은 적어도 아닌 것이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문화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공존의 문화로 변화 가능하다는 관점을 갖는 것이다.

3) 다문화는 새로운 관계 방식을 창조한다.

다문화 사회에서 새로운 국민 국가를 형성하기 위하여 몇 가지 인식의 전환이 요청된다. ① 나라와 인종이 달라도 이주민들도 대한민국 국가의 중요한 하나의 구성원 이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② '이주노동자도 국가 이익의 주역이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주노동자도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분들이다. 이주노동자는 국가 이익을 위한 희생 수단이 아니다. 비록 미등록 이주노동자이더라도 장기 체류 숙련 이주노동자들에게 영주권 등을 허용하여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다문화 가족이 자존감을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가지고 살아가도록 사회적 문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다문화 이야기 하면서 결혼 이민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빨리 빨리 한국 사회에 적응, 동화 시켜 나가는 것을 우선시하는 정부 정책은 고쳐 나가야 한다. ④ 이주노동자 자녀를 비롯하여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다름'에 대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중문화 교육이 강화 되고, 다수자인 한국 사람들의 인식 개선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문화가 발전하려면, 다문화 사회로 가야한다. 다문화 사회가 한민족 문화를 해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문화 사회의 허용은 오히려 한민족의 문화는 창조적 계승발전의 동기가 될 것이다. ⑤ 국제적인 이주민들에 대하여'글로벌 시민권'에 대하여 학문적이고도 여러 나라의 사례 발굴 노력을 통하여 이주민의 다양한 인권의 권리 보장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다.

4) 다문화사회에서는 다수자가 우선 변해야 한다.

다문화는 소수자를 만을 위한 보호적 성격의 요소가 아니다. 다수자가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면, 다문화적 요구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다문화는 다수자를 위하는 측면이 더 많다. 다수자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요청한다. 다문화는 다수자에 대하여 법, 제도, 사고방식, 습관 등 새로운 문화적 변화를 요청한다. 다수자는 오히려 소수자에게 배워야 한다. 하나의 문화만 경험한 내국인이 적어도 2개 이상의 문화를 경험하고 살고 있는 이주민에게 다문화 교육을 한다는 것에는 모순이 따른다. 결국 다문화는 다수자의 인식의 변화와 관용, 소수자는 자기 정체성과 주체성을 바탕 한 자존감 있는 참여, 나아가 다수자와 소수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형성에 다문화의 의의가 있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2강. 다문화 이론과 창조주의]

1. 다문화 현상 이론

1) 현대 이후 사상(Postmodernism)

포스트모던이란 용어는 1930년대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스페인 작가 페데리코 데 오니스(Federico de Onis)가 「스페인 및 라틴 아메리카 시선집」(1934)에서 현대주의에 대한 반작용을 나타내기 위해 'postmodernismo' 용어를 도입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특정의 이론이나 원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통제하는 전체적 사고방식을 비판한다. 현대문화를 지배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신이란 진리와 지식, 그리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기존의 모든 이론체제나 사고체제에 있어서 그것이 갖는 절대 객관성과 확실성을 부정하고, 그의 다원성과 상대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들이 가졌던 권위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해체함을 그 일차적 특성으로 한다. 이성 중심주의에서 정립한 진리와 의미를 해체한다는 의미로 '해체주의,' 혹은 구조주의와의 연관성 때문에 '후기 구조주의,' 혹은 '탈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등 다양한 언어로 불리 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1960년에 일어난 문화운동이면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는 한 시대의 이념이다. 이 운동은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학생운동 ·여성운동 ·흑인민권운동 ·제3세계운동 등의 사회운동과 전위예술, 그리고 해체(Deconstruction) 혹은 후기구조주의 사상으로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 점검과 반성을 거쳐 오늘날에 이른다. 개성 ·자율성 ·다양성 ·대중성을 중시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이념을 거부했기에 탈이념이라는 이 시대 정치이론을 낳는다.

이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은 특정의 이론이나 원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통제하는 전체적 사고방식을 비판한다. 현대문화를 지배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신이란 진리와 지식, 그리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기존의 모든 이론체제나 사고체제에 있어서 그것이 갖는 절대 객관성과 확실성을 부정하고, 그의 다원성과 상대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들이 가졌던 권위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해체함을 그 일차적 특성으로 한다.

2) 세계화(Globalization)

세계화란 국가 및 지역 간에 존재하는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어 세계가 일종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추세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세계화란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시키는 생산, 금융, 정보 등의 새로운 거대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국가 간에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이동을 촉진시키고 정보의 교환을 확대시키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급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구상의 국가들의 장벽이 없어지고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여 지구촌이라는 용어로 쓰여 지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화는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에 상응하는 조직을 만들게 되었으며 그것이 WTO 이다. 이전에 국가 간 무역질서를 관장하던 GATT체제가 붕괴되고 WTO라는 새로운 경제 질서의 핵심은 국가 간 무역거래에 있어 협상방법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과거 1:1협상에서 다자간 동시협상으로의 변화이며, 각종 ROUND로 일컬어지는 국제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다.

세계화는 국가 간, 지역 간, 기업 간, 계층 간의 격심한 경쟁을 통해 효율의 극대화를 초래시키며, 경쟁, 특화 등을 통해 자본, 노동 등 자원의 최적 배분을 초래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세계화는 세계시장의 단일적 통합과 시장광역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이익을 발생시키기도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하며 무역장벽을 소멸시키고 자유무역의 이점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다. 세계화는 자본수출, 경쟁력의 우위 등을 통해서 세계경제에 대한 일부 선진국의 패권적 지배를 강화시키며 세계화에 매몰된 일부 국가의 주권이 침해를 받을 수도 있다. 또 세계화는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국제거래를 통해 각 경제주체의 대외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며 그것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따라 각국의 비교열위산업을 퇴출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세계화는 국가 간, 계층 간 소득의 양극화(빈익빈 부익부)를 확대시키는데도 한몫을 하고 있다.

3) 문화와 다문화 사고의 출발

문화를 역사적 지속성과 통합성을 강조하던 경향성이 1930년대 후반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다. 식민지 내에 '문화변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식민지 내에 지질적인 문화들 간의 충돌이 발생되는 상황을 분석해 내기 시작하였다. 하나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여러 개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 다양한 견해와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특히 1950년대에 이르러는 도시 내에 소수민족 집단과 계층적 문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문화의 통합성보다는 갈등의 문제를, 문화 구조 보다는 문화 과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사회에 하나의 문화가 존재 한다거나 사회구성원들이 문화를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 곡 문화적 다양성을 발견 한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의 발전이 곧 '다문화적 사고'로 발전 된 것이다.

4) 융합의 경영(Convergence)

정보기술의 발달과 지식 주도의 지식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이전 하면서 경영환경도 변하고 있다. 기존의 삼업 간,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결합되는가 하면, 생산자와 제조자의 구분이 없어진다.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등 과거와는 전혀 다른 경영방식과 패러다임이 전개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경영방식을 요구한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경쟁 환경에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창조적 능력이 중요해 졌다. 정형화된 패턴도 중요하지만, 전혀 새로운 대응 모델을 유영하게 구축해 나가는 정보창조 능력이 중요시 된다.

융합(Convergence)은 서로 다른 기술 또는 제품들이 유사 화 혹은 복잡화 되면서 기존 시장 영역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현상이다. 이것은 발생하는 수준에 따라 4가지로 발생한다. 기술발전에 의해 상이한 기술로부터 유사한 가치가 제공되는 기술적 융합(Technology Convergence), 기술 융합에 따른 상품의 출시 및 고객 수용이 확산되는 요구 창출 융합(Offering Convergence), 제품 및 서비스의 유사화 및 복합화에 따라 사업영역의 경계가 중첩되는 상업적 융합(Business Convergence),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짐에 따라 전통적인 산업구분의 재조정이 이루어지는 산업융합(Industry Convergence)이 이루어지고 있다.

2. 다문화주의 이해

1) 다문화주의란?

다문화주의는 철학, 정책, 사고의 주체 등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그러나 다문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다양성'이 존재한다. 테일러(Taylor, 캐나다 철학자)는 다문화주의를 문화적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지닌 집단으로 인정하는 '승인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로 정의한다. 그러나 문화적 우월주의에 입각하여 다문화 주의를 여러 선진국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이민 집단이 가진 고유한 문화를 지칭하는데 사용된다.
마르티니엘로(M. Martiniello)는 다문화주의를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로 보았다. 다문화를 민주주의 조건과 문화적, 민족적 정체성의 다양성의 조화로 보았다. 개인의 권리인 민권과 소수집단의 종족적인 문화적 특수성의 공존을 주장한다. 그는 다문화주의도 요리나 음악, 패션 등의 소비로 이해한다. 이를 온건한(soft) 다문화주의 혹은 가벼운(light) 다문화주의라 부른다. 피상적 다문화를 극복하고 민족 정체성 개념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여 정치적 논의를 전개하는 강경(hard) 다문화주의라 불렀다.
한편,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는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는 집단이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면서 전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지 여러 집단이 공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집단의 문화가 지배적인 문화에서도 보유할 가치가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2) 다문화주의의 분류

한편 로페츠(Mark Lopez)는 다문화주의를 네 가지로 구별하였다. 첫째는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이다. 이주민과 소수자 집단 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정부가 인식하고 지원하는 입장이다. 둘째는 복지적 다문화 주의(Welfare Multiculturalism)이다. 이주민과 소수자 집단을 전반적인 복지차원의 문제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 문화적 표현과 행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입장이다. 셋째는 민족학적 구조 다원주의(Ethnic Structural Pluralism)이다. 특정한 민족 집단에 속하는 이주민을 사회경제적 불편등과 그들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제도 및 제도에 기반 한 행위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인지하는 입장이다. 넷째는 권리로서 다문화주의(Ethnic Right Multicultualism)이다. 이주민과 소수자 집단을 자본주의의 모순과 제도화된 인종차별주의의 피해자로 인지하는 입장이다.

3. 다문화 이론

1) 동화이론

미국을 흔히 용광로(Melting Pot)라 하는데, 이는 20세기 전반까지 많은 이민자들이 자유를 찾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미국에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여러 민족이 협력하여 미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였다는 것이다. 어떤 인종과 민족을 배경으로 하더라도 미국은 자유정신과 교육을 통해 하나의 미국인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낙관주의적 입장에서 민족의 이론을 전개시킨 사람은 파크(Robert Park)라는 사회학자이다. 파크는 인종 내지 민족의 동화(Assimilation)를 민족적 진화(Ethnic evolution)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동화의 과정을 4단계로 설명하였다. 첫 단계는 접촉(Contact)의 단계이다. 민족들은 주어진 독립의 생활공간을 점유하는 성격이 있으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생활을 영위하였을 때는 고유한 생활양식을 유지해 왔고 동화의 필요성도 없다. 그러나 사회가 사업화하고 근대화하면서 민족 간의 접촉도 빈번해 지고 또한 혼재하게 되면서 경쟁을 하게 된다. 둘째 단계는 경쟁(Competition)의 단계이다. 접촉의 결과로 야기된 경쟁은 보다 유리한 지위를 점유하려는 경쟁, 최대 이윤을 얻으려는 경쟁을 비롯하여 보다 인간적인 행동을 하고 보다 인격적인 사람이 되려는 도의적 경쟁까지를 포함한다. 세 번째 단계는 적응(Accommodation)의 단계이다. 상호간의 접촉과 경쟁을 하면서 사람들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생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최종적 동화(Eventual Assimilation)의 단계이다. 집단 내의 관계에서 개인 내의 관계로 순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파크는 사회적 추세가 결국 인종적 협력을 촉진하여 하나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의 문화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흑인의 경우 민족적 주체성의 중요한 요소인 언어와 종교가 미국사회에 대부분 동화되었으나 피부와 외형에 의해 백인으로부터 심한 차별과 편견을 받는 것을 주장하며 정체성을 강조하는 현상으로 발전하였다. 흑인들은 민족적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흑인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발휘하여 머리모양, 옷 차림, 걸름걸이, 언어행동 등에서 백인과 다른 특색을 나타내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동화이론은 주로 이주 1세대의 문제이지 2, 3세대가 되면 언어문제, 종교문제, 문화문제 등이 해결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언어와 문화를 완전히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기들의 뿌리에 대한 개념과 타민족과 관계에서 자기의 민족적 범위를 지키려는 경향을 갖는다.

2) 복수론(Pluralism)

복수론 자들은 민족적 진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한 하나의 민족으로 화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하위문화 내지 하위사회가 존재한다고 본다. 복수는 두 가지 부분에서 의미된다. 문화적 복수(Cultural Pluralism)와 구조적 복수(Structural Pluralism)이다. 문화적 복수는 민족에 따라 사고, 감정, 내지 행위 등을 포함하는 것이고 구조적 복수는 사회적 대인관계에서의 여러 유형을 말한다. 또한 이 두 복수를 동화란 견지에서 설명할 때 문화적 동화와 구조적 동화로 나뉜다. 문화적 동화는 언어를 포함한 생활양식 전반이 동화된 것을 말하고 구조적 동화란 사회적 생존조건이 차별 없이 동등해지는 것을 말한다.
고든(Gorden, M. M.)은 동화의 단계가 완전동화에 이르기까지 7단계를 거치는 것이라고 한다. 첫 번째가 문화적 동화이고 둘째가 구조적 동화이다. 셋째는 인종이나 민족이 서로 결혼하는 혼인 동화이고 넷째는 민족성(Ethnicity)이 없어지는 정체성동화(Identification Assimilation)이다. 다섯 번째가 차별이 전혀 없는 태도 수용적 동화이고 여섯째가 편견이 없는 행위 수용적 동화이다. 최후 단계인 일곱째는 일상생활에 전혀 구별이 없는 이른바 시민적 동화(Civic Assimilation)이다. 고든은 미국 내에 흑인 유태인, 가톨릭, 백인 개신교의 하위문화나 하위사회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4개의 하위사회들은 각기 자기들 내에서의 조직을 갖고 무엇보다 사고나 정서적 반응에 있어서나 행위에 있어 하나의 문화적 특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든은 인종과 종교를 민족적 경계의 지표로 생각한다. 직장에서의 경쟁이나 정치적인 이권을 위한 경쟁에서 두드러지게 노출되는 것은 민족을 단위로 한 경쟁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모자이크설로 동화를 지향하고 민족들의 특성을 장려하는 것이니 민족들은 각기 자기의 종교적 특성을 유지하고 문화적 특성을 발전시키며 심지어 언어의 복수를 인정해 민족들의 모국어를 유지케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미국사회가 민족복수주의 이데올로기(Ideology of Ethnicity Pluralism)를 실현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오히려 소수민족 내에서 차별과 편견이 경쟁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3) 갈등론(Conflict Theology)

갈등론은 민족문제를 노동 경쟁적 입장에서 분석하는 입장이다. 근대사회에 기회가 다양화되고 직업이 많아지면서 민족간의 경쟁도 심화되고 공격성도 강화되며 편견과 차별이 가중되는 경향을 말한다. 흑인문제에 있어서 본격적인 차별을 받는 것은 기계화 이후의 일이라고 하겠다. 미국이 고도산업사회로 돌입하면서 흑인들은 기술 없는 단순노동자로 전락하였고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 무용물이 된 것이다. 백인노동자마저 흑인노동자를 멸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이론으로 설명한 보나치치(Edna Bonacichi)는 흑인노동자가 실업자가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되고 불리하게 된 것은 인종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유입된 싼 이민노동자 때문이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점차 분할노동시장을 이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분할노동시장은 상층에 자본, 중층에 강한 민족 집단으로부터의 노동, 그리고 하층에 약한 민족 집단으로부터의 노동 등 3개 층위로서 성립된 경제 체제를 말한다. 자본은 민족과 인종을 관여하지 않고 싼 노동을 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소수민 노동을 말한다. 소수민 노동은 값비싼 노동의 임금상승을 견제하고 이들의 파업을 봉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분할노동시장(Split Labor Market)이라고 한다. 또한 소수민 노동자는 정보에 어둡고 싼 임금으로도 일할 뿐만 아니라 노동분쟁을 피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않는다. 보나치치에 의하면 이러한 국가적 노동계층의 최저수준에 소수민들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이른바 중간소수민이 되는 것이다.
중간 소수민이란 한국 내에서 보면 국제결혼을 한 코시안(Kosian) 가족이거나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장기체류 중인 이주노동자를 지칭한다고 보면 좋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적응 과정설과 작업가설은 장기체류 이주민들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좋을 듯하다.

4) 적응 과정설

한국인들이 어떻게 미국사회 문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있다. 허무원, 김혜주, 김광정씨는 이를 다섯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국제결혼 이주노동자,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문화 정체성을 획득해 나가는가에 대한 관점을 세우는데 매우 유익해 보인다. 이들은 만족도를 y, 체류연합을 x축으로 한 위에 마치 v와 유사한 한 곡선으로 된 적응과정은 첫째, 흥분점(Excitement)에서 시작한다. 미국에 처음 도착해 받는 놀라움에 대한 인상을 말한다. 그리고 일년 내외에 최저상태인 미몽에서 깨어나는 시점 (Disenchantment)에 이른다. 다시 상승하여 5년을 조응기(Adjustment)에 이른다. 8-9년이 되면 최고정점인 최적기(Optimum)에 이른다. 11-12년이 되면 정체성위기(Identity Crisis)를 맞게 된다. 이로부터 5-6년이 경과하면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는 주변인적 만족기(Marginal Satisfaction)에 이른다고 보았다. 특히 허원무는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에 관한 곡선을 제시하였다. 적응과정곡선의 모든 과정을 거꾸로 한 것이다. 민족정체성이란 한국인으로서의 의식을 말하며 허원무에 의하면 이것이 적응과정과 반대의 현장을 보인다는 말이다 (112). 허원무는 한국인이라는 이중적 한 민족성을 4단계로 나누었다. 상호 작용하는 시기, 한정된 사회동화시기, 부정적 동화성과 정체성위기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정체성인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한미민족성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5) 작업가설

허원무가 제시한 적응과정과 민족정체성 변화과정 그리고, 한미민족성 형성과정의 세 과정을 적응과정과 정체성과 관련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민족정체성 변화과정과 한미민족성형성과정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라 하겠다. 세밀히 분석하면 미국사회에서의 접촉에서 생기는 것이고 정체성은 개인의 내부에서 야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미국문화와 한국문화의 대치 때문이라고 말하였고 문화의 대치는 문화동화를 이루어 가는 첫 단계에서, 그리고 사회적 대치는 한정된 사회동화를 이루는 둘째 단계에서 제시하였다. 말하자면 미국문화의 흡수가 유리할수록 한국문화의 이탈이 강해지고 역으로 미국문화에의 노출이 불리할수록 한국문화에의 집착이 강할 것이다. 이러한 양분화에의 관계에 따라 남녀에 또는 세대에 따라 상징적 의미가 달라지며 상징적 의미의 불일치가 가족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원내의 갈등을 초래하고 이것이 개인적 심리에 영향을 준다고 본 것이다. 한국적인 특성을 상실하며 미국적 특성으로 향하는 1기 한국적 특성에서 미국적 특성으로 완만하게 옮겨가는 2기, 한국적 특성을 계속 유지해 가는 3기로 나눈 것이다. 1기는 문화충격이 심해 언어의 불편을 느끼며 부부간 역할의 재조정과 이에 따른 심리적 갈등이 따른다. 수입원의 안정을 추구한다. 그러나 2기는 직업이 안정되는 시기이고 이 시기에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중적 만족감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3기는 대외적으로 사회적으로나 문화적 동화에 한계를 느끼고 동화를 단념하고 자국적인 것에 보다 많은 애착을 느끼고 자국민 모임에 보다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4. 차별극복으로서 다문화 운동의 이해

1) 다문화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1) 단일문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 비교

단일문화 주의와 다문화 주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단일문화주의는 단일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배타적이 되고, 다문화 주의는 다양성의 하나로서 소수자 정체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분리주의가 될 수 있다. 첫째, 단일문화주의가 단일성을 강조하다보면 배타적이 된다. 단일문화가 다문화에 대하여 개방성 혹은 포용성을 가진다 하여도 결국 단일 문화성에 강조점을 두면서 동화주의로 정책이 표현된다. 현재 국내의 다문화 주의는 민족문화 중심주의에서 막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타주의에서 동화주의로 정책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수자가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과제이다. 둘째, 다문화 사회에서 소수자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분리주의가 된다. 다문화 주의는 소수자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소수자가 다수자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자가 지나치게 자기 정체성만을 강화 시켜 나간 다면 이는 분리주의로 발전 될 가능성이 있다. 단일문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는 다수자와 소수자의 문화들이 상호존중과 정체성을 가지고 조화로운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공통의 과제를 갖는다.

단일문화주의와 다문화 주의의 비교

	단일문화주의	다문화주의
갈등 형성	배타주의	분리주의
통합 과제	동화추구	다양성 추구

(2) 다수자와 소수자 관점의 다문화 차이점

첫째, 다수자와 소수자가 생각하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다수자는 단일 문화를 중심으로 다문화를 사고하고, 소수자는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다문화를 생각한다. 다문화를 이야기 하지만 모두 자신들의 문화적 기초를 기반으로 한단. 즉 다문화 주의는 문화 해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둘째, 다수자와 소수자가 생각하는 사회 통합에 차이가 있다. 단일문화 중심의 다문화는 기능적 사고로서 소수자를 동질화를 중심에 두고 사회통합을 정책화 한다. 그러나 다문화 중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심의 전략적 사고는 차별적 주체 형성을 통한 실체의 인정과 자존감 형성을 추구한다. 단일문화 중심의 다문화 사고는 동질화 중심의 사회통합을 추구한다. 소수자는 소수자가 주체성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참여하는 차별화 전략을 갖는다. 단일문화는 하나의 문화를 추구하지만, 소수자의 다문화는 주류의 단일문화, 자신들의 출신 국 문화, 이 둘의 결합 혹은 제3의 정체성 문화 모두 3개의 문화를 가진 사람이다. 따라서 소수자가 생각하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통합에 대한 사고가 다양 할 수밖에 없다.

셋째, 다수자와 소수자가 생각하는 문화적 개방 정책에 대한 차이가 있다. 문화적 개방성은 단일문화 주의든 다문화 주의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회적 가치의 창조에 있다. 다문화 정책에 대한 자유주의적 시각은 문화적 개방이 주어진 조건의 손익을 기반으로 경쟁력 확보에 중심이 있다. 자유주의는 현재의 손익이 다문화 적인 미래의 공동체 유형을 결정 한다.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등주의적 시각은 다문화의 주장이 사회적 가치 창조를 기반으로 평등성을 강조한다. 인간의 차별화가 용인된 사회적 인식과 법, 제도를 평등이 강조되는 사회구조로의 변화를 시도한다. 소수자의 다문화주의는 자신들의 안전의 요구가 보장받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한다.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다문화 정책의 차이

	자유주의	평등주의
사회적 가치	시장주의	공동체주의
자기 동력	경쟁과 배제	인권과 참여

2) 차별극복을 위한 다문화 주의의 이해

다문화 주의는 인종차별철폐 민권운동에서 출발하였다. 다문화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미국의 인종차별철폐 민권운동에 영향을 받아 1970년대 이후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출발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만인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함을 선언하고 또한 특히 인종, 피부색 또는 출생지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하지 않고 동 선언에 언급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구나 향유할 수 있음을 선언한다. 나아가 유엔은 소수자와 인종 차별에 대하여 1965년 12월 제20차 국제연합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에 따르면, 모든 인간에게 고유한 존엄과 평등의 원칙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이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의 구별 없이 만인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의무를 선언한다. 다문화 주의는 상이한 국적, 체류자격, 인종, 문화적 배경, 선, 연력, 계층적 귀속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고,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신 사회운동 이론의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사회 현실은 다문화 주의의 추구 내용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추구하는 가치의 내용과 현실이 다를 때, 사회적 가치의 형성을 현실화 시키려는 노력이 목적의식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것이 다문화 운동이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3) 다문화 운동

(1) 다문화 운동의 비전과 다문화적 가치

다문화 운동이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인간의 사회적 활동의 목표는 '행복'이다.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의 담론 역시 최종 목적지는 '행복한 사회 형성'에 있다. 행복한 사회의 형성을 다른 표현으로 '공동체'라 한다. 다문화 운동은 단순히 '다른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 시키는 운동'이다. 오늘 우리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변화'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 다문화 사회는 공존과 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보편성을 추구하면서도 문화적 다양성을 최대한 관용하고 존중하며 사회적 공존을 향한 변화를 모색한다.

다문화 운동에서 다문화적 가치는 무엇인가? 다문화는 다수자의 소수자 문화 차별에서 문제제기 된다. 다문화의 문제 핵심은 다수자의 인식의 변화에 있다. 다문화는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한다. 다문화는 차이와 다양성의 조화를 목표로 한다. 이주민이 한국인과 같은 권리를 누리려 한다. 그러나 이주민들은 한국인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없을 것 같아 보인다. 이주민은 국적 국민이 되어도 한국인은 될 수 없다.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차별 문화의 이중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째는 같음을 같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차별구조로서 동일인간의 거부이다. 둘째는,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수구조의 폭력으로서 제3의 정체성의 거부이다. 이러한 이중문화의 차별 구조는 장미는 무조건 빨간 장미만 존재하고 나머지 색의 장미는 모두 비정상으로 보는 우리의 고정 관념과 편견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 운동은 공급자인 다수자 중심의 동질화를 향한 정책과 교육을 넘어선다. 다문화운동은 고정관념과 편견을 벗겨내는 운동에서 출발 한다. 다문화 운동은 수요자인 소수자 요구 반영을 통한 자기 삶의 선택과 개방이다.

(2) 다문화 운동의 내용

차별극복을 위한 다문화주의 입장에는 차이의 다문화주의, 인권의 다문화주의, 비판적 다문화주의가 있다. ① 첫째, 차이의 다문화 주의는 문화적 차이를 주장하고 인정과 지원을 요구하는 인정의 정치나 정체성의 정치를 주장한다. 차이의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차이에 관한 낭만적 태도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도구적 관심을 갖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나아가 문화를 공유하기 보다는 차이만을 드러내는데 열중하는 한계를 가진다. 정체성을 강조하여 드러냄으로서 오히려 정체성이 고정화 될 수 있다. ② 둘째, 인권의 다문화주의이다. 차이의 강조는 차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인간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강조한다. 인권에 기초한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정책과 다문화 시민의식, 다문화 시민권으로 진전 한다. ③ 셋째는, 비판적 다문화주의이다.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이해의 방법을 강조한다. 문화 간 차이를 극복하고 문화적 소통과 공유를 넓혀 나가는 것이다.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관계성을 강조함으로 자유주의적 다원주의를 차별화한다. 비판적 다문화 다문화주의의 진정한 의미는 이의 존중을 통해서 새롭게 구성해 내는 새로운 시민 문화의 창출임을 강조한다.

① 다문화 운동은 '다름과 차이'의 문제를 다룬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다름과 차이는 다수자 문화와 관계하여 두 가지 흐름이 형성된다. 첫째, '비적대적 다름'으로서 다름과 차이가 다수자 문화와 관계에서 '조화'를 이룬다. 비적대적 다름으로서의 조화는 다수자 문화와 소수자 문화가 상호 '친숙함'의 관계를 기초로 한다. 친숙함을 나타내는 이유는 다수자 문화가 소수자 문화에 대하여 잦은 접촉점 형성, 비경쟁적 관계, 상생적 이익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둘째, '적대적 다름'으로서 다름과 차이가 다수자 문화와 관계하여 '배타'를 이룬다. 적대적 다름의 경계는 다수자 문화와 소수자 문화와 어울림을 거절하는 '경계함'을 기초로 한다. 경계함을 나타내는 이유는 다수자 문화가 소수문화에 대하여 낯 설음, 경쟁적 관계, 개별적 이익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다문화의 평등성의 문제는 '다름과 차이'중 적대적 다름의 문제를 다룬다. 다문화의 평등성은 다수자 문화가 소수자 문화에 대한 적대적 다름을 우리 사회가 비적대적 다름의 형성을 통하여 조화로움을 이루고자 하는 '사회적 행동'이다. 여기서 사회적 행동이 갖는 의미는 가치관의 변화, 제도의 변화, 사회 구조의 변화 등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② 다문화 운동은 '차별화와 다양성'의 문제를 다룬다.
문화권의 기반으로 제기되는 문화 다양성은 '차이로서의 문화권'이다. 다문화는 기존의 서로 다른 문화를 차별 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의 장점과 강점을 살려 기회로 삼는 차별화 문화이다. 차별화로서 다문화는 인간의 새로운 삶의 질을 요구한다. 다문화 운동은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에 힘을 기울인다. 문화적 다양성은 개인의 가치관에 대한 선택의 범위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집단의 권리를 통한 문화적 차이, 특수성의 보호는 자유주의의 원칙을 강화한다.
문화적 다양성의 논쟁은 주로 유네스코가 중심이 되어 세 단계를 거쳐 전개 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세계인권 선언이 나온 1948년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이 제출된 1976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문화적 권리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와 공통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1976년부터 WTO 세계경제질서가 출범하기 이전인 1994년까지로 주로 제3세계국가들의 언어와 문화유산, 소수민족의 문화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했다. 세 번째 단계는 WTO 출범 이후 지금까지의 시기로,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화의 독점을 막고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 문화단체들의 연대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③ 다문화 운동은 새로운 '문화 창조'의 문제를 다룬다.
다문화는 창조의 문화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문화는 차별화 문화이다. 다문화는 동질 문화를 넘어 차이의 문화를 통한 제3의 문화를 창조한다. 다수자 문화와 소수자 문화의 조화로움이란 소수자 문화가 다수자의 문화로의 융합을 넘어선다. 다수자의 문화는 소수자 문화의 상대성을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을, 소수자의 문화는 자신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다수자의 문화에 참여함으로 다수자와 소수자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함에 있다.

[다문화 창조주의의 기초로서 문화융합]
한국적 다문화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 네 가지로 비판을 받는다. 첫째, 다문화 사회의 담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론이 정치적 수사와 사회운동의 구호로 그치고 있다. 이주민들은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국적이나 인종, 민족, 피부색, 성별 등을 기초로 한 집단성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는다. 이러한 상황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부족하다. 둘째, 한국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올바름에 대한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되지 않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난무하다. 셋째, 현재 임시 체류자인 이주노동자에게서는 문화보다는 생존이 우선시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거나, 일자리 퇴출 우선순위가 문제로 부각 된다. 넷째, 문화 없는 다문화주의를 지적한다. 국내 체류 중인 이주민은 같은 나라 출신이라도 동질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 창조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로서 다문화 융합(Convergence)과 주체의 문제를 주장한다.

1) 융합의 현대사회

최근 우리사회가 상상력과 창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상력에 기초한 창조의 기초는 융합(Convergence; 여러 기술이나 성능이 하나로 융합되거나 합쳐지는 일)이다. 융합 현상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반영이기도 하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성적 주체관, 특정한 자연관, 그리고 진보에의 교의 등의 이념이 서양 근 현대에 특유한 권력과 지식의 생산물이었음을 비판하며 이성 중심주의를 해체하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과학, 철학, 예술, 문학,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타나고 있다.

융합 현상은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융합 현상은 먼저 상품 생산에 자주 응용된다. 융합은 말은 한 곳으로의 모임, 집중성, 통합을 의미하는 말이다. 디지털 산업이 발전 하면서 다양한 미디어의 기능이 하나의 기기에 융합 되는 기술적 기능이라는 말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휴대폰과 디지털 카메라의 결합의 결과가 융합이다. 하이브리드(Hybrid: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요소가 합친 것) 자동차까지 등장하였다. 기존의 연료 동력과 전기 동력을 겸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자동차를 가리킨다. 융합 현상은 일상 생활에서도 나타난다. 은행카드가 교통카드와 겸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등장인물의 옷가지며 물건을 즉시 구입 할 수는 기능도 가능해 졌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영역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비즈니스 융합(Business Convergence)가 일어난다. 사업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신규 사업의 영역이 창출 되는 것이다. 음식이나 음악 등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퓨전(Fusion;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것이 합해져 새로운 것이 됨)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기술적이 측면에서 정보통신(IT) 기술이 생명공학(BT)과 만나 생명정보기술(BIT) 이 되기도 하고, 나노기술(NT)이 생명공학(BT)과 만나 나노생명기술(NBT)이 된다. 이러한 현상은 학문 간에도 나타나 두 가지 이상의 학문이 만나 새로운 학제연구(Interdisciplinary Studies)로 자리하면서 이미 대학에는 새로운 학문의 영역이 창출되고 있다.

융합은 단순히 기술의 결합을 뛰어넘는 개념이다. 결합된 IT 기기에 사용자의 문화적 참여를 포함한 집단 지성으로 본다. 즉 카메라가 장착된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작업까지를 포함한다. 융합 이용자가 자신의 문화와 상상력과 작업행동을 결합하여 전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는데 이것이 새로운 문화 출현(Emergence) 이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2) 다문화 융합

한국사회에 다문화 융합이 요청된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한국의 문화에 외국의 문화가 공존 한다는 의미 이상이다. 단일민족주의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 논쟁의 강을 넘었다. 단일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다문화 사회로 가는 것에 부정적 견해를 가진 부류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다문화 사회가 될 것인가는 서로 다른 입자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 융합에 대한 문화적 사고가 요청된다.

3) 다문화 사회로의 발전 전망 입장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가는데 여러 입장의 차이가 있다. 첫째, 단일민족 문화주의는 한국사회에 외국의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거절하는 배제의 논리이다. 두 개의 문화에서 외국의 문화를 빼내어 하나의 문화만을 고집하는 단일민족 문화주의로서 공식으로 표현하면 <2-1=1>의 문화이다. 둘째, 정부가 사회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동화주의 역시 단일민족 문화주의에 포용성을 가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포용적 단일민족 문화주의는 외국 문화에 배타적이지는 않지만 주류 문화를 방해 받지 않도록 순화 시켜 나가는 정책으로서 공식으로 표현하면 <1+1=1'>이다. 세 번째는 한국의 단일민족 문화가 외국의 문화를 배척하지 않으면서 공존하는 것은 다문화 공생주의이다.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하여 간섭하지도 않으면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어울림의 문화이다. 이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1+1=2>가 되는 문화이다. 그러나 다문화 공생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문화적 공존이다. 이러한 문화적 공존으로서 다문화는 문화전달과 문화 전이를 통한 문화 발전은 있어도 적극적 의미에서의 문화 창조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 논의는 새로운 문화 출현(Emergence)으로서 다문화 융합을 추동하는 '문화적 사고(Culture Thinking)'가 필요하다.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다문화 융합'이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것이 '다문화 융합'이다. 한국의 문화가 아시아의 문화와 서로 만나 전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내는 것이 '다문화 융합'이다. 이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1+1=3,4,5,,,>이다. 다문화 융합의 비전은 '문화적 사고'의 중심을 사람과 사람, 그것을 둘러쌓고 있는 문화적 환경에 두고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 만들기'로서 다문화 융합 이다.

4) 다문화 융합의 주체

그동안 한국사회가 다문화 주체형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결혼 이민자들이나 귀화자들에게 정부는 사회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동화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의 출신의 외국에서 익숙 하여온 문화에 배타적이지는 않지만 일단 한국인이 되었으면 잘 한국인으로 살아가도록 순화교육을 한다. 이들 이주민들은 한국사회에 적응 하는 것이 목적이지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 융합의 주체자가 된다는 것은 멀고도 먼 이야기로 들린다. 그렇다고 시민사회 단체가 취하고 있는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하여 간섭하지도 않으면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다문화 공존의 입장도 다문화적 융합과는 다른 입장이다. 지금까지 시민사회 단체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 어울림을 통한 잔치와 축제는 한국사회에 다문화적 공존에 지대한 공을 끼쳤다. 그러나 다문화 공존 역시 이주민들은 주체가 되지 못하고, 참여의 대상이 되거나 끼어들기 정도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나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신민사회 단체 모두 한국 사회가 다문화 융합으로 나가도록 주체형성에는 미흡한 것이다.

이제 한국사회가 다문화 주체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문화 융합의 주체자는 한국사회의 소수자인 코시안이다. 코시안(Kosian)은 한국인(Korean)와 아시아인(Aisan)의 합성어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이주 가정 혹은 자녀를 가리킨다. 이들에 대하여 한국의 아이로만 부르게 하며 코시안의 용어에 대하여 시민단체 일부를 포함하여 진보적인 학자들의 일부도 '인권 차별적이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국적을 중심으로 단일 민족문화주의에 뿌리를 둔 숨겨진 또 다른 편견의 들어냄이다.

코시안은 다문화적 융합의 주체이다. 코시안은 한국 사람이면서 외국인 출신이기도 하고, 한국과 외국의 문화 사이에서 제3의 정체성을 가진 자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 문화 적응을 잘 해야 하기도 하지만 부모 나라의 문화에 익숙한 자들이기도 하다. 코시안은 단순히 인권의 측면에서만 볼 자들이 아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다르다는 차이로 차별 받지 않는 사람을 평등적 구조도 뛰어 넘어야 한다. 다문화 융합의 주체자는 코시안은 한국과 아시아가 가지고 있던 문화를 담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새롭게 청조해 나갈 다문화 융합의 주체자이다. 다문화적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득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며 실천(Praxis)하는 주체이다. 코시안과 코시안 가족은 자신들이 다문화 융합의 주체성을 가진자 들이다.

한국 사회의 다수자들도 다문화 융합의 주체자이다. 다수자들은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 하도록 돕는 조력자나 도우미를 넘어서야 한다. 이국적인 낯 설은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성과 배려를 통한 타 문화를 수용하는 소극적 태도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시민단체들 역시 이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함께 지켜 나가되 다문화 융합의 장으로 나가야 한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문화적 사고는 또 다른 상상력과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는 비전을 준다. 자신을 성찰하고 세상을 전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통하여 나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디자인 해 나가는 사회적 융합이 일어나야 한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과 비전이 나와 만날 때 새로운 힘(Energy)과 열정이 만들어진다. 사회적 인식의 혁식이 가능하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꿈과 비전, 힘과 열정은 자신을 사회적 융합의 주체자가 되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관념과 철학, 일해 오던 방식,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 세상을 바라보는 고정 관념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패러다임의 혁신을 통한 사회적 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융합은 한국적 다문화 사회의 주체자로서의 실천(Praxis)으로 이어지고, 상상력이 현실사회에서 가시화 되는 새로운 사회의 출현(Emergence)을 가능케 하는 문화 창조로 이어질 것이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3강. 세계이주현상이론과 역사]

1. 국경과 이주

1) 현대적 의미의 국경

현대적 의미의 국경은 세계2차 대전이 끝나고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국제무역이 활발해지고, 교통의 발달과 통신 수단의 발달로 나라간의 경계인 국경의 의미는 점차 퇴색해져 가고 있다. 국경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본과 상품, 지식과 정보가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고 넘나들고 있다. 오히려 국경이 이들의 넘나듦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기구가 나서고 있다. IBRD(세계은행), WTO(세계무역기구)나 MAI(다자간 무역 협상)과 같은 기구가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구하고 있다. 각 나라는 오히려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무역 자유지대를 설치하여 관세 및 각종 규제로부터 예외 지역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노동력을 가진 사람, 즉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국경을 넘는 것은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부자나라 사람은 세계 어느 나라라도 쉽게 갈 수 있지만 가난한 나라 사람은 자신들보다 부자 나라로의 이동이 쉽지가 않다. 이주노동자들이 부자나라의 노동통제정책에 의해 조절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한 경쟁 시대에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차 가난해지는 오늘의 현실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절대 빈곤, 지독한 실업 등의 상황에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국경을 넘는 노동자체는 불법이 아니라 '생존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의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지구적 차원의 생존권의 문제라면 이주노동자는 '경제적 난민(Refugees)으로도 볼 수 있다.

2) 이주와 이주민의 정의

이주(migration)는 영구 이주에서부터 유목민의 주기적 이동까지를 포함한다. 이주는 침략, 정복, 무력에 의한 강제 이동, 자연재해로 부터의 대피, 상업적 이동, 식민지 정착, 노예제를 포함해 유사 맥락 상황의 사람들의 이동을 모두 이주라 한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이주를 '경제적 혹은 사회적 목적을 위한 개인 및 가족의 이동'의 의미로 사용한다.

(1) 지리적 관점에서의 이주

지리적 관점에서의 이주는 영구적 또는 단기적으로 자신의 출신 지역 외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행정적 또는 정치적 국경을 지나 하나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개인 또는 집단이 이주하는 것이다. 이주는 출신국(출신지역)과 목적지 나라(도착지역)가 구별되어야 한다.

지리적 관점에서의 이주는 국내 이주(internal migration)와 국제이주(international migration)가 있다. 국내이주는 한 국가 내에서의 이동으로서 지역, 지방, 도시와 같은 행정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의 이동이다. 국제이주는 이주민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이 국경선을 지나면서 개인의 법적 지위에 변화가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 이주민은 난민, 유민, 자국에서 강제로 쫓겨난 사람도 포함한다.

(2) 인간적 관점에서 이주

인간적 관점에서 이주는 자국을 떠나는 사람을 출국자(emigrant), 새로운 국가로의 유입 한 자를 이주민(immigrant)으로 부른다. 자신의 나라를 출국 후 이동의 방향이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노동을 제공을 목적으로 이주하는 이주민(migrant)도 있다. 이주민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immigrant)이란 용어는 킴카리나(Kyimlicka)가 어떤 나라에 합법적으로 왔으며, 시민권을 얻을 권리가 있는 새로 온 사람을 뜻하였으나 미등록의 상태인 사람도 포한한다.

(3) 이주민의 종류

디아스포라(Diaspora): 모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영구히 정착하는 이주민 공동체로서 모국에 대해 자각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경제적 이주민(economic migrant):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타국에서 거주하고자 거주지를 떠난 자를 의미한다. 농번기나 관광 계절 동안 타국에 체류하는 '계절 노동자'도 포함한다. 계절노동자는 일년 중 특정 기간 동안에만 유입국에서 일한다.

계약 노동자(temporary labour migrants):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다. 쿠웨이트에는 30만 명의 외국인 가정부가 있는데 주로 스리랑카나 인도에서 왔다.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는 오렌지를 따거나 과수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미얀마인들이다.

전문직 직종자(professional worker): 다른 나라에서 근무하는 초국적 기업 종사자 중 약 1%는 외국인이다. 필리핀의 경우 매년 3천명 이상의 간호사를 해외에 보낸다.

강제이주(forced migration): 환경적 재난이나 개발 프로젝트에 의하여 강제로 이주된 사람들이다.

미등록 이주민(undocumented migrant): 불법적 입국 또는 비자 만료로 인해 비합법적 지위에 있는 이주민을 의미한다. 미등록 이주민은 비정규이주민, 불법체류자로 지칭되기도 한다.

가족재결합을 위한 이주민(family reunification migrants):
이주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가족 연계를 찾아 이주를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귀환 이주자(return migrants): 다른 나라에 일정기간 이주한 후 본국에 돌아가는 사람을 의미 한다.

국내 유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 무력충돌, 광범위한 폭력사태, 조직적인 인권침해로부터 도망하거나, 자연적 재해 또는 인위적 재해와 그 영향으로부터 피신하기 위해 일상적인 거주지를 떠나야만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선을 넘지 않고 출신국의 국경 안에서 이동하는 사람들도 포함한다.

난민(refugee):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사람이 국적국 밖에 있으며,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박을 의사가 없는 자를 의미한다. 1984년 카타르헤나 선언(Cartagena Declaration)이 채택되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일반화된 폭력, 외부침략, 국내 분쟁, 대규모 인권 침해 또는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생명, 안보와 자유를 위협당하여 국적국으로 부터 피신하는 사람을 난민으로 정의하였다. 난민에는 탈북자 또는 새터민도 포함된다. 전 세계적으로 약 1,300만명의 난민이 있으나, UNHCR 내부 보고서에서는 35~38만 명에 이른다고 본다.

정착민(settler): 새로운 나라에 영구히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매년 약 50~100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등 선진국을 최종 목적지로 한다.

다문화 가정(multiculture family): 다른 문화권으로 이루어진 가정, 하나의 문화권의 가족이 다른 다라 문화권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가정을 의미한다. 국제결혼 가정, 국내 체류 외국인 가정 등을 모두 포괄한다. 특히 국제결혼 한 외국인 출신을 '결혼이민자'라 부른다. 국내 다문화가정지원법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국제결혼가정으로 한정하여 협소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2. 이주 현상의 원인

1) 경제적 원인

(1) 가난하게 살아가는 세계의 사람들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절대 빈곤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 부자는 점점 배가 불러죽고 가난한 사람은 배가 고파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0년 ILO(국제노동기구)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60억 가운데 하루 생활비가 2달러(2,400원)도 안 되는 사람이 '지구 인구의 50%인 30억 명'이라고 발표하였다. 우리가 한 끼 5천 원 하는 설렁탕의 반 그릇의 비용인 2400원으로 하루 3끼의 식사와 의류 비, 교육비, 난방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면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는 절대빈곤으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달 평균급여 5-6만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서는 1982년 이후 해마다 5세 이하의 아동 중 적어도 600만명이 사망한다고 한다. 또 UNDP는 현재 제3세계의 12억 인구가 절대 빈곤에 처해 10년 전보다 두 배로 늘었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아동의 절반 이상이 굶주리거나 영양부족을 겪으며, 16억 인구가 식수난으로 고통받고 20억이 넘는 인구가 실업이나 불완전고용에 시달린다고 한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5이 가장 가난한 1/5에 비해 150배나 더 많은 소득을 번다. 게다가 멀 하지 교수에 따르면 세계 노동 여성들은 수출자유지역에서 저임금, 장시간노동으로 혹사당하면서도 "구조조정으로 좌절당한 남성들이 주로 여성과 아이들한테 분풀이를 하고 있기에 이중, 삼중으로 억압받고 있다"고 고발한다.

(2) 세계화와 빈익빈 부익부

세계화(globalization)는 초국가적 투자, 커뮤니케이션, 정보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확산되면서 나타났다. 세계화는 1980년대 초 영국과 미국의 신자유적인 경제정책과 함께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영국에서는 마거릿 대처수상 시절 '대처리즘(Thatcherism)'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인건 대통령 집권 시기 '레이거노믹스(Reaganomic)'라는 이름으로 '탈 규제화 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세계화가 본격화가 되었다. 그러나 좀더 거슬러 올라가 세계 제2차 대전 후 1948년 브레튼우즈에서 강대국들이 모여 1달러에 금 35온스를 고정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환율제로 정하고 달러를 국제교환 화폐로 책정하였다. 그러나 1973년 석유파동으로 고정환율제가 무너지면서 '돈'이 본격적인 국제투기 자본으로 형성되었고, '돈' 자체가 매력적인 상품으로 등장하였다. 이 시기를 가리켜 '세계화(Globalization)'의 출발이라고 보기도 한다. 특히 1989년 동구권의 붕괴로 세계경제의 유일체제가 자본주의로 고착되면서 시장의 자유의 확립을 위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세계경제의 중심논리가 되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의 주요원리는 금융시장의 탈규제화, 신자유주의적 통화주의와 안보전략이다. 탈규제화정책이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기업과 시장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이다. 세계화 정부의 이차적인 보완원리는 무기판매, 경제상품에 대한 보호무역 수단들, 그리고 특허원이다. 새로운 제국주의 시대에서 사실상의 세계 정부는 브레튼우즈 기구들(IMF, IBRD), 세계무역기구(WTO), 선진서방 7개국(G7)으로 구성되며, 그들의 목적은 상업은행, 보험회사,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제국은 경제적 분야에서 브레튼우즈 기구들(IMF, IBRD), 세계무역기구(WTO), 선진서방 7개국(G7)에게 명령을 내리고, 정치적인 분야에서는 UN 기구들을 조정하며, 저 강도, 중 강도 전쟁과 무기판매를 통해 전쟁을 수행한다. 이념적으로는 광고, 미디어, 과학을 통하여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이념을 강제한다.

(3) 실업과 빈익빈 부익부

자본의 세계화는 노동시장을 불안정상태로 축소해 나가고 있으며, 빈익빈 부익부의 세계 경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세계 전체 부의 분배 상황을 보면, 세계 인구의 20%의 사람이 세계소득의 82.7%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가난한 사람의 20%은 세계소득의 고작 1.4%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우리는 20대 80의 사회라 부른다. 21세기를 넘어선 지금은 오히려 세계 부자의 10%의 사람이 세계소득의 90%를 소유함으로써 10대 90의 사회로 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경제는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 지는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이 되고 있다. 이것이 세계화(Globalization)의 특징이다.

아프리카의 경우 사하라 사막 이남의 47개 정부 중에서 30개 정부가 이들 국제 기구들이 차관을 매개로 강제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종속되었는데 그 결과 빈민의 삶이 유린당했다. 이들 나라의 평균 국민총생산은 1980년대에 해마다 2.2%씩 하락했으며 1990년 1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대 독립 당시의 수준으로 후퇴했다. 이미 1988년에 유엔은 "가장 취약한 인구 그룹들, 특히 여성과 아동, 장애인, 노인들이 가혹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남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남미 사람들은 외채를 통한 부의 유출을 두고 멕시코의 정복자인 '코르테즈 이후 가장 악랄한 약탈자'라고 비판하며 1980년대를 '상실의 10년'이라 부른다. 세계의 지배자들이 칠레 같은 나라를 구조조정의 성공 사례로 제시하지만 칠레에서는 1970년대 초반 이후 실질임금이 40% 이상 하락했고 굶주림이 만연하며 영양결핍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멕시코도 성공적인 위기 극복 국가라고 하지만 인구의 50%는 실직이나 불완전고용 상태에 있으며 최저임금의 실질 구매력이 1970년의 2/3 정도밖에 되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지 않는다.

2) 인구학적 원인

급속한 인구의 증가는 실업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 시켜 이주를 추동한다. 반대로 인구 감소와 노령화는 주변국의 인구를 수용하게 된다. 인구학적 이주는 가족이주, 청년 이주, 저 출산에 따른 대체이주로 구별된다.

인구이동은 전출(Out-Migration)과 전입(In-Migration)을 포함한 국내 인구이동과 이주(Emigration, Immigration)를 포함하는 국제 인구이동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유엔에서는 인구이동(Migration)을 지리상, 단위 지역 간 즉,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주소변경을 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주소의 변경은 없지만, 공간적인 이동을 행하는 통근이나 계절이동, 노동력 이동, 단기간의 여행은 인구이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구이동은 지역과 이동 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배출인자(Push Factor)와 흡인인자(Pull Factor) 및 장애 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지역 간의 거주이동이다. 인구의 이동의 영향에 미치는 요인들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를 이동의 탄력성(Migration Elasticity) 이라 한다.

구 분	영향 인자
배출인자	빈곤, 낮은 임금, 실업, 교육, 문화, 보건시설 등의 부재,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억압, 기근 홍수 등의 자연재해, 지역 및 거주간의 친근감 등
흡인인자	저렴한 농지가격, 고용기회의 증대, 높은 임금수준, 학교 병원, 위락 시설 등의 시설 확충, 쾌적한 환경, 미지에 대한 기대 등
장애인자	이동비용, 심리적 비용(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분리에서 오는 불안감), 이주 규제법, 노동허가규제법 등
개인적인자	성, 연령, 건강상태, 혼인상태, 교육수준, 자녀 수 등

<인구이동의 영향 요인>

3. 국제 노동력 이주 이론

국제노동력의 이동은 자본의 세계화에 따른 노동력 이동의 국제화이다. 자본의 세계화는 1980년대 이후 노동력의 서유럽, 미국, 일본으로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국제노동이동의 현상은 노동력 유입국의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노동시장의 분절화 또는 서비스산업의 양극화라는 노동유입국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 현상이다.

1) 국제노동력 이주 이론

(1) 균형이론(Equilibrium Theory)

균형이론은 각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제반 요인들의 차이로 노동이동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각국의 소득, 고용기회, 종교적 혹은 정치적 자유 등이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 이때의 개인의 상승이 이동의 동기가 된다. 이 이론은 노동력의 송출 국에서 무제한적 임금 격차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존속하는데 기초를 두고 있다. 노동력 수입국에서 수요가 있을 때 노동자들의 국제이동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국제 노동력 이동을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수요-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균형을 찾아 가는 과정으로 파악하려 한다. 따라서 이 이론은 이주노동자를 '부족한 선진국의 노동력을 보충하는 존재(A supplement)'로 간주한다.

(2) 세계체제이론 (World System Theory)

세계체제이론은 균형이론이 노동력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자본의 기제를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비판하면서 나온 이론이다. 세계체제이론은 자본주의의 확대에 따른 국가-자본-노동의 역사, 사회, 경제적 맥락에서 노동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세계체제이론에 따른 노동력의 국제 이동은 자본주의의 확대로서 어느 국가가 세계경제체제 속으로 편입된 후 일어나는 현상이다. 저개발 국가의 저임금 노동이 선진국가로 이동 한다는 것이다. 즉, 선진국에서는 노동집약적이면서 상대적으로 노동이 있는 곳으로 자본의 이동이 이동하기 불가능한 부분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본다. 선진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동화, 기계화 과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대규모의 노동력 저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적, 법적 통제력이 용이하고 값싼 노동력으로서 이주노동자의 활용을 선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가들은 정치적 통제를 가함으로써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배제시킨다. 선진국 노동자의 임금상승에 따른 생산원가 절감-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저임금 노동력 찾기와 거세어진 자국의 노동을 통제하려는 국가와 자본의 공동 전략으로 이해한다.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은 자본의 노동의 유연화 전략으로서 자국민에 대하여는 비정규노동자의 확대와 국제적으로는 이주노동자의 확대를 꾀한다. 자본의 재구조화는 노동력의 재구조화를 수반하는 현상으로 이해한다.

2) 노동시장의 구조 이론

노동시장이란 '노동력 상품'의 공급과 수요에 관한 정보가 교환되고, 그 결과로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매매되는 사회적 메커니즘이다. 노동시장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는 통합노동시장 이론과 분단노동시장 이론이 있다.

(1) 통합노동시장이론

통합노동시장이론에는 신고전파 경제학에 기초한 '경쟁적 단일노동시장 이론'과 '인적 자본 이론'이 있다. '경쟁적 단일노동시장 이론'은 노동시장을 수요와 공급이 경쟁적이며, 연속적 시장으로 보는 입장이며 노동자에게는 기술 숙련, 지역 이외의 조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을 전제한다. 노동자들은 직업선택, 임금결정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적 자본 이론'은 노동시장을 다수의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자유롭고 무제한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완전경쟁 시장으로 간주한다. 임금의 결정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노동력의 질적 차이가 임금차이의 반영으로 본다.

(2) 분단노동시장이론

분단노동시장 이론은 현실적으로 임금시장 보다는 직무 시장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인종, 민족, 사회계층, 성에 따라 직무시장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분단된다는 것이다. 분단노동시장에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타협에 의한 비 경쟁 집단을 창출하는 내부노동시장(Inner Labor Market)이 형성된다. 이러한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은 기업별 노동시장의 계층화 시키는 메커니즘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내부시장만 논의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외부시장을 고려하면서 저임금노동시장의 형태를 분석하기 위한 '이중노동시장이론'을 발전시켰다. 이중노동시장이론은 한 국가의 경제구조를 이중경제로 파악한다. 기업을 시장지배력에 따라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독과점을 가진 핵심기업(Core Firm)과 경쟁적 시장조건에 놓여있는 주변기업(Periphery Firm)으로 구별한다. 일차적 노동시장은 주로 내부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시장은 주로 상대적으로 고임금, 안정적 고용 및 승진이 보장된 부문, 좋은 근로조건, 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이 보장된다. 반면 2차 노동시장에서는 여자, 청소년 노동자, 도시빈민, 이주노동자 등으로 구성된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로 보면 된다. 특히 2차 비정규직 노동 시장은 주기적, 계절적 영향을 받는 부분과 일치하며,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승진기회의 부족,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특징 져진다. 이러한 이중노동시장의 구조는 1차 노동시장에 고용된 노동자는 항상적으로 잉여가치를 생산하도록 하지만,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 직무는 2차 노동시장의 미숙련 노동자를 이용하여 자유로이 채용, 배치, 해고함으로써 노동의 유연화를 꾀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도 미숙련 노동자의 인력부족 현상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업이 노동력을 적절히 이용하는 과정에서 지역 특성 산업이 형성되고 지방노동시장이 발달된다. 지역노동시장의 입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은 상품으로서의 특수성으로 인해 분절된 노동시장의 구조적 조건과 지역사회에 기반 한 영역의 재생산과정을 통해 공급된다고 본다. 따라서 노동력의 공급은 지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지방노동시장은 분절된 노동시장을 차등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통합시켜 나간다. 즉 성, 학력, 인종 등으로 분절된 노동시장이 통근 가시권내에서 지역적으로 특성화 되어 나간다.

4. 이주의 역사

인류역사란 그 초기부터 생존 또는 생산을 위한 이주의 역사이다. 이러한 이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은 민족국가가 형성된 후 국경이란 개념이 생기면서 통제를 받기 시작하였다. 최근의 일만 살펴보면, 19세기에는 주로 식민화에 따른 이주노동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국가들이 독립을 하자 해외 이주 아시아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귀환운동이 이루어지면서 아시아 내의 이주노동은 점차 감소되어갔다. 20세기 중반부터는 서유럽, 미국, 중동으로의 대규모적인 이주 노동 송출이었다. 세계의 이주는 다음의 4단계를 거쳤다고 본다.

① 그린 이주(Green Migration)로서 주로 식량을 구하거나 목초지, 기후 환경에 따른 이주이다.
② 블랙 이주(Black Migration)로서 주로 노예노동을 통한 강제이주이다. 흑인노예 사냥이든 식민지 거주인의 강 제 노역이든 강제적 이주노동이다.
3) 레드 이주(Red Migration)로서 3D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노동자이다. 산업노동자로 포섭될 수 없는 여성의 경우 국제결혼이나 유흥업을 통하여 국제 노동시장에 편입되었다.
③ 화이트 이주(White Migration)이다. 중산층, 유학생, 지식인들이 선진국에 이주하면서 현지에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위기와 같이 새로운 경제적 국면을 맞이하면서 이주민은 현지인 출신이 아니기에 가장 먼저 대량 해고의 반열에 오른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세계 금융기업의 11만 명의 우수 인력이 퇴출 될 예정이다. 이들 화이트들의 새롭고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위한 새로운 이주를 시작 할 것이다. 나아가 국내 고급인력 역시 경제적 불황에 따라 보다 높고 안정된 수입을 찾아 해외로의 이주가 빈번해 질 것이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1) 기후 변동, 정복, 침략에 의한 이주

역사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주로 기후변화가 대규모의 인구 이동을 유발 시켰다고 보는 것에 동의한다. 초기 대규모 인구 이동의 경우, 베링해협(Bering Strait)으로 불리는 연육교(land bridge)를 통해 아시아에서 남미와 북미로의 집단적 이동을 했다고 본다.

BC 2000년 수메르 문명에서도 노예들을 코뚜레를 채웠다. 노예는 전적으로 주인의 소유물로서 가축과 같이 사고 팔 수가 있었다. AD 2세기까지만 해도 로마에는 2만의 시민을 부양하는 40만의 노예가 있었다. 시민 1명당 20명의 노예가 있었던 셈이다. 몽골제국은 중국 침략을 시작으로 아프카니스탄, 페르시아, 소아시아, 시리아, 동유럽까지 깊게 침입하면서 거대한 이주의 길을 열었다. 아프리카의 반투민족은 고향인 중앙아프리카를 떠나 서쪽으로 이동한 후 남아프리카의 끝까지 이동하였다.

아시아에서 이주노동이 시작 된 것은 5세기 이후 중국인과 인도인의 동남아 지역으로의 진출이 그 시작이었다. 그러나 대규모적인 이주노동은 아시아지역이 유럽열강들에 의하여 식민지화를 겪으면서 규모가 커져갔고, 19세기 이후에 아시아에서의 노동은 더욱 활발해져 갔다.

2) 탐험과 식민지 이주

1500년대 유럽의 탐험가들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을 탐험하고 식민지를 개발하였다. 이 시기의 유럽의 정치 경제 권력자들은 상품공급처를 확보하고 전략적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 서로 경쟁 하였다. 이시기에 주로 신뢰 할 수 있는 지리정보 구축, 정확한 지도 제작, 항해 기구와 가술의 발달이 이루어졌다. 죄수, 군인, 농민, 상인, 장인, 공무원, 선교사 등이 이주하여 대규모로 반전 과정에 있던 무역, 관업, 농업 등에 종사하였다.

3) 노예이주

새로운 식민지에 대한 생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이 노예무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이주로 나타났다. 16세기 중반 최초의 노예선박이 아프리카에서 동인도로 출발하였다. 15세기 이후 4세기 동안 흑인 노예들이 1,200~1,500만 명 정도가 아프리카에서 팔려 나갔다. 아프리카, 카브리해 지역과 인도양으로 수송되었다. 이들은 목화, 담배, 설탕 같은 농산물의 경작과, 귀금속 채굴 등과 같은 관업에 종사하였다. 흑인들은 '검둥이'이었고, '야만인'이었다. 흑인들을 교역 업으로 유럽 상인들을 '노예상인'이라 불렀다. 흑인 노예는 아주 중요한 '상품'이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는 배안에서 사망한 흑인들만 150만 명으로 추정한다. 쓸모없게 된 상품 노예는 장례식도 없이 바다 고기들의 밥으로 던져졌다. 들 노예들에게는 이름도 없고, 그저 일만하는 존재였으며, 일을 못할 경우 무조건 채찍으로 맞아야 했다. 인격적 대우는 고사하고 '말하는 짐승'취급을 받았다. 노예들에게 인권은 사치였다.

노예무역의 경향은 다음 세 가지로 나타났다.

(1) 상품과의 교환; 상품과 노예와의 교환으로서 선박에 공산품 주로 총 등을 싣고 해안을 따라 있는 공장들과 무역항에서 이루어졌다.

(2) 노예의 매매; 식민정착지로의 매매로서 상품과 교환된 노예가 남미나 북미의 식민정착지로 팔려갔다. 이때 많은 노예들이 사망하여 바다에 버려졌다. 상인들은 노예 판매대금으로 귀향 할 때 농산품을 구매하였다.

(3) 강요계약노동자(indentured labourer); 19세기 중반 노예무역 폐지 이후 국외에서 특정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기간 동안 노동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다. 노동이주시스템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제 노동조건은 노예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가혹한 노동규율과 최소의 임금으로 연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시아에서 쿨리(coolies; 하급노동자)로 알려진 강요계약노동자들은 주로 인도와 중국 출신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동인도, 아프리카, 북미, 인도양 섬들, 동남아시아지역에서 플랜테이션농업, 도로, 철도, 건설업에 종사하거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하였다. 노예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이후 100년 동안 3천 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인도 대륙으로부터 송출되었다. 이들 중 2천 4백 만 명만 귀환 하였고 나머지는 정착민으로 남았다. 19세기말 계약노동자는 서서히 사라졌다.

4) 현재의 이주

현재는 세계 1억2천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주노동자로 세계를 떠돌며 살아가고 있다. 과거 힘없는 사람들이 '무기와 군대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노예로 밀려났다면, 지금은 '돈의 힘'에 밀려나 이주노동자가 된다. 국제적 이주의 수량에 대한 설득력 있는 통계는 ILO가 1998년 초를 기점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아프리카 1,600~2,000만 명, 아시아 600~900만 명, 유럽(구소련과 유고연방제외) 2,000만 명, 북아메리카 1,500~1,700만 명, 남, 중앙아메리카 700~1,200백만 명, 서아시아(아랍) 600~7))만 명 등으로 추정한다. 이주노동자들 중 더 큰 희생자는 이주여성이 있다. 지구상에 가장 가난한 13억의 인구 중 70%가 여성이며, 같은 일을 해도 여성들은 남성들이 받는 것의 평균 3/4를 받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2배 무임금 노동을 한다. 인류의 네 가정 중 한 가정이 여성가장이다. 이주 노동을 하는 소수자들은 인종차별, 강등, 혐오증, 증오, 법적 배제, 인권침해 등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의 아시아 지역 내의 노동이동의 증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나라별 경제발전의 차이, 일본과 아시아 신흥 공업 국가들의 대 아시아에 대한 직접투자의 증가, 중국과 베트남 등의 개방화 정책, 그리고 아시아 지역 내의 많은 국가들의 출입국 정책의 완화로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국경없는 노동의 현상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현대에 들어와서 이주민들이 소수자로서 타국에서 인신매매에 노출되거나 인권침해를 당하면서 이주가 현대판 노예제의 부활로 국제 사회에 비추어지기 시작하였다. 국제사회는 1994년 카이로에서 '국제인구개발회의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을 발표하였다. 이 행동 계획의 10장에서는 이주민의 권리, 합리적 이주 프로그램, 이주민 인신 매매방지, 원치 않은 이주원인 감소, 이주의 개발 잠재력 증진, 이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 등을 포괄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유엔 회원국들은 논란만 거듭 할 뿐 의제에 합의 하지는 못했다.

한편 2004년 초 '국제 이주 세계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가 시작 되었다. 이 기구는 유엔 총회의 권고로 설립되었으며, 이주 관련 인식을 개선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5) 이주와 여성

세계화는 '가난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와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세계의 1억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주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주 노동을 하는 소수자들은 인종차별, 강등, 혐오증, 증오, 법적배제, 인권침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해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희생자들의 중심에 이주여성이 있다.
지구상에 가장 가난한 13억의 인구 중 70%가 여성이며, 같은 일을 해도 여성들은 남성들이 받는 것의 평균 3/4를 받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2배 무임금 노동을 한다. GAATW(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여성인신매매에 대한 세계적 동맹) 단체에서는 이주 여성의 국제 이주가 이주 노동자 형태인 신체적 모집에서 상업적 착취로 이어지는 결혼, 가정부, 예술가 매매춘, 조직범죄 피해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한다.
세계화는 다음 다섯 가지 영역에서 영향을 미친다. 첫째, '고용의 여성화' 현상이다. 아시아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에 고용된 노동자의 80~90%가 여성이라 한다. 둘째, '이주노동의 여성화' 현상이다. 아시아에서 '이주노동의 세계화'는 '이주노동의 여성화'와 일치하고 있다. 이주노동의 세계화는 가족의 해체와 파괴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여성에 대한 폭력의 증가'이다. 실업 혹은 비정규 고용상태는 전통적인 남성상이 세계화의 경제재편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이것은 가정에서 여성을 향한 폭력으로 왜곡되어 분출되고 있다. 넷째, '여성의 상품화'이다. 세계화는 가난한 여성들과 나이어린 소녀들이 점점 성장해 가는 세계 섹스 산업의 희생물로 바쳐지고 있다. 다섯째,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여성의 관계'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적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가 축소되고 주요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는 공공 서비스 요금과 생필품 가격인상을 가져온다. 적은 수입에 살림을 해야 하는 여성들은 이중 삼중의 역할과 피로를 강요당한다.

[이주노동자 유입에 따른 영향에 관한 이론]

(1) 대체가설(Replacement Hypothesis)

대체가설은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국내노동자들의 기회를 빼앗아 갈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고용이 국내임금과 작업환경을 하락시켜 결국 내국인노동자의 고용기회를 간접적으로 위축시킨다는 '대체관계'의 입장을 취한다.

(2) 분단가설(Segmentation Hypothesis)

이주노동자가 국내 노동자와의 '보완관계'에 있다는 분단가설(Segmentation Hypothesis)이다. 이는 국내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는 노동의 질이 다르므로 이주노동자는 국내 노동자가 기피하는 3D 단순노동에 집중되므로 국내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수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퇴출되는 3D업종의 도산과 해외이전을 막음으로써 오히려 국내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해 줄뿐 아니라 국내 노동자의 상승 이동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상반된 견해는 이주노동자의 고용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복합적이며, 이주노동자의 특성과 종사산업과 내국인의 특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이 두 입장은 업종이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건설현장, 서비스업종 등 경우는 대체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나, 일반적인 3D업종의 공장지대의 경우 보완관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3)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국내 노동시장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국내 이주노동자 유입은 내국인 노동자와 노동시장에서 경쟁을 하며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노동의 유연화 확보, 값싼 노동력 선호, 공장의 해외이전, 직장 폐쇄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실업을 증가시킨다. 때로 이주노동자는 국내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겹치는 부분에서는 노동의 대체효과가 발생하여 국내노동자들의 실업자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주로 건설현장의 부분에서 조선족과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면서 건설현장 내국인의 조선족에 대한 반감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시장의 논리는 실업문제를 걱정하는 단위가 주장하는 '국내 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노동시장의 보호는 정치논리이지 경제논리가 아니다.

내국인 노동시장과 이주노동자 인권을 보호를 위하여 설동훈 교수는 '국내노동시장 보완의 원칙' '산업구조조정 저해 방지의 원칙' '균등대우의 원칙' 3가지를 지키면서 이주노동자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엄격히 시장의 논리에 비추어 보면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충격 완화 조치로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내 실업문제 보다는 시장의 논리에 따른 산업구조조정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인력부족의 논리가 결국 대세를 이루면서 이주노동자 도입규모는 더욱 커져 나갈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의 유연성 확보의 차원에서 권리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관철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인권의 논리와 일자리 확보 논리보다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장의 논리가 더 우선시 되는 자본주의 시장논리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4강. 한국의 다문화와 이주 역사(1)]

1. 고대시대의 이주

1) 고조선의 성립

한민족의 발원지라는 시베리아 바이칼호수를 기점으로 지금의 몽골, 티베트, 시베리아, 만주로 이어지는 북방 기마민족(우랄알타이어계)에 속한다. 한민족의 '韓'은 북방민족의 수장이란 뜻이라고도 한다. 고대로부터 화하족은 한(韓)민족을 이(夷)라 불러왔고 <사기>에 등장하는 동이는 대륙의 동쪽(하북, 산동, 요동, 요서)에 사는 민족을 의미하고 말갈족과 왜도 포함된다. 요녕 지역이 동이족(東夷族)의 활동중심지였고 화하족보다 먼저 환국(桓國)이라는 고대국가를 형성하였다. 동이족은 고조선의 제후국으로 고리(高離), 시라(尸羅), 고례(高禮), 옥저(沃沮), 맥(貊)이 있고, 대륙사서의 <삼국지-위지>에 부여, 고구려(高句麗), 동옥저(東沃沮), 예(濊), 한(韓)이 동이로 기록되어 있고 <후한서>에도 부여(夫餘) 읍루(邑婁), 고구려, 구리(句驪), 동옥저, 예, 한, 위(倭)가 동이이다.

환국을 계승한 고조선(古朝鮮- 47대 2000년)은 요녕을 중심으로 하북, 산동, 만주, 한반도를 강역으로 삼한(三韓)이라는 분권제를 하는데 삼한의 위치는 요녕 지역에 진한(眞韓) 하북에 번한(番韓) 그리고 산동지역에 마한(馬韓)이다.

고주몽이 고구려(高句麗)를 건국하고 번조선의 기준은 한반도의 마한(馬韓)을 장악하며 절강지역에 있던 소호씨(少昊氏)의 가야(加倻)세력은 한반도의 남부에 정착한다. 이렇게 고조선의 붕괴로 한(韓)민족의 동이족은 분리되어 발해연안지역은 열국시대로 진입하는데 백제(百濟)와 고구려가 다시 통합하게 된다.

대륙의 요녕에서 한(韓)민족의 선조가 만든 홍산 문화(紅山文化)가 발견되었는데 화하족(중국: 華夏族)의 앙소 문화(仰韶文化)보다 빠른 문화이다.

2) 진(辰)국(마한, 진한, 변한)의 이주

(1) 진국

주요 사서의 기록을 보면, 《삼국지》에는 진한이 옛날의 진국이라고 하고 《후한서》에서는 마한, 진한, 변한의 삼한은 모두 옛날의 진국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 《삼국지》에 인용된 《위략(魏略)》에서는 조선의 재상 역계경(歷谿卿)이 우거왕(右渠王)에게 한 간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백성 2,000여호와 함께 동쪽의 진국으로 갔다고 하고 《한서》에서는 우거왕이 진국이 한나라와 교류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진국의 삼한(三韓)은 삼국 시대이전 한반도 중남부에 자리 잡고 있던 연맹왕국인 마한(馬韓), 변한(弁韓), 진한(辰韓)을 통칭하는 말로, 청동기 시대에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성립하였던 진국에 기원을 둔 것이다. 《삼국지》에는 진한이 옛날의 진국이라고 하고 《후한서》에서는 마한, 진한, 변한의 삼한은 모두 옛날의 진국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 마한의 백제국(伯濟國)이 백제로, 변한의 구야국(狗邪國)이 가야로, 진한의 사로국(斯盧國)이 신라가 되었다는 설이 일반적이다. 《사기》 〈조선열전〉에도 위만조선의 동쪽에 진국이 있다고 그리고 있다.

(2) 삼한의 거주 변동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 무렵 청동기 및 초기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존재한 초기 국가로, 위만조선과 공존하였고, 이후 마한, 변한, 진한의 삼한으로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 제정일치 사회로서 세형동검(細形銅劍)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한 농경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사회로 추정된다. 다만, 기록이 매우 적어서 이것이 특정한 한 국가를 가리키는지 혹은 인접한 여러 소국이나 정치 집단을 통틀어 말하는지는 뚜렷하지 않다.
진시황(BC210년경)이 만리장성과 같은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이면서 폭압정치를 일삼았다. 이 때 폭정을 견디지 못한 진나라(BC 221-207) 사람들이 한반도 남부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다. 이들은 진한 및 변한 24국을 세울 정도로 규모가 상당 했다. 기마민족 세력이 마한지역의 백제를 건국하였다. 진한의 12국은 경주 지역의 사로국에 의하여 점차 통일됨에 따라 신라로 발전 하였다.

2. 삼국시대의 성립과 이주

1) 백제

(1) 백제의 출발

백제가 대륙의 산동성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대륙의 정사에 기록되어 있으며 대륙백제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다. 대륙에 있던 백제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대륙의 25사가 중요한데 '백제전'이라고 공식적으로 기록한 사서는 〈사기〉 〈전한서〉 〈후한서〉 〈삼국지-위지〉 〈진서〉 〈송서〉 〈양서〉로 〈송서〉에는 백제가 하북성 지역에 있다고 하였다.
백제는 아시아 최강의 해상제국으로 대륙의 25사를 비롯한 사서에 기록되어 있고 영토는 요서지역과 대륙의 동부지역을 지배한 사실이 〈송서〉, 〈남제서〉, 〈양서〉, 〈남사〉, 〈북제서〉, 〈통전〉에 있다. 환국(桓國)시대부터 황하 중류(앙소문화)와는 구별되는 문화권으로 한반도 및 만주와 밀접한 문화교류를 갖는 황해-발해문화권을 형성한다. 이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을 동이(東夷)라 불렸고 3,500년 동안 대륙의 동부를 지배한다. 백제는 이미 대방고지의 소서노왕국(於瑕羅王國)의 군사력으로 건국 초부터 해상무역활동을 시작했으며 3세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륙영토를 개척하였다.

(2) 백제의 통치지역

〈남제서〉'백제전'을 보면 대륙의 동해안지역을 백제가 통치하였으며 남제(南齊)라는 나라가 있던 당시의 백제왕은 동성왕이고 그의 무덤이 산동 반도에 있다고 화하족의 25사에 기록되어 있다. 백제는 대륙의 산동과 절강을 지배하고 황해와 남해 그리고 동지나해의 해상을 장악하면서 대륙의 남부를 속국화 한다.
동성왕은 〈남제서〉의 기록같이 백제장군 7명을 7구역에 각각 파견하여 통치하게 하는데 쉽게 말하면 총독 7명을 두고 대륙의 동해안을 통치한 것이다. 〈남제서〉'백제전'의 7장군 성씨들은 대부분 유서 깊은 8성 대족으로 대륙의 동해안을 지배하는 통치권을 위임한 것이다. 지금도 백제의 풍속이 남아있는 광서장족자치구 창오현이 있는데 백제군이라는 백제의 지명은 광동성 흠현 서북쪽 180리에 있고 오문성과 계림성의 경계가 교차하는 곳입니다. 진평군이 설치된 지역은 대륙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팥문화권'에 속하고 운남성의 호도현의 소수민족인 나시족은 한(韓)민족의 발명품으로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운반도구인 지게를 사용하는데 한국식과 모양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백제장군이 임명된 지명들은 대륙의 지명으로서 한(韓)민족의 사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름이다. 광양태수, 조선태수, 대방태수, 광릉태수, 청하태수, 낙랑태수, 성양태수를 지도상에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2) 고구려

(1) 고구려의 발원

고구려는 홍산문명(紅山文明)의 발원지인 요녕에서 동이(東夷)의 국가 고조선을 계승해서 일어난 한(韓)민족의 국가이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의 건국연대를 BC.38년으로 기록하고 광개토왕을 추모왕(鄒牟王)의 12세손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광개토대왕비에는 17세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구려는 한(韓)민족의 국가 고조선(古朝鮮)을 계승하여 건국했고 화하족과 대립되는 나라이다. 환국(桓國)을 대신해서 요녕지역에서 일어난 고조선이 한(韓)민족의 동이(東夷)라고 사서에 나와 있고 고조선이 망하고 북부여(北夫餘)가 건국 된다. 고구려라는 명칭을 고주몽이 처음 사용한 시기가 BC.37년 이고 해모수가 천제(天帝)라 하면서 북부여를 건국한 연대가 BC.239년이므로 고구려 건국연대도 이때로 볼 수 있다.

북부여의 왕력을 보면 해모수(解慕漱), 모수리(慕漱離), 고해사(高奚斯), 고우루(高于婁)와 고두막한(高豆莫汗), 고무서(高無胥) 이렇게 5대의 단제가 있었다고 나오는데 <삼국사기>의 12세손과 광개토대왕비의 17세손의 5세의 차이와 일치한다. 광개토대왕비는 북부여의 해모수를 시조로 추모왕을 고구려 국호의 시조로 기록한 것으로 풀이 할 수 있고 비문의 17세손에 의하여 북부여역사를 고구려역사에 포함하고 있다.

(2) 고구려의 지역

해모수의 북부여에서 주몽(朱蒙)의 고구려로 변경된 영토를 <삼국지-위지>, <후한서>의 동이기록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삼국지-위지>에 진장성 남쪽에 고구려가 있다고 했으며 <후한서>'동이전'의 기록을 보면 고구려의 위치는 북평, 태원에 가까운 하북성 북부지역으로 나옵니다.

백제와 고구려는 온조, 비류와 주몽을 시조로 설정하고 있지만 모두 부여의 동명왕을 제사지내는 사당을 갖추고 있는데 고대에 있어서 사당은 친족집단의 구심점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당은 종가에서 관장하는데 동명왕묘가 부여땅이 아닌 환인지역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고구려는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긴 후에도 참배하였고 백제와 고구려왕들은 즉위할 때 이곳을 참배하는 의식을 통해 왕위에 대한 보증을 얻었다. 결국 두 나라는 서로 부여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는 양보할 수 없는 경쟁의식을 낳았고 급기야 무력대결로 치닫게 된다.

3) 가야

(1) 가야의 발원

42년 김수로(金首露)가 금관가야(金官伽倻)를 건국하면서 시작된다. 532년 금관가야는 신라에 병합된다. 마지막 왕 김구해(金仇亥)가 항복하여 왕비·왕자와 함께 신라 수도로 옮겨 오고, 562년 신라와 대사야가 병합 된다.

김수로는 48년에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인 허황옥과 결혼한다. 가락국기를 보면 서기48년 7월 27일 김해 앞바다에 붉은 돛이 달린 배가 나타나 그 배에서 20여명이 내렸는데 그중 한 미인이 말하기를 자신은 아유타국 공주이며 이름은 허황옥이라 한다고 하였다고 한다. 가야는 영산강 유역 세력, 마한 잔존세력과 허황옥의 해양 세력의 연합이었다.

(2) 가야의 역사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가야사가 전개되었던 무대는 고고학적으로는 낙동강 동쪽의 동래・양산・창녕 등과 섬진강 서쪽의 진안・장수・임실・남원 등에서도 가야문화의 흔적들이 확 인되고 있다.
가야는 통일왕국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금관가야 이외에 5개가 더 있다고 한다. 김해의 금관가야는 400년 경에 고구려 광개토왕의 군대에게 패전한 뒤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고, 이후 고령의 대가야, 함안의 안라국이 중심이 되어 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다. 6세기로 접어들면서 가야 연맹은 신라와 백제의 틈바구니 속에서 치열한 외교정책을 펼쳤으나, 결국 금관가야는 532년(법흥왕 19년), 신라에게 멸망당하였다. 수로왕부터 구형왕에 이르기까지 10대 490년만의 일이었다. 한편 대가야는 30년 후인 562년에 다시 신라에게 멸망당함으로써 마침내 가야 연맹은 역사의 무대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4) 신라

(1) 신라의 발원

시조는 BC 1세기 무렵의 박혁거세(朴赫居世)로서 그는 경주평야에 자리잡고 있던 6부족의 우두머리들에 의해 추대되었다고 한다. 신라 초기의 왕들은 박(朴)·석(昔)·김(金)의 3성(姓) 가운데에서 추대되었는데, 이들은 6부족 중 특히 우세하고, 또 서로 밀접한 혈연적 관계를 가진 3개 촌의 부족들이었다. 신라는 4세기 중엽 부근의 여러 작은 나라들(김관가야, 대가야등)을 차례로 통합하면서 연맹왕국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4세기에 들어 내물왕이 거서간(居西干:제사장) ·차차웅(次次雄:무당) ·이사금(尼師今:계승자)으로 변천한 왕호를 마립간(麻立干:통치자)으로 개칭하고, 3성 중 김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하면서 고대국가의 실질적 시조로서 왕권을 강화하였다.

(2) 신라의 조상으로서 흉노 논쟁

① 신라는 훈족과 관련이 있다.
신라는 역시 고구려, 백제와 마찬가지로 고조선의 유민(遺民)들이 중심이 돼서 세운나라이다. 이종호씨는 훈족과 가야 신라족의 유사성을 주로 고고학적으로 설명했다.
가. 서유럽에 지금도 살고 있는 훈족 후예들에게서 몽골리안 반점이 발견된다.
나. 훈족이 쓴 예맥각궁이 한반도에서 쓰인 활과 비슷하다.
다. 훈족의 머리 골상이 편두(偏頭, 납작머리)라는 점이다. 삼국지 위지동이전에는 진한(辰韓, 신라지역) 사람들이 모두 편두라는 기록이 있다.
다. 훈족의 이동경로에서 발견되는 청동으로 만든 항아리는 북방유목민족의 제의용기인데 같은 것이 가야지방에서 발견된다.
라. 훈족은 이 항아리를 말 잔등에 싣고 다녔는데, 1924년 경주 김령총에서 발굴된 기마인물상 토기가 항아리를 싣고 있다.
마. 이 항아리에서 발견되는 문양이 신라 금관에서 발견되는 유물과 비슷하다.
유목민족의 상징이 금(金)이다. 유목민족은 금제품을 좋아하고 금세공 기술이 뛰어났다. 이들의 본거지였던 알타이 산맥의 그 알타이가 금(金)이란 뜻이다. 이들이 성씨를 금이라고 후에 정했다는 것도 퍽 상징적이다.

② 동이족 편두머리
김해 예안리 고분군에서 발견된 4세기대의 목곽묘에서 인공 변형된 두개골을 '편두(扁頭,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cranial deformation)'가 발견 되었다. 편두는 중국인과는 구별되는, 동이(東夷)족 사이에 매우 오래 동안 성행했던 풍습이다. 편두에 관한 기록은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아이가 태어나면 긴 돌로 머리를 눌러두어 평평한 머리를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진한(辰韓) 사람들의 머리는 모두 편두이다.

③ 무덤양식으로서 적석목관분
김씨 왕족의 무덤이 경주 고분이다. 서기 4-6세기에 축조된 이 고분은 적석목곽분이라 불린다. 시신을 목곽 안에 넣고 그 위에 돌을 쌓은 다음 봉토를 입힌 무덤이다. 이 적석목곽분은 유라시아 북방 초원 지대의 주인공이었던 흉노의 무덤과 같다. 1973-74년에 발굴된 천마총, 황남대총이 적석 목곽분의 전형이다. 이 적석목곽분은 경주지역에서 4세기 초에 갑자기 나타난다. 이 무덤 속에서 금관, 금 허리띠 등 많은 금 세공품이 발굴되었다. 그 디자인도 북방유목문화의 특징을 띠고 있고 중국식 물건은 없다. 이 무덤에는 로마지역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 제품도 많이 있었다. 신라 지배층이 몽골고원-중앙아시아-흑해로 이어지는 초원의 길을 통해서 서양문명세계와 무역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낳게 한다.

④ 신라의 직제와 유목의 직제
신라 김씨 왕들은 내물 마립간, 실성 마립간 식으로 불렸다. 마립간이란 말은 여러 부족들의 대표자란 뜻인데 유목민족의 칸(칭기즈 칸의 칸)과 같은 어원이다.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으로 시베리아 알타이식의 칭호이다. 지증왕(500~514) 4년에 중국식 왕王의 칭호를 사용하였고, 다음 임금인 법흥왕(514~537) 23년에 국호를 신라로 하여 연호를 건원으로 하였다. 문무왕(文武王)은 스스로 자신의 비문(碑文)에서 『나는 김일제(金日磾)의 후손이다』 고 말하고 있다. 이 김일제가 바로 진(秦)나라 땅에 살던 흉노왕의 아들이었다.

⑤ 흉노족과 한민족은 동일 민족
흉노족은 약 3000 ~ 2000 년 전까지는 우리 민족과 동일 족이었다. 흉노는 고구려, 신라, 훈족과 오스만 튀르크, 말갈, 여진족으로 그 명맥을 이어왔던 것이다. 흉노국은 고조선의 후진이 세운 나라이다. 북만주에서 대제국을 형성한 흉노는 고조선의 후예들이다. 흉노 기마민족의 한 부족이 3-4세기 중국 대륙의 5호16국 시대 북방기마민족 대 이동시 한반도로 이주하였다.
서기 342년 겨울, 「半흉노」의 일파인 선비족(鮮卑族) 모용황은 5만5천의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했다. 험준한 길인 남로(南路)에 4만을, 평탄한 길인 북로(北路)엔 1만5천을 투입했다. 거꾸로 고구려는 수비 병력의 전부를 북로방어에 쏟았다. 결국 고구려는 대패했고 반면 북로로 침공했던 선비족 기마군단 1만5천은 고구려 군에 의해 모두 죽은 것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김알지로 대표되는 신라계 김씨 세력들은 흉노계인데 이들이 고구려(4세기 선비족 모용황의 침입)에 쳐들어왔다가 일부가 남하여 신라에 자리 잡게 되었다.
3세기에 쓰인 진수(陳壽)의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한(韓)(백제, 신라, 가야의 전신인 마한, 진한, 변한의 통칭) 사람들은 구슬을 좋아하고 비단이나 금을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고 쓰고 있다. 그렇다면 금관을 쓰고 서방과 교류하면서 페르시아와 로마에서 만든 유리잔을 수입하고 기마(騎馬) 부대를 지휘하였던 이 집단은 3세기 이후에 경주지역에 들어온 새로운 흉노족이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3. 한반도 거주민의 일본, 탐라로의 이주

왜라는 국명은 응신(應神)때이고 일본이라는 국명은 천지(天智)때 생긴 것이다. 왜는 가야인들이 건너간 야요이 시대이며 일본은 백제 인들이 중심이 돼 세운 나라시대이다. 왜의 고분 시대에 한반도 남단에서 4-7 세기경에 1백만 명 이상이 긴키(近畿) 지방에 건너와 일본 고대 왕조를 건설한다. 300년에서 710년에 야마토 정권이 있었다. 야마토는 무령왕의 후손이다. 천왕은 가야계 스친 천왕을 거쳐 백제계 오우진 천왕을 거친다.

1) 가야의 이주

가야는 42년에 김해 김씨의 시조인 김수로에 의해 건국되어 520년간 존속했고 고구려, 백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철기문화를 꽃피우며 김해만을 중심으로 해상왕국을 건설하고 일본열도에 진출해서 일본 열도왕(대화왕조)의 기원이 된 것 같이 동북아문화의 젖줄 역할을 하였다.

AD. 1세기경에 가야의 김수로왕의 선견왕자와 묘견 공주가 무리 3천을 이끌고 개척했던 야마다(邪馬臺)라는 나라가 구주 팔대시(八代市)를 중심으로 있었고 그 후 다시 한반도에서 건너간 연오랑과 세오녀에 의해 계승된 것으로 3세기 중반 화하족 사서에 기록되어있는 야마다이다.

일본열도의 국조인 응신천황은 한반도의 가야왕족이며 일본열도의 가야(왜)왕으로 즉위하는 연대는 390년으로 이 시기부터 백제와 열도가야(왜)가 분립되는 시기이다. 가야왕 아라사의 아들 응신이 열도가야(왜)왕에 오르고 백제의 간섭에서 벗어난 '일본열도의 가야국'이 탄생하고 이 왕국이 일본학계에서 말하는 '대화왕조'입니다.

2) 백제의 이주

'대화왕조'는 정확히 390년부터 479년까지 90년간 존속했고 그 후에 동성왕이 백제왕이 되어 과도기가 23년간 있었고 백제의 부여계로 무령왕부터 일본열도가 백제의 세력이 된다. 백제가 한반도의 가야를 364~ 369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공격하고 가야가 개척한 일본열도의 구주까지 공격함으로써 가야와 30년 전쟁에 돌입하고 완전히 병합하는 것이 <일본서기>'신공기'에 실려 있다.

백제인의 왜 지역으로의 이주는 5세기 초에 전기 가야연맹이 해체되었을 때, 5세기 후반에 고구려에 의해 백제 수도 위례성이 함락되었을 때 이주가 이루어졌다. 6세기 중엽이 백제가 멸망했을 때 대거 이주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신라보다는 한반도에서 일찍 사라진 국가인 가야와 백제에 친근성을 보였던 것이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의하면 5세기 후반부터 한민족 이주민들은 열도로 이주하여 제철이나 제철농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농법 등을 가져와 6세기가 되면 일본 사회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이는 일본 고대국가형성 과정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남북시대의 이주

1) 신라의 이주

산동지역에는 신라방, 신라소, 신라 촌 등은 그들의 정착촌이 있었다. 산동지역은 본래 백제인들의 거주지역이다. 그러나 신라가 집권한 이후 신라에서 중국과의 교역이나 유학 등을 위해 건너온 사람들의 형성, 660년 백제가 패망하면서 끌려온 유민들, 고구려 패방 후 끌려온 유민 들, 발해인들, 생활고를 못 이겨 탈출 한 사람들, 노예 등으로 끌려온 사람들, 남파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되어 온 사람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였다.

2) 발해의 이주

발해의 건국배경을 보면 고구려 멸망과 유민부흥 운동으로 668년 고구려 멸망 이후 말갈족과 고구려의 유민들이 발해를 건국하였다. 건국자와 건국 주체세력은 말갈 인이지만 고구려의 장수인 '대조영'과 고구려의 유민으로 세워졌다고 볼 수 있다.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한지 30년이 지난 뒤인 698년부터 926년까지 230년 가까이 남쪽의 신라와 남북국을 이루면서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서 그 위용을 떨쳤던 나라이다. 건국자 고왕(高王) 대조영(大祚榮) 이후, 15 왕이 이끌어 가면서, 처음에는 진국(振國 혹은 震國)이라고 하였으나 713년부터 당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발해로 고쳐 불렀으며 한때는 해동성국(海東盛國)으로 칭송될 정도로 동아시아 중심 국가로 우뚝 섰던 나라였다. 지금은 사실상 중국에서는 고조선은 청천강 이남에 있다고 하여 만주에서 밀어내어 버렸고 부여 및 고구려 그리고 발해는 만주에서 일어났으니 자기네 역사라고 주장한다. 러시아 역시 연해주가 자기네 땅인 고로 발해 역시 자기역사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5. 고려시대의 이주

1) 여진의 이주

고려 건국 이후 여진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고려로 지속적으로 귀화하였다. 태조(921년) 때 여진인 3,230명이 고려로 귀화 하였다. 여진인은 스스로 건국 직후부터 거의 80년간에 걸쳐 고려에 지속적으로 이주해 왔다. 고려 태조 왕건 때 복속시킨 여진인이 기병의 숫자만 1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

2) 말갈의 이주

고려사에 따르면 태조 925년에 발해국 왕자 대광현이 무리 수 만 명을 이끌고 귀화했다고 한다. 발해 주민들의 구성은 주로 고구려 유민과 여진의 전신인 말갈인으로 이루어졌었다. 추정하기는 925~938년에 이르기까지 발해의 유민들이 무려 10만 명이 유입 되었을 것으로 본다.

3) 거란의 이주

거란은 993년부터 1018까지 3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입하였다. 거란인의 고려에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현종 7년 1016년부터이다. 포로가 되거나 투항한 거란인 수만 명이 고려로 이주하였다.

고려에는 궁녀에 이주민들이 있었다. 충렬왕의 왕비인 제국공주의 수행자 중에는 이슬람인으로서 고려 식으로 이름을 바꾼 장순룡(본명 삼가)과 중앙아시아 출신의 당혹시가 수종을 들기도 하였다.

6. 조선시대의 이주

1) 여진족의 이주

북방 유목 민족의 후예인 백정이 조선 초기 인구의 25~35% 정도를 차지하였다. 유목민족은 고려시대부터 한반도로 이주해 왔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2) 몽골의 이주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인근에 몽골의 후예들이 이주해 왔다. 이들은 '단달'이라 부르는데 몽골의 한 부족인 타타르(Tatar)를 가리키기도 하고, 몽골 고원 혹은 몽골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들은 도축을 직업으로 하였다. 특히 칭기즈 칸 후 몽골인들은 제주도에 많이 거주하였다. 탐라는 1273년 원종 14년 몽골이 고려와 연합하여 삼별초를 토벌 하면서 직할령이 되었다. 이때부터 몽골인들이 제주도에 많이 거주하였다.

3) 중국인의 이주

중국의 이주민은 1619년부터 이루어졌다. 조명연합국이 명, 청 교체기에 후금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자 모문룡이 10만 명을 이끌고 조선으로 피신하였다. 후금이 세워지면서 탄압에 불만을 느끼고 광해군 때(1622년) 중국인 1만 여명이 경기도와 강원도에 들어와 머물렀다. 이후 1626년 인조 때에도 수십만 명의 중국 유민이 조선에 와서 귀화하고 거주하였다. 특히 제주도는 원나라의 유배지이기도 하였다. 중국의 황족을 비롯하여 관료들이 이곳으로 유배당하였다.

4) 조선 말기의 이주(1860-1910)

이 시기에는 주로 농민이나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떠나 생존을 위한 이주였다. 1902~1903년에 있었던 미국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의 이주도 이 시기에 속한다. 구한말 봉건제의 피해와 압정, 기근과 가난을 피해 국경을 넘어 중국, 러시아, 하와이 등지로 떠났던 때이다.

(1) 중국 만주로의 이주

청나라는 청 태조의 발상지인 백두산 이북 일천리 지역을 성스러운 지역으로 지정하는 이른바 봉금령(封禁令,1628~1875년)을 선포함으로써, 어떠한 사람도 이 지역으로의 이주와 개간을 금지하여 왔었다. 그러나 1850년대 청나라에서 혼강(渾江) 유역 벌목사업에 한(韓)인을 고용하면서부터 한(韓)인들은 만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 한(韓)인 들은 벌목을 하는 한편 강 유역의 비옥한 땅을 개간하고 마을을 형성하였다.

1860년대 한반도 지역에서의 연속된 흉년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곤란하였으며, 특히 토지가 척박한 함경도·평안도에서는 그 피해가 엄청났었다. 그리하여 많은 한(韓)인들이 청나라 관리 몰래 잠입하여 봄에 씨를 뿌리고 돌아왔다가 가을에 가서 수확하거나, 아침에 들어가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오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만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한국에서의 기사년(1869) 대흉년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두만강과 압록강 을 건너 중국으로 이주하였다. 이때를 전후해 압록강과 두만강 인근의 만 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韓)인들의 거주가 본격화되었으며, 1897년에는 약 87,000여 명(8,722호)의 한(韓)인들이 통화, 환인, 곤전, 흥경 등지에 28개의 마을을 형성하였다.

1860년 베이징(北京)조약에 의해, 연해주를 러시아에 넘겨준 중국은 러시아의 침범에 대비하기 위해 봉금령을 해제하고 두만강 이북 길이 350 km, 너비 25km의 화룡욕 지구를 한인 개간구역으로 지정하여 한(韓)인의 이주 및 황무지의 개간을 장려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한(韓)인이 북간도, 즉 현 재의 연변(延邊)으로의 이주가 본격화되었다. 이 때부터 한(韓)인들은 만주에서 토지를 개간하고 농사를 시작하였으며, 특히 연길현 청평 일대와 해 란강 세전벌을 중심으로 벼농사를 시작하였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당시 중국인 또는 만주족만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한 (韓)인들은 아무리 황무지를 개간하여 논과 밭을 만들어도 개간한 땅을 이 들에게 빼앗기고 3~4할의 소작료를 지불하는 이외에 지주의 집에 가서 나 무를 하고, 집 수리하는 일이며 짚을 썰어주는 일 등 머슴과 같은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관청에 민회세, 수리세, 소세, 소금세, 문턱세, 굴뚝 세 등 각종 세금을 감당해야했으며, 심지어 청국식 머리를 하고 청국식 옷을 입으라고 강요당할 만큼 초기 이주자들의 생활은 결코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2) 간도로의 이주

한(韓)인들의 간도로의 이주는 매년 증가하여 1894년까지만 해도 78,000명이던 한(韓)인 인구가 한일 합방을 당한 1910년에 109,000명을 돌파하였다. 1904년에는 50,000명을 돌파하였고 1910년에는 100,000명(당시 간도 인구 약 130,000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간도에 거주하는 한(韓)인들의 의병활동을 저지하던 일본은 조선통감부 간도출장소에 재판권까지 부여함으로써 한(韓)인들을 수시로 검문하고 처형하였다. 이에 대항해 만주에 거주하는 한(韓)인들은 기회 있을 때마 다 집단적인 저항을 하기도 했다.

(3) 시베리아로의 이주

함경도 지방에서도 시베리아 지역으로 농사를 짓거나 사금(砂金)을 채취하기 위해 4만 5천 명에 이르는 한인이 이주하였다. 이들은 조선에서와 같은 가옥구조와 전통양식을 보존하면서 항일의식을 품고 살았으며 실제 블라디보스톡의 교외를 벗어난 산록에 건설된 신한촌(新韓村)이란 마을에는 동네 입구에 3-1운동을 기념하여 '3월1일 문'이 세워졌다.

(4) 미국으로의 이주

한국인으로 미국 땅에 첫발을 디딘 사람은 1883년 구한말 외교 사절로 미국을 방문한 민영익 등 8명이었다. 그러다가 이 시기 이민은 국가간 협정이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졌으나 단하와이 이민은 1899년부터 공식 이민을 했다.

1902년에는 공식적으로 첫 해외이민이 이뤄졌으며, 미국 이민은 1903년 102명의 노동이민단이 갤릭호를 타고 하와이에 도착한 이후 1905년까지 3년간 7천여 명의 노동자가 하와이에 도착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 중 1천여 명은 1905년~1907년 사이 캘리포니아 등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동양계 이민에 거부감이 있었고 1924년 동양계 이민을 배제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미국 이민은 정지됐다.

(5) 멕시코로의 이주

1905년에는 멕시코로 천여 명이 4년간 농장노동 계약으로 이동했으며 이 중에 3백 여명은 1921년 멕시코를 출발해 쿠바에서 농장노동을 하기도 했다. 이 시기 총 한민족 해외 이주는 10만 명 내외로 대부분 막노동, 농업에 종사했다.
사탕수수 농장이라는 거친 노동에 시달리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사진 결혼'을 통해 점차 정착이 안정화되어갔다.
토지부족, 인구 대비 농업 생산성 부족, 1860년대 기근은 농민들이 토지를 찾아 연해주, 만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주 등지로 이동하게 했다.

[조선의 마지막 황실 영친왕과 덕혜옹주]

고종의 아들이자 대한 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은 1907년에 횡태자로 책봉 되었다. 그러나 총감 이토 히로부미(伊籐博文)에 의하여 강제로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1920년 일본 황실의 내선일체정책에 따라 영친왕은 일본 왕족 나시모토(梨本宮)의 딸인 마사코(方子)와 결혼 했다. 연친왕과 부인 이방자 여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이구씨이다.1926년 순종이 죽자 형식적으로 왕위계승자가 되어 이왕(李王)이라 했으나 일본에서 귀국하지 못했다.

한편 강제로 퇴위당한 공종은 막내딸 덕혜옹주가 영친왕처럼 일본인과 혼인하게 될 것을 염려해 '김황진'이라는 시종의 조카에게 시집을 보내려 하였다. 그러나 일제에게 정보가 새 나가 김황진은 해임되고, 덕혜옹주는 일본 대마도의 종(宗)씨에게 시집을 보냈다. 노궁녀들의 전하는 말에 의하면 덕혜옹주의 남편은 키 작은 애꾸였다고 한다.

⇒ 이주는 이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 쫓기듯이 건너간 영친왕과 덕혜옹주도 결국은 이주민이 된 셈이지요. 여러분께서도 이외에 또 다른 역사 속 이주의 예를 찾아봄으로써 이주 역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5강. 한국의 다문화와 이주 역사(2)]

1. 최근 재외 동포 이주 현황

현재 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다문화적 상황에 적응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몇 명이나 될까? 재외동포재단의 2005년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의 한민족 이주자수는 6,638,338로 약 700만 명에 이른다. 이는 남북한을 합한 인구의 10%에 달하는 수이다. 절대적인 숫자로는 5,500만 중국인, 1,000만 유대인보다는 적지만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퍼져있어 흩어져 있는 국가의 수로는 가장 많다. 일제 압제하에 중국에 이민을 갔던 중국 해외동포가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고, 45년 해방 이후 '아메리카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 미국 해외동포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순위	국가명	동포수	순위	국가명	동포수
1	중국	2,762,160	15	아르헨티나	21,592
2	미국	2,06,911	16	말레이시아	14,934
3	일본	893,740	17	프랑스	13,981
4	독립국가연합	533,976	18	싱가포르	12,656
5	캐나다	216,628	19	멕시코	12,070
6	오스트레일리아	105,558	20	과테말라	9,944
7	필리핀	86,800	21	인도	7,367
8	베트남	53,800	22	이탈리아	5,502
9	브라질	50,523	23	파라과이	5,431
10	영국	41,995	24	스페인	3,606
11	뉴질랜드	32,972	25	남아프리카공화국	3,480
12	인도네시아	30,700	26	대만	3,166
13	독일	29,800	27	기타 2,000명 미만	50,424
14	태국	25,000	**전체 해외 동포수(169개국)**		**7,044,716**

<재외동포 현황 통계청 자료(2007년)>

2. 현대 한국의 이주역사

한국은 역사적으로 약 500여 회의 침입을 받았다. 침략을 당하여 재물을 수탈당하기도 하지만, 나약한 부녀자들이 재물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여기에서 태어난 사생아들도 그 수가 적지 않다.

1) 일제 강점기 이주의 역사 (1910~1945년)

이 시기의 이주는 일제 침략에 의한 이주의 시기이다. 일제 시기는 만주로 농업이민, 일본으로 노동이민, 정치지도자들의 망명 또는 독립운동을 위해 이주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 이 시기 이주의 특징은 강제성이다.

(1) 중국으로의 이주

일본이 식민 통치 기간 만주지역 개발이나, 광산, 전쟁터로 끌려가는 일로 한인들의 대규모 집단 이주가 있었다. 이들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정치적 난민의 상태와 마찬가지이다. 1921년에 이르면 만주지역에 49만여 명이 거주하게 되었다. 중국 동북 지방으로 이주하는 한(韓)인은 매년 증가하여 1920년에 459,400명, 1930년에는 630,982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한 (韓)인의 64.9%인 409,402명은 연변의 4개 현(화룡, 연길, 왕청, 훈춘)에 집중되었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고 연변 이외의 지역으로는 안동·통화 지역에 50,545명, 봉천·철령 지역에 97,169명, 길림·장춘 지역에 24,157명, 북만 지역(흑룡강에 속함)에 44,463명, 여순·대련 지역에 1,747명, 그리고 기타 지역에 약 1,000명 내외 의 한(韓)인들이 거주하였다. 위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길림성 연변지 역은 이미 한(韓)인의 주요 거주지가 되었으며, 요녕성 및 흑룡강 지역에서 도 한(韓)인들이 서서히 집중되고 있었다.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과 1932년 만주국 건설을 계기로 만주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한인들을 대규모로 집단 이주시켰다. 또한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 전쟁을 계기로 한인들은 광산과 전쟁터에 강제 징용되었다. 이 시기에 일본의 강제이주이외에도 자발적으로 중국에 온 사람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1937년 중일 전쟁이후, 탈출한 일본군인(한인출신)들과 각종 단체의 책임자, 그리고 상인을 포함하여 약 3만여 명의 한(韓) 인들이 자의적 선택에 의해 중국의 화북, 화중, 화남 등 여러 지역으로 이주를 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에 의한 한(韓)인의 강제 이주를 포함한 만주 지역으로의 한(韓)인 이주는 매년 증가하였으며, 1945년 해방 직전(1945. 6. 1.)에는 약 2,163,115명의 한(韓)인이 만주를 비롯한 중국에 거주하였다. 이 규모는 당 시 한반도에 거주하던 인구의 약 10%에 해당되는 것이며, 실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한(韓)인이 중국에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일제 전쟁 동원

일본은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모집, 징용, 징병, 군위안부 등으로 강제 연행했으며 최소 3백만 이상의 한민족이 분산됐다. 일본지역과 태평양전쟁 이후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일본군 점령지에 분산됐다. 이 지역에서는 마리아나 군도 등 사탕수수 재배를 위한 이주민 외에 군인, 군속의 임시 거주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일본 본토, 사할린, 치시마 열도 등에는 강제 동원된 이들을 비롯해 종전 시 210만여 명의 이주민들이 이 지역에 있었다.

(3) 일본으로의 이주

1910년 2,500명에 불과하던 재일 조선인은 취업을 목적으로, 일제의 강제 이주 때문에 1938년에는 79만 9천 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만주나 시베리아로의 이주가 가족이민이 많았던 반면, 일본 이주자는 개별이주가 많았다. 출신지역을 봐도 만주와 시베리아 지역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등 북부 출신자들이 많았는데 비해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80퍼센트는 전라도와 경상도 출신이었다.

민족적 계급적 약자로서의 재일 조선인은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달래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교환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점차 마을을 형성했다. 조선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은 하천 지부나 공사장 그리고 토지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국유지 등 주로 일본인들이 살 수 없는 곳에 형성되었다. 허름한 집만이 모여 있는 마을이었지만 재일조선인에게 이곳은 일본 속의 한국으로 별세계였다.

2) 해방 이후 이민정책 수립까지(1945-1962)

(1) 이주자의 귀환

1945년 해방이 되자 중국, 일본, 중앙아시아 등으로 강제 이주 되었던 해외동포들은 귀국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많은 수가 현지에 적응하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재일 조선인의 경우 1945년 240만 명 가운데 175만 명이 6개월 이내에 일본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 쓴 채 크고 작은 배를 타고 귀환하였고, 나머지는 현지에 적응하면서 온갖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차별과 민족적 박해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였다.

(2) 한국전쟁과 해외 이주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고아, 미군과 결혼한 여성, 혼혈아, 학생들이 입양, 가족재회, 유학 등을 이유로 미국, 캐나다로 이주했다. 이민자들은 주로 전쟁고아, 미군 배우자로 한인사회와의 연결보다 타민족사회에 흡수되는 경향이 있었다. 1951년~1964년까지 6천4백 명, 1977년까지 3만7천여 명의 여성들이 미국군인과 결혼해 이주하고 1950년~1964년까지 6천3백여 명의 전쟁고아들이 미국으로 입양됐다. 이외 1945년~1965년 사이에 6천여 명의 유학생이 미국으로 떠났으나 귀국하지 않고 이주한 사람도 많았다. 같은 기간 2~3천명의 의사들도 미국으로 이주했다.

(3) 주한 미군과 국제결혼

주한 미군과 국제결혼 한 가족들은 '기지촌 여성 출신' 이라는 누명으로 족쇄를 차야 했다. 주한 미군과 국제결혼 하여 태어난 자녀는 약 500-600명으로 추산한다. 취학적령기에 이웃집 아저씨에게 호적을 올려 취학을 하거나 사생아로 어머니 성을 따라 취학을 하였다.
국제가족총연합회가 발행 한 자료 결과를 보면, 주한 미군과 국제결혼 하여 태어난 자녀는 약 500-600명으로 추산한다. 65%가 백인계, 28.5%가 흑인계, 나머지 6.5%는 기타 출신이고, 학력은 62.5%가 중졸 이하이다. 취학적령기에 이웃집 아저씨에게 호적을 올려 취학을 하거나 사생아로 어머니 성을 따라 취학을 하였다. 직업을 보면 43.3%가 단순 노무직, 1.6%가 사무직, 미취업자는 13.2%이다. 주거 형태는 셋방이 60%, 자택 22%, 시설이 5%, 기타가 13%로 상당부분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 거주 희망에 대하여 국외 이주 89%, 한국 정착 11%이었다. 국외 이주의 경우는 어머니의 의사 44%, 무작정 이주 10%, 본인이 일하다 기회가 주어지면 35%이었다.

국가나 정부 기관은 그동안 일본계나 중국계를 적국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생계비 보조 혜택으로부터 제외해 왔었다. 내국인들의 경우도 1972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국제결혼 자녀인 경우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국방의 의무에서 이들을 그동안 제외 시켜왔다.

3) 1962년 이민법제정부터 88올림픽까지

이 시기부터는 해외 정착을 목적으로 한 이민이 시작되었다. 유민, 난민적 성격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정책적이며 자발적인 이민이다. 1962년 2월 정부가 '해외이민법'을 제정하면서 공식적인 이민이 이뤄졌다. 정부는 인구 압력을 줄이고 교포들이 송금하는 외화를 벌기 위해 이민을 장려했다.
1960년대 중반 북서구 유럽계 이민자들만 선호하던 미국과 캐나다는 이민법을 개정해서 한인에게도 이민을 개방했으며 많은 이들이 이 시기 이주했다. 이들의 상당수는 화이트칼라직에 종사한 중산층이었다. 이 외 한국 정부와 독일 석탄광산협회 체결로 15년간 8천여 명이 광부로 파견되고, 한국 해외개발공사와 독일병원협회의 계약으로 13년간 1만여 명이 독일에 취업했다. 초기에는 국내의 과잉 인구분산과 외화를 버는 것이 그 목적이었지만, 동시에 이 시기부터 고등교육을 받은 많은 한인이 새로운 신분상승의 기회를 찾아 떠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한인들은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에 흩어져 정착하였다.
한편, 월남전에 세계 여러 나라가 참전 하였고, 한국도 참전하여 베트남 현지에 '라이따이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한' 이라 불리는 한국인 자녀들도 있었다. 미국, 스페인이나 필리핀의 경우 그들의 자녀를 베트남에서 자신들의 나라로 데려갔으나 한국은 현지에 그 자녀를 방치함으로 한 때 한국 사회의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4) 88올림픽 이후의 이주민의 유입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은 한국을 국제 사회에 개방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시기에 중국의 동포들이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찾아왔다. 그러나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역 등지에서 한약재를 팔며 국내에서 장기 체류를 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91년 대한 석탄 공사가 탄광촌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외투자연수제도를 통하여 이주노동자 유입을 시작하였다. 한국 정부는 1993년부터 산업기술연수제를 통하여 동남아시아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2000년 이후 부터는 저 출산 고령화 문제로 그동안 부정적이던 국제 결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매년 3만여 쌍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민의 수는 1억2천만 명으로 추산되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수는 현재 140만여 명이 이른다.

<table>
<tr><th>1988</th><th>1991</th><th>1993</th><th>1995</th><th>2001</th><th>2003</th><th>2004</th><th>2007</th><th>2008</th></tr>
<tr><td rowspan="3">이주정책 부재의 시기</td><td>해외투자연수제도</td><td colspan="3">'93산업연수생제 도입
'95외국인노동자보호법 추진</td><td>고용허가제 추진</td><td rowspan="2">고용허가제 및 산업연수생제 병행</td><td rowspan="2">고용허가제</td><td rowspan="3">거주외국인조례제정
다문화기족지원법
범정부적다문화정책추진</td></tr>
<tr><td colspan="5">산업연수생제도의 시기</td></tr>
<tr><td colspan="2">이주노동자 남성과 내국인 여성 결혼시기</td><td>양계혈 통허용</td><td colspan="2">내국인 남성과 동남아 여성 국제결혼시도</td><td colspan="2">결혼이민자 본격 유입, 적극적인 다문화 정책 도입 시기</td></tr>
</table>

<이주민 유입 제도의 흐름>

3.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인식

2009년 2월에 재외동포들에게도 참정권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제 재외동포들도 국내 각종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국내에서의 참정권 보다는 현지에서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해외에 나가있는 700만 해외 동포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어떨까? 이러한 인식을 통해 우리는 우리 곁에 다가온 이주민들에게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기회가 된다. 외동포재단 "재외한인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조사"(2007. 8. 31)가 이루어졌다.

1) 한국인에 가장 가까운 모델

52.4%가 한국어 및 한국에 대해 잘 아는 귀화 한국인, 15.1%가 한국어 및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한인 입양인, 12.1%가 혼혈한국인, 5.9%가 한국어 및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재외동포 2,3세 순으로 응답하였다.

진정한 한국인의 조건으로 한국인이라는 자부심과 의식 56.9%, 대한민국 국적 17.2%, 한국혈통 15.0%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국적이라는 조건이 한국인의 절대 조건이 아니고 한국인이라는 자부심과 의식을 가진 해외동포라면 다문화 가정이라 할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지라도 한국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 문	진정한 한국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① 대한민국 국적 ② 한국혈통 ③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 ④ 본인이 한국인이라는 자부심과 의식 ⑤ 평생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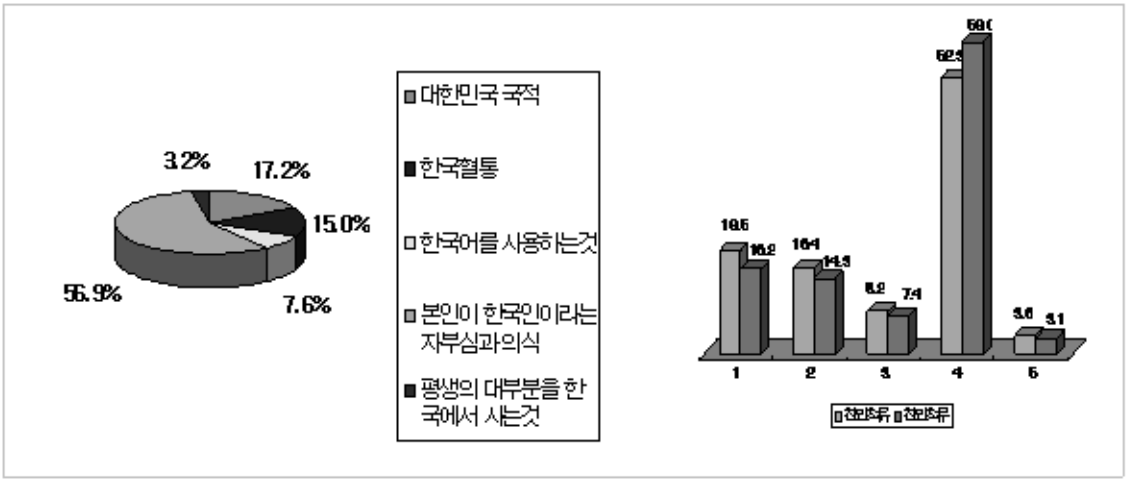

2)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도

해외동포에게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얼마나 우리의 일처럼 생각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27.0%, 조금 그렇다 43.9%, 보통이다 22.3%, 별관심없다 6.1%, 우리와 전혀 무관하다 0.7% 순으로 집계되었다. 해외동포와 관련된 사건이 우리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며, 역지사지로 우리 나라 안에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도 자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 문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일로 생각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 관심없다 ⑤ 우리와는 전혀 무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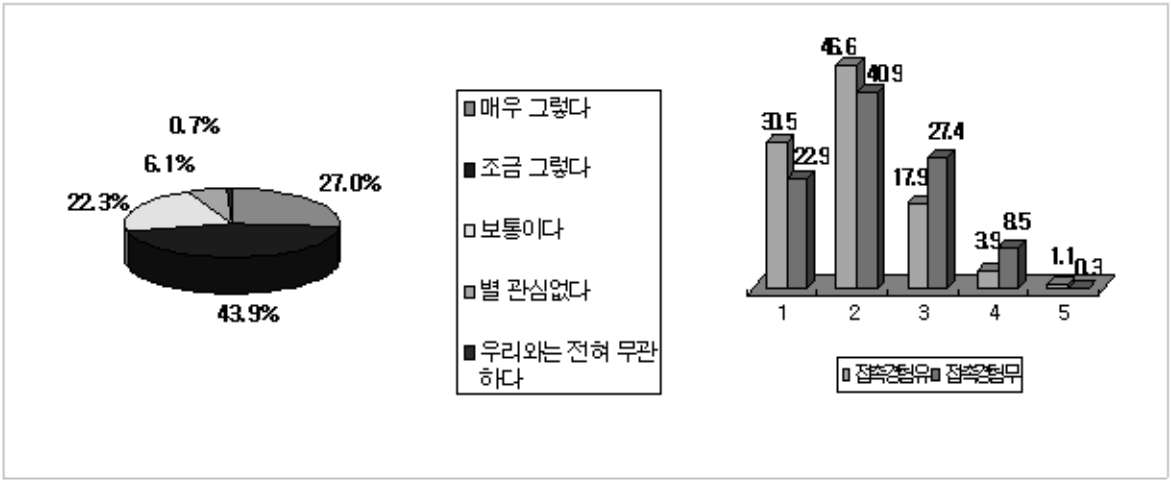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3) 재외동포가 우리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경우

재외동포(특히 조선족·고려인)가 우리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 대한 의견으로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71.5%, 전부 받아들여야 한다 13.6%, 잘 모르겠다 9.0%,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5.9% 순으로 나타났다. 일제 강점기 돈을 벌기 위해, 강제 이주로 떠돌아야만했던 해외 동포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에서 취해야 할 입장이 어떠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다.

질 문	재외동포, 특히 재중(조선족)·재CIS(고려인) 동포가 우리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부 받아들여야 한다 ②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③받아들여서는 안된다 ④잘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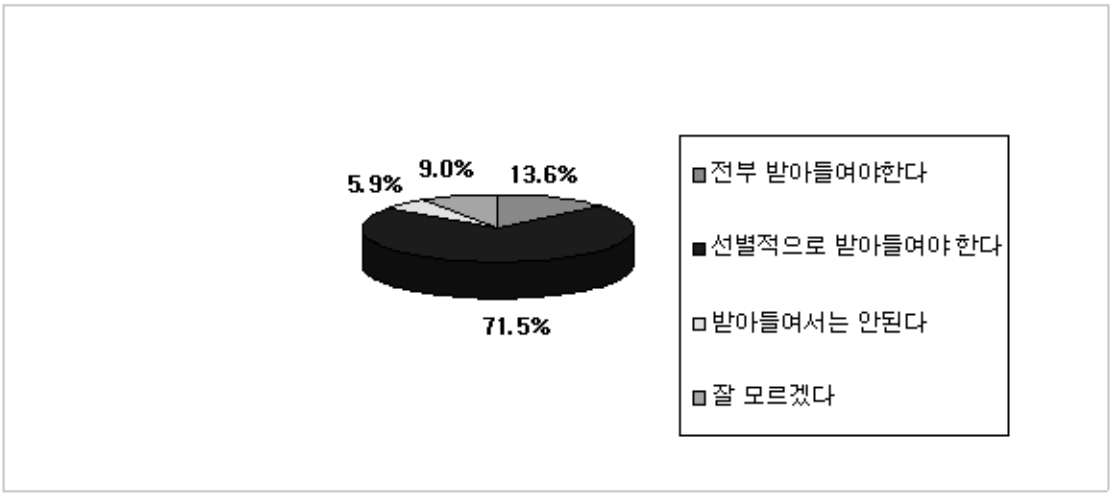

4.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의 삶

1) 중국의 조선족

"나는 귀추 없이 떠돌아다니는 바람꽃, 바람이 불어왔던 곳과 바람이 자는 그곳,
두 세계 중의 어느 한 곳에 머무르거나 또 어느 한곳에 머무르지도 못한 채 두 곳을 끊임없이 우왕좌왕하였다. 언제나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다른 한 곳에 대한 끊임없는 추억과 망각, 그리움과 원망의 갈등을 수없이 겪으며 이곳에서 저 곳으로 수없이 날아갔었다. 언제나 두 세계에서 함께 공존했던 셈이고 두 세계에서 함께 탈출하기도 했었다. 그랬던 나는 누구일까?"(조선족 여류작가 허련순의 장편소설 〈바람꽃〉 중에서〉

중국의 조선족들은 주로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등 종북 3성에 모여 산다. 집단 이주 역사의 특성으로 동향인들이 모여 마을을 형성하기도 한다. 경상도 마을, 전라도 마을, 충청도 마을과 같이 동향 출신의 마을이 형성되어 이국 타향에서 서로 의지하고 민족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할 수 있었다. 조선족은 중국 공민이면서 한민족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왔다. 조선족 지식인인 연변대학의 장판룡 교수는 조선족을 '중국에 시집온 며느리'로 비유한다. 조선족은 정서적으로는 친가인 모국에 끌리지만 일단 중국에 시집온 이상 시가인 중국에 충성하며 중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사할린과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까레이스키'로 알려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한인들은 천대와 차별 속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살아가야했던 한인 디아스포라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후에는 놀라운 개척 정신을 발휘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독일군과 치른 전투에서 많은 한인 전쟁 영웅을 배출하기도 했다. 그래서 고려인들은 러시아 사람들로부터 '노동을 좋아하는 민족(트루다 류비무이 나로드)'이라는 칭송을 들었다.

유리 미하일로비치 텐(정홍식) 러시아 하원의원은 1951년 사할린 네벨스키 시의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난 한인 3세다. 그의 조부는 구소련과 북한 정부가 합의하여 1946년부터 1948년 사이에 한인 수 천명이 사할린과 캄차카로 이주하게 되었을 때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러시아에 살게 되었다. 정홍식 의원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사할린에서 만나 가정을 꾸렸다. 그의 부모도 다른 한인들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살림을 시작했다. 그의 부모는 글자 그대로 전형적인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1947년까지 나의 어머니 김정옥은 중국에서 살았고 아버지 정문만은 한국에서 살았다. 고려인들은 러시아와 중국에 걸쳐 광범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예속된 일제의 압박을 받아오던 한인들은 해방이 된 이후 자신들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 즉, 북한으로 갈 것인가, 중국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한인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러시아 사할린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다. 당시 나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동생은 중국에서 러시아로 건너왔는데 당시 16세였다. 내가 채소밭에서 막 기어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아직 한 돌도 지나지 않은 때였다. 그때 어머니는 나에게 잡초 뽑는 일을 가르치셨다."

그는 18세에 육지의 끝인 사할린을 떠나 시베리아의 중심부인 이르쿠츠크에 정착했다. 사할린의 조선인들에게는 여권을 교부해주지 않았고 거주증과 유사한 녹색 증명서만 주었다. 정부의 감시와 스파이라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받았던 그들에게는 선거권도 없었고 군대에 복무하거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다. 이웃 마을이나 도시에 갈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사할린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갈기갈기 찢긴 역사를 '어머니가 여러 번 바뀐 상황'에 비교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할린 한인들만큼 눈치가 빠른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일제 강점기의 강제 징용과 스탈린에 의한 대륙으로의 강제 이주, 전후 소련의 강제 억류가 조선인들의 삶을 규정했고, 모든 것이 강제되는 삶에서 조선인들은 살기 위해 세상살이에 필요한 눈치만 늘었던 것이다.

3) 일본의 한인

재일 한인은 구한말과 일제 식민지 통치시기에 이주한 이농민들과 1939년부터 시작된 강제연행과 징용으로 일본에 갔다가 잔류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돼지를 키우고 밀주를 만들고 시래기를 주어 시장에 내다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이들은 '지지리도 못살던 조국'을 떠나 공장, 건설 현장, 파친코 업소, 불고기 집 등을 전전하며 변두리 인생을 살아야 했으며 2세들이 대학을 나와도 일본 사회의 철옹성 같은 벽을 깨지 못하고 차별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일제하에 일본으로 건너가 평생을 재일 한국인들과 함께 살았던 박병헌 씨는 회고록에서 일본에서의 생활을 이렇게 술회했다.

"일본인이 재일동포를 조센징이라 부르며 경멸하던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인 시각은 과거와 다를 바 없이 계속되었다. 닌니꾸 구사이, 닌니꾸 구사이(마늘 냄새 난다, 마늘 냄새), 재일동포는 셋집도 구하기 어려웠다. 재일 동포 학생은 학교에서도 일본인 학생이 기피하는 왕따였다. 재일동포는 일본에 둥지를 틀며 낯선 환경에 차별 대우 등의 설움을 겪으며 살아왔고, 특히 일제 말기 그 혹독한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았다. 그러면서도 조국에 남다른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애정과 관심을 쏟아왔다. 그들의 조국애는 일방적, 맹목적이었다. 이들은 유난히 민족적인 문화에 민감하다. 명절이나 제사 같은 전통에 집착하는 것이 그 예이다. 세월이 흘러 2세, 3세로 내려가면 전통은 약해지더라도 1세대들의 민족성만큼은 유달리 강하다.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재일동포의 수난을 생각한다면 지문날인과 상대 휴대 철폐는 재일동포 사회가 반드시 관철해야 할 숙원 사업이다."

4) 하와이와 미주 지역의 한인

한국 전쟁 이후 전쟁고아와 전쟁신부, 혼혈인들의 미국행이 많아졌다. 한국에서 전쟁고아와 전쟁신부, 혼혈인들이 겪는 차별과 정신적 고통은 매우 심했기 때문에 이들은 미국행은 희망했다. 20여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한 한 혼혈 한국인은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한국에서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 갔다 오더니 거울을 보면서 눈을 뒤집어보고는 친구들이 자기보고 미국 놈이라고 놀린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펄벅 재단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한국에서 혼혈인으로 살기는 너무 어려웠다. 나는 그래도 참고 살 수 있었는데, 내 자식까지 똑같은 설움을 느끼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 같은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미국행을 결심했다."
미국 본토의 한인들은 '아메리카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왔지만 현실을 생각만큼 순탄하지가 않았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의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여 정착하였다. 흑인 노동자들과 섞여 막노동을 했으며, 벼룩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고, 조선소 용접공이나 파이프 가설 노동자 등 소위 3D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자본금을 축적해나갔다. 그러면서 세탁소, 백화점, 봉제업, 모텔 등 자영업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직업상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째, 재미 동포들 사업의 상당 부분은 유태인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둘째, 한인 상점은 흑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업소가 많았다. 이렇게 도시 중심부에서 유태인이 하던 사업을 하면서 흑인과 다른 인종들을 고객으로 삼아 성공했으나, 정작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는 못했다. 1992년 4월 29일 한인 상점을 중심으로 흑인들이 약탈과 방화, 총격전으로 전쟁터로 돌변했다. 이는 다문화 사회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는 표본이 되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노동과 결혼, 난민 등으로 이주해온 이주민들에게 미국 흑인폭동에서처럼 민족적 차별과 적대감을 계속 유지한다면 제2의 LA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러한 선례를 통해 함께 사는 지혜를 모아야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이 든다.

5) 멕시코와 남미의 한인

멕시코 메리다에 거주했던 중국인 허훼이의 편지 내용은 한국인의 멕시코 이주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여준다.
"멕시코 원주민인 마야족의 노예 등급이 5에서 6등급이고
한인노예는 7등급으로 가장 싼 값이다.
조각나 떨어진 옷을 걸치고 짚신을 신었다.
아이를 팔에 안고 등에 업고 길가에 배회하는 한국 여인들의
처량한 모습은 가축같이 보이는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농장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무릎을 꿇리고 구타해서 살가죽이 벗겨지고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피가 낭자한 농노들의 그 비참한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
한국 정부가 이민법을 제정한 이후 한백 진흥주식회사를 통해 17세대 92명이 산토스 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농장은 황량했고 전혀 농사를 지을 수조차 없는 토질이었다. 막막한 한인들은 자신이 가져온 생활용품을 한둘씩 내다 팔기 시작했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신발과 옷, 전자제품을 파는 일이 한인들의 주업이 되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꼬레아노'들을 벤데돌(Vendedor, 판매원)이라 부르기도 한다. 남미 한인들의 '벤더'업 상품 종류는 옷가지에서 운동화, 청바지, 시계, 장신구, 주방용품과 전자제품으로 발전해왔다.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사]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서독에 파견된 광산 근로자와 간호사들이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독일에 머무름으로써 유럽에서는 예외적으로 정착 한인의 수가 일시적 체류자를 넘어서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1961년 군사 쿠데타로 등장한 군부 정권을 미국이 인정하지 않고 원조마저 중단하자 혁명 정부가 도움을 청한 곳은 바로 서독이었다. 3차에 걸친 경제협상 사절단 파견을 통해 한국을 차관을 받기 위해 필요한 지급보증이 어려워지자 그 대신 노동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래서 1962년 겨울에 광부 5,000명과 간호사 2,000명이 서독으로 떠났다.
1977년까지 독일에는 1만여 명의 간호사가 진출했는데 이들 간호사들은 현지 평판이 좋았다고 한다. 이들은 노인 환자들을 잘 돌보고 성실하면서도 인간미 있고 언어 습득이 빨라 인기가 있었다.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사들은 열심히 일하여 남부럽지 않게 잘살아보자는 의지가 강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2007년 현재 독일에는 광부 출신 6,000명과 간호사 출신 1만 2,000명, 총 1만 8,000명의 1세대와 1만 7,000명 정도의 한인 2, 3세대가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사들 중 대부분은 어려운 환경에서 경제적 부담을 안고 독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에서 정착하기까지는 언어의 장벽과 고된 일, 문화적 차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며, 그렇게 그들은 독일에서 이주노동자로서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일로 건너간 우리의 광부와 간호사들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타국으로 건너갔던 우리 민족이 받았을 설움과 고통을 생각하며 이주민들을 대하고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주민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6강. 한국의 다문화 국제교류]

1. 고대 다문화 교류 역사

한국 고대사의 전개과정에서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반은 중요한 역사 발전이 진행되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문헌상으로는 삼한 대신 백제, 신라, 가야가 등장하고, 고고학 상으로는 원삼국 시대에서 삼한 고분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해당된다.

1) 고조선

우리 역사에서 대외교역이 나타나는 시기는 이미 고조선 단계까지 올라간다. BC 7세기에 고조선은 이미 제나라와 무역하고 있었다. 고조선 시대에는 자모전이란 화폐가 사용되고 있었고, 고조선의 법률인 범금8조에는 50만의 전 화폐 단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고조선 시대에 교환경제가 발전하였던 것 같다.

2) 부여

부여에서는 일찍부터 오곡을 비롯하여 각종 농산물이 생산되었고 목축업이 발달하고 있었다. 수공업이 발달하여 고급 비단이 생산되었으며 철제생산도구를 널리 사용하고 있었다. 농업을 비롯한 각종 생산업이 발달하고 잉여생산물이 많아짐에 따라 교환 경제의 발달을 보게 된 것이다.

3) 삼한

대규모 철기생산이 이루어진 3세기 이후 철을 가진 강력한 세력들이 한반도 남단의 작은 소국들을 통합해 나가면서 명실상부한 고대국가로 성장한 것이다. 변한의 소국들은 가야로 발전했고, 진한의 소국들은 신라에 병합됐다. 마한은 백제로 통합됐다. 삼한의 철기문화 속에 고대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가야사의 전개는 남부 해안의 가락국과 같은 소국의 형성에서 시작되어, 북부 내륙의 대가야와 같은 영역국가로 종말을 고하였다. 가야문화가 남부의 해안지역에서 시작되었던 배경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근래에 주목되기 시작한 것은 해상교역과 철 생산 이다. 3세기말에 금관가야가 성립한 후, 대 일본열도 교역의 대상지도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격도 달라지고 있다. 즉, 기왕의 북부 구주 외에도 일본열도의 광역권으로 교역의 대상지를 확대되었다.

삼한의 대외교역의 중요한 대상은 중국과 왜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중국과의 교역이었다. 토착사회가 중국산 물품을 획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경로를 상정할 수 있는데, 먼저 조공과 책봉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물자교역을 들 수 있다. 본격적인 교역은 고대국가가 성립한 이후 국가의 주도로 조공무역이 이루어지면서 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조공(朝貢)의 조(朝)는 천자에게 에를 갖추는 조이고, 공(貢)은 이때 수반 되는 예물이다. 고대에서는 조를 외교로 보고 공을 부역으로 본다. 흔히 '조공'하면 중국 군주에게 일방적으로 선물을 바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나, 사실은 조공에 대한 답례가 수반되었다. 중국왕조가 주는 관작, 의복 등이 집단 내의 권위를 높여주는 효과도 있지만, 보다 실질적 목적은 공식적 통로를 통해 중국 정부만이 취급하는 물품을 획득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데 있었다. 조공은 실제로 동아시아에서 무역의 기능을 수행했는데, 이에 대한 예로 삼한과 후한의 조공 무역 실태를 들 수 있다. 삼한과 후한은 조공의 형식을 통해 쌍방의 특산물을 교환하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였는데 삼한과 후한 간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낙랑군 등을 매개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2. 삼국시대 다문화 교류역사

삼국시대의 대외교역은 국가 간의 물물교환의 형식 즉 조공형식의 무역이 일반적인 것이었다. 정치적으로 강대한 국가에 대해서는 조공 또는 대국의 생산물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동시에 고대사회에 있어서는 유일한 교역행위이기도 했으나 국가 간의 의례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등가교환이라고는 할 수 없었던 것이다.

1) 백제

백제는 국가의 성립에서부터 서해와 깊은 관계가 있다. 삼국지 30권에 고조선의 준왕이 바다를 통해 남쪽으로 망명하여 시작된 나라로 기록하고 있다. 수서(81권)에도 백제는 백가(백 개의 집안)가 바다를 건어 와서 시작한 나라로 설명하고 있다.

백제가 처음 중국과의 관계는 근초고왕(13대, 346-375) 27년이다. 삼국사기에 백제가 진나라에 조공을 하여다는 기록이 나온다. 삼국사기(권46)에 백제가 오나라와 월나라를 괴롭혔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백제가 중국 내륙에도 영토가 있었다고 본다. 백제가 4-5세기 중국 내륙지역으로 주로 산동, 요서, 화북지방에 진출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백제는 미추홀 서해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다문화 교류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산동 요서 지방은 일찍부터 한반도와 비슷한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다. 백제가 멸망하면서 서해 해상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요서지역은 한반도와의 연결성을 점차 잃어가게 되었다.

2) 고구려

4세기말 고구려 광개토왕의 남하는 고대 한일 외교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었다. 백제왜 국간 양국관계는 정치, 군사, 문화적 제 방면에 걸쳐 강한 결합력을 갖는 동맹단계로 발전해 나간다.

고구려는 주로 남·북 중국 및 유목민인 북방 민족들과 무역을 하였고 백제는 남중국 및 일본과 무역을 활발히 하면서 경제가 크게 발달하였다. 신라는 한강 하류 지역을 확보하면서부터 중국과 자유로이 무역을 할 수 있었다. 당시, 삼국의 수출품으로는 마직물, 금·은 세공품과 주옥, 인삼, 모피류 등이 있었고, 수입품으로는 주로 귀족 생활과 관련이 있는 비단과 장식품, 책, 약재 등이 있었다. 한편, 일본과의 무역도 크게 성하여, 삼국의 앞선 문물이 일본에 전해졌다. 통일 후, 무역 활동은 보다 활발히 전개되었다. 특히, 당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이 번성하였다. 당시 대당 수출품은 베, 해표피, 인삼, 금·은 세공품 등이었고, 수입품은 비단과 책 및 귀족들이 필요로 하는 사치품들이었다.

고구려도 해상활동에 뛰어들었다는 점으로 고구려와 백제는 부의 원천인 해상교통로를 차지하려고 경쟁을 벌였는데 이것이 때로는 고구려와 백제가 갈등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3) 신라

경주에서 가까운 국제 무역항인 울산에는 이슬람 상인까지 내왕하게 되었으며, 이 때 당의 산물뿐만 아니라 서역의 상품들도 수입되었다. 그리고 신라인이 자주 당에 드나들면서 산둥반도와 양쯔 강 하류 일대에 신라인들의 거주지인 신라방이 생기게 되었고, 신라소, 신라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관, 신라원이 세워졌다.
아랍인(이라크인)이 무역만 한 것이 아니라 신라의 수도 경주에 정착하여 살았다. 아랍인이 경주에 정착하여 산 것은 한국역사 기록에는 없으나 아랍권에는 남아있다. 유라시아 지역의 스키타이, 흉노, 돌궐, 선비, 오환 등은 말 타는 유목민족을 가리키며 한국의 고대 부여족과 고구려 족도 여기에 속한다.

4) 중국 당나라와 비단길을 통한 국제 교류

동서 문화교류의 통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비단길이다. 동아시아에서 볼 수 없는 많은 물산이 이 지역으로 들어왔는데, 이 중에는 타조, 공작, 사자, 코끼리 같은 동물도 있었다.
당나라에는 당시 서역과의 교류가 활발하였다. 장안에 페르시아와 소그드(페르시아 지역 부족, 실크로드 상인)상인 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광주 등 남부 지역에서는 아랍 상인들이 찾아와 교류를 하였다.
현재는 실크로드의 개념이 유라시아 북방의 초원지대를 지나는 초원의 길과 지중해에서 홍해, 아라비아 해, 인도양을 지나 남중국해에 이르는 바닷길을 포함하게 됐다. 즉 실크로드는 동서 문화교류의 3대 통로인 초원의 길, 비단길, 남 해로를 총괄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된다. 실크로드를 통하여 서쪽 나라들의 가무와 음악이 고구려에 전래돼 고구려 음악의 발달에 크게 기여했다. 한국 고대문화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불교가 특히 실크로드와 인연이 깊다.

3. 백제와 일본의 국제 관계

백제는 근초고왕 때 최초로 일본에 한학을 전하고, 근구수왕 때 왕인 박사가 논어(論語)와 천자문(千字文)을 전했다. 무령왕 때 단양이 고안무, 성왕 때 유귀(柳貴) 등은 오경박사(五經博士)로서 한학과 유학 등을 전하였다. 그리고 무왕 때 관륵(觀勒)은 천문 ·역법 ·지리 등을 전하고, 성왕 때(552) 노리사치계는 최초로 불교를 전했으며, 혜총은 쇼토쿠태자의 스승이 되고, 도장은 성실론(成實論)을 저술하였다. 아좌태자는 쇼토쿠태자의 초상화를 그렸으며, 그 밖에도 화공(畫工)·와공(瓦工)과 경사(經師)·율사(律士)·의사들을 보냈다. 이와 같이 삼국 중 백제문화는 일본의 문화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1) 아신왕(17대, 392-405)과 전지

396년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백제에 대하여 대대적인 군사적 공격을 하였다. 수도 한성을 급습하여 아신왕을 항복시키고 왕의 형제 및 대신 10여명과 생구 1천명을 포로로 하여 귀환하게 된다. 고구려는 백제의 58성, 700촌이라는 광역의 지역을 차지하였다. 백제의 대왜 군사외교는 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백제 이듬해 397년 아신 왕자 전지를 왜국에 파견하였다. 전지는 8년간 왜국에 체류하면서 군사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광개토왕 비문에 의하면 백제의 요청으로 399년 신라에 출병한 왜병은 임나가라, 안라군과 더불어 신라의 국경을 공격하고, 신라는 고구려에 도움을 청하여 400년에 신라국경으로부터 왜군을 격퇴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 후 고구려는 신라의 왕위계승에 까지 간여할 정도로 예속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갔다.
한편, 아신왕은 4005년 고구려와 전쟁 와중에서 죽자 왕자 전지가 왜병 100인의 호위를 받으며 귀국 길에 올라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이후 왕들은 5~8년 정도 밖에 즉위하지 못했다.

2) 개로왕(21대, 455-475)과 곤지

고구려가 455년 개로왕 즉위하는 이양기의 틈새를 노려 다시 기습공격을 하였다. 당시 왜 왕권도 478년부터 중국 송나라와의 관계가 120여 년간 단절된다. 백제의 왜국과의 교류는 이러한 국제 정세 하에서 재개되었다.

백제 개로왕의 동생 곤지가 왜국에 파견 왜국과의 우호관계를 다지기 위한 모종의 외교적 임무를 띠고 파견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개로왕의 동생 곤지는 문주왕3년(477)에 백제에서 내신좌평에 임명되기도 하였는데, 곤지는 16년 동안 일본에서 장기 체류하였다. 곤지는 왜국체류 시에 구축해 놓은 외교는 왜국의 친 백제 노선을 강화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백제는 475년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위례성을 잃었다. 개로왕 및 대후, 왕자 등이 모두 피살당하였다.

3) 동성왕(24대, 479-501)

479년 백제와 왜국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왜국에 체재중인 곤지(21대 개로왕의 동생)의 아들 달다(末多: 동성왕)가 백제왕으로 즉위한다. 이때 백제로 귀국하는 길에 왜국에서는 군사 500명을 호송 인으로 파견하였다.

4) 무령왕(25대, 501년-523년)

6세기 전반대의 한반도 정세는 고구려와 백제의 끊임없는 전쟁상태가 계속되고, 가야지역을 둘러싼 백제와 신라의 영토쟁탈전이 반복되는 시기였다.

무령왕은 백제중흥의 영주로서 백제문화의 황금기를 구가하던 시기였다. 특히 중국 남조문화를 섭취하면서 백제문화를 왜국에 전수하는 등 동아시아 문화외교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다. 무령왕 즉위 4년째인 504년에 무령 왕자 사아군을 왜국에 피견하여 양국의 우호관계를 다짐하는 사건이었다. 이 시기에 백제의 선진문화는 제박사를 통해서 일본으로 전래되었던 것이다. 칠지도, 칠자경 등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일본으로 전래된 수많은 물품 중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다.

5) 성왕(523-554)

백제의 대 왜 외교를 특징짓는 것으로서 외교의 일선에 나선 주역들이 왕족들이 중심에 있다. 백제의 대 왜 왕족외교는 주변제국에 대한 외교의 형태와는 확연이 구별되는 지속적이라는 데에 특징이 있다.

백제와 왜의 긴밀한 관계는 선진문물의 제공과 군사력의 지원이라는 동등 호혜적 입장에서 출발했으나, 인적교류의 확산으로 점차 왕권간의 친연관계로 발전한다. 특히 6세기를 통하여 왜국의 대 중국 통교가 단절된 상태에서 해외의 주된 선진문물의 통로는 백제였기 때문에 백제의 군사외교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선진문물을 수용하는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

왜국은 538년 백제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불교는 사원에서 행해지는 종교의례와 학문, 사원을 조영하는데 필요한 기술자, 제작자, 회화 조작, 음악, 무용 등을 담당하는 집단을 포함하는 문화를 동시에 전달하였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왜계 백제관료
백제관인들 중에는 이른바 왜계 백제 관료라고 불리 우는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왜계 가야 관료'가 등장하는 시기는 530·40년대라고 할 수 있다. 가야 및 백제와 야마토 정권의 특정 목적을 위해 활약한 관료 가운데 각각 이미 가야인 혹은 백제인이 된 인물 군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왜계 가야 관료'는 당시 야마토 정권의 유력호족이다.

6) 무왕(30대, 600-641)
무왕 때 백제 왕가의 중국과의 국제결혼과 동남아 외교가 있었다. 2009년 1월 백제의 미륵사 터 9층 서탑에서 1400년 묵은 유물들이 발견 되었다. 2001년부터 해체 조사해 온 미륵사탑은 지난 600년-641년 백제 마지막 31대 의자왕보다 앞선 30대 무왕 때 세워진 것으로 이곳에서 여러 물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백제의 무왕은 신라의 선화 공주와 결혼 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국제결혼 하였다. 유물을 통하여 밝혀진 것은 중국 수나라 사서에 8대 성씨 중 첫머리로 언급된 사택씨가 왕후의 부친이었다. 왕가의 국제결혼이다. 백제왕을 대와 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으며, 백제의 권세가에 중국의 사택씨가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사리항아리에서 발견된 구슬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페르시아(이란) 산 혹은 동남아산 진주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미 백제시대에 동남아시아 혹은 아랍지역과의 국제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이다.

7) 의자왕(31대, 641-660)
사적 물품 중에서 의자왕이 당시 최고의 귀족에게 옷 칠장과 바둑제품 등을 소유 하였다. 상아에 염료로 물들여 문양을 새긴 기법에 의해 제작된 바둑알은 공예기술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외에도 낙타나 공작, 앵무새 같은 동물도 외교상의 주요 대상물이다.

8) 삼국의 일본 교류
일본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품이다"라는 뜻의 관용어구가 우리말로 하면 "백제 물건이다" 는 뜻이다. 고구려의 영양왕은 황금300냥을 보냈고, 김춘추는 공작과 앵무새를, 김유신과 문무왕은 왜국으로부터 선박을 선물 받았다. 공적인 물품과는 별도로 사적으로 주고받는 행위는 외교술의 하나였다. 외국사로부터 받은 물품은 지배자의 사적 소유물이 되지만, 신료들에게 분배를 통하여 왕권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도 한다.
이들 사적 물품 중에서 의자왕이 당시 최고의 귀족에게 사여한 옷칠 장과 바둑제품 등은 흥미롭다. 정창원에 남아있는 이들 물품을 보면 그 재질이 백제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으로 문양도 이국적이고 신비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상아에 염료로 물들여 문양을 새긴 기법에 의해 제작된 바둑알은 공예기술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외에도 낙타나 공작, 앵무새 같은 동물도 외교상의 주요 대상물이다. 정책 결정권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은 중요하다.

4. 남북국 시대의 국제관계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삼국시대이후를 통일신라시대라고 부르다가 남북국시대로 부르자는, '남북국' 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것은 조선시대 후기의 이른바 실학사상에서 나왔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1) 남 신라의 장보고

820년대 전반기에 장보고는 당 나라에 기반을 두고 신라·일본 등 동아시아 일원의 해상 교역에 참여하였다. 장보고의 활동은 산동 반도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당나라 내부에서 물건들을 수송하는 성격의 상인들이었는데, 재당 신라인이다.

산둥반도에서의 해상활동을 뒤로 장보고는 당 나라에서의 활동을 정리하고, 귀국하여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장보고의 청해진은 신라 및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기지였다. 장보고는 당나라에 거주하는 신라인의 도움을 받아 중국 각지에 신라방을 건설하고 중국→신라→왜 의 국제 상권의 중심역할을 하게 된다. 신라 촌·신라방 등 무역사무소를 두고, 압아·총관·촌장을 비롯한 관리와 뛰어난 선원과 우수한 선박을 보유하고, 유능한 통역관을 두었다.

2) 북 발해

8~9세기 발해도 당과의 평화 관계가 성립되면서 무역이 활발하였다. 발해에서는 수공업이 발전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제철업이 발달하여 금속 가공업이 성행하였고, 방직업이나 목재, 피혁의 가공업도 발전하였다. 외교 사절의 왕래와 무역이 빈번해지면서 당의 덩저우에는 발해관이 설치되었으며 거기에 발해의 교관선이 자주 왕래하였다. 또, 왕실이나 귀족 위주의 공무역이 행해졌으나, 민간 무역도 이루어졌다. 발해의 수출품은 주로 모피, 인삼, 말, 금, 은 등의 토산물이었지만, 그 밖에 불상, 유리잔 등의 공예품도 있었다. 발해는 당으로부터 주로 비단, 책 등을 수입하였는데, 이것들은 대개 귀족의 수요에 충당되었다. 또, 발해는 일본과도 무역 관계를 맺어 동해의 해로를 개척하였는데, 당시 발해와 일본의 무역 규모는 매우 컸으며, 한 번에 수백 명이 넘는 발해 인이 일본으로 가서 교역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5. 국내 근대 이전 다문화 교류의 발자취

1) 신라시대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1) 무인석
신라 38대 원성왕과 42대 흥덕왕의 무덤에서 이국적인 우람한 체구의 무인석이 발견 된다. 경주의 무인석이나 처용무에 등장하는 처용이 아랍 사람이다. 모양이 해괴하고, 옷차림새도 괴이하여 '산해의 정령'이라 불렀다.

(2) 아랍과 중국의 국제무역
신라시대에 개운포(울산)가 국제 무역항의 역할을 하였다. 이 개운포는 중국에 아랍상인들이 많이 정착하여 살던 당나라 양주로 가는 출발지이다. 중국 황소의 난(875-884년)때 농민군이 광주를 점령 한 후 이곳에 살면서 상업 활동을 하던 아라비아, 페르시아 사람 12만 명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다. 중국의 양주와 광주에 신라에서는 동서 교육을 위하여 신라방을 형성하였다. 신라방은 일종의 자치 지구이다. 삼국사기에는 신분에 따라 사용 할 수 없는 고급 물품인 에메랄드, 알로에, 페르시아산 카펫 등 여러 아랍 물품목록이 나온다.

2) 고려시대
(1) 아랍과의 교류
한반도에 이슬람인들과의 교류는 신라 때 부터이었고 고려 때 활발하였다. 고려는 세계에 코리아로 알려질 정도로 세게 여러 나라와 활발한 무역을 한 시기이다. 특히 예성강 하구는 국제 무역항 역할을 하였다. 고려사에 보면 1024년 현종 15년에 아라비아(대식국) 100여명이 토산품을 바친 일도 있다. 고려가 100여명의 상단과 교류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회교도들은 충렬왕 5년에 회교도들이 왕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기도 하였다. 무슬림 가운데는 개성에 가게를 연 사람도 있었다. 그만큼 고려시대에 이슬람 인들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이야기 이다.
고려사를 보면 현종(1024년), 정종(1040년)에 아랍상인들이 세 차례에 걸쳐 고려를 찾아왔다고 기록한다. 한꺼번에 100명이나 되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여러 가지 교역품과 특산품을 가지고 와서 고려에 와서 활동을 하였다.

(2) 거란인의 문화 전달
한반도에 이주해온 거란인들은 유목, 사냥, 유기의 제조와 판매, 도축업 등이었다. 거란인의 후예인 화척과 몽골인이 도축을 주도함으로써 일부 계층에만 제공 되었던 육식문화를 보편화 시키는 일을 했다. 특히 우리나라에 놋그릇이 전달된 것은 거란인들의 유기 제조로 보인다. 유기 제조는 아라비아로부터 전달 된 기술이다.

3) 조선시대
(1) 태조 때 흑인 등장
1394년 태조 3년에 태국(섬라곡국) 사신으로 온 장사도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려다가 일본해 근처에서 도적을 만나 다시 조선으로 왔다. 그냥 오기가 민망하여 장사도는 칼과 갑옷, 구리그릇과 흑인 두 사람을 바쳤다. 태국과의 교류는 이미 고려시대부터 였다고 한다. 장사도(張思道)는 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예빈경(禮賓卿)이라는 조선의 관직을 하사받기도 하였습니다.

(2) 태종 때 이주민 관직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특히 관직에 이주민들이 등장한다. 여진, 일본, 이슬람인들을 공직에 등용시켰다. 태종 때에는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고 주택을 공급 받았다. 그러나 이것을 부담이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국가에서 녹(祿)을 받는 사람들의 월급 없애기를 청하기도 하였다.
조선 초기 조아국(지금의 자바로서 인도네시아), 섬라곡국(태국)과의 교류도 있었다. 조아국은 태종 때부터 사신을 보내왔고, 섬라곡국은 아유티아 왕조 시기로서 태조 때 시절을 보내왔다.
조선시대에 코끼리가 있었다. 조선 태종 때(1411년) 일본의 국왕인 원의지(源義持)가 사신을 보내어 조선에 축하 선물로 코끼리를 바쳤다. 당시 해양무역이 발전하던 때라 인도로부터 일본에 전해진 듯하다. 그러나 코끼리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양이 콩 4말에서 5말씩이어서 골칫거리였다고 한다.
1412년에는 이우(李瑀)라는 사람이 코끼리를 구경하다가 꼬끼리에 밟혀 사망하게 되자 태종 임금은 코끼리를 전라도 섬으로 유배 시켰다. 그러나 코끼리가 수없이 먹어치우는 먹이 때문에 지방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코끼리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를 돌며 순번제로 이 고을 저 고을을 배회하였다고 한다. 당시 새롭게 왕위에 오른 세종은 '물과 풀이 좋은 곳을 가려서 이를 내어놓고, 병들어 죽지 말게 하라'하며 코끼리를 위로하기도 했다고 한다.

(3) 세종 때 이주민 국가 행사 참석
세종의 즉위식을 거행할 때(1418년)는 성균관 학생들과 이슬람인들 노인들, 승려들이 참여하였다. 세종 때는 대조회(정월 초하루 문무백관의 새해의식)에 이슬람인들도 참여 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복장과 의식을 행하였다. 이주민에게 공직을 허락하기도 하였다. 향화인(귀화인)으로서 우리 조정에서 벼슬을 하였다. 향화인(向化人)들이 관직을 받아 전(科田: 토지 생산물의 일부)을 받았다. 이슬람인과 왜인, 야인도 임금의 국가 공식 행사에 초대 받기도 하였다. 특히 세종 때 발명품이 활발하게 진행 된 것은 다른 나라와 활발한 교역과 무관하지 않다.
세종 때 노비가 있었다. 당시의 노비는 전쟁 포로나 타 지역의 유민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서울 밖 공공 기관에 소속된 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휴가를 100일 주었다. 출산 전 휴가도 허락하기도 하였다.

(4) 인조 때 베트남과 일본에서 온 담배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담배는 16세기 베트남의 상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1616년 한국으로 전달되었다. 1621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이 많아 손님이 오면 차와 술 대신 답배를 내놓아 이것을 연다(煙茶: 연기차)라 하였다.(인조실록 37권) 담배 1근을 밀수출 하다 적발 되면 바로 목을 베는 참수형을 당하고 1근 미만은 감옥에 갇혔다. 그러나 담배 소비가 계속 늘어 조선시대는 어린아이도 담배를 피웠다 한다.

(5) 정조 때 안경
안경은 13세기경 이탈리아 베니스 유리 공에 의해서 우연히 발명되었다. 안경이 우리나라에 건너오게 된 기록을 살펴보면, 유럽에서 만들어진 안경이 무역상을 통해서 원나라 때부터 중국에 전파되었다. 당시에는 성행하지 않다가 16세기에 이르러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이때 아마도 명나라에 사신으로 간 사람들에 의해서 조선에 전파되었다고 본다. 당시 세속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에서는 '안경'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또 다른 고상한 이름으로 '애채(靉靆)'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 마치 안경이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허리춤에 안경집을 곱게 메달아 다니기도 하였다. 안경이 군대에서 전투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풍안경은 먼지가 많이 날리는 곳이나 말을 타고 적진을 돌격해야 하는 기병에게 매우 유익했다. 특히 조선후기 중앙군영 중 하나인 금위영에서는 용호영과 더불어 기병의 숫자가 많았는데, 풍안경의 숫자는 자그마치 530면으로 당시 기병들에게 한 개씩 보급될 정도로 많은 양이었다고 한다.

(6) 순조 때 낙타와 필리핀 이주민

조선시대에 낙타도 있었다. 쌍봉낙타는 중국 산인들이 물건을 싣고 조선에 올 때 애용하던 동물이다. 청나라 사신들이 조선에 올 때 낙타를 타고 왔으나 낙타가 병들자 버리고 갔다. 숙종 임금이 직접 낙타를 구경하기 위하여 낙타를 궁궐 안에 데려오기도 하였다. 대신들이 이상한 짐승을 기르는 것을 반대하여 궁 안에서 키우는 것은 안 되었다고 한다.

200년 전 필리핀 이주민이 조선에 있었다. 1801년 필리핀인 5명이 제주도에 표류하여왔다.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아 비변사 회의에서 청나라로 보내도록 결정 하였다. 그러나 청나라에서도 이들이 누구인지 몰라 다시 제주도록 돌려보내졌다. 돌아오는 길에 한 사람이 사망하였고, 또 한 사람은 풍토병으로 사망하였다. 나머지 세 사람도 말이 통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조선말을 가르쳤다.

이들을 도와준 사람은 문순득이다. 흑산도 홍어장수 문순득이 1801년 12월 바다를 지나다가 돛대가 부러져 일본(우유국: 오키나와)으로 표류하였다. 이듬해 일본에 머물던 필리핀(여송국)에서 청나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다시 풍랑을 만나 필리핀(여송국)으로 갔다. 문순득이 필리핀에서 몇 개월 머무는 동안 필리핀 어를 배웠다. 문순득이 제주도에 머물다가 외모와 복장을 보고 대화를 통하여 3명이 필리핀(여송국) 사람인 것을 알려주었다. 조선에 도착한지 9년 만에 이들이 필리핀(여송국) 출신인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1807년 제주목사 한정운이 순조 임금에게 표류하여 한국을 찾아온 필리핀(여송국) 사람을 본국에 송환하도록 허락을 요청하였다.(정약전, 표해록)

(7) 조선시대의 차별문화

이슬람 인들에 대하여 시간이 갈수록 점차 배타적이 되었다. 세종 9년에 무슬림인들의 고유생활 방식과 종교를 바꾸도록 시도하였고 실제로 관철시키기도 하였다. 이후 이슬람 인들은 조선에 잘 등장하지 않게 된다.

재인과 화척 담단을 백정이라 부른다. 재인과 화척은 거란의 후예이고, 담단은 몽골의 후예이다. 조선왕조는 개국과 동시에 거란 이주민들의 유목 문화생활을 무시하고 토지를 주어 안착 시키려 하였다. 농사의 주요한 소를 잡게 할 수 없었다. 가축의 도축을 불법으로 하였다. 이들에 대하여 세종 때인 1440년 백정으로 개칭 되었다. 이 백정은 주로 도축업, 유기제조업, 피혁제조업, 유랑단 생활을 하였다. 백전은 후에 망나니라 부르게 되었다. 백정은 고려시대만 해도 일반 백성이었다. 백정들이 한 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지 않자 이들을 배척하였다. 이들은 점차 사회적 멸시의 대상이 된 것이다. 백정을 야만족 취급하여 혼인은 물론 동일한 거주 지역에 함께 살려고도 하고 차별 하였다. 백정들은 범죄자가 되는 것이 곧 살길이었고, 그 결과 문종 때는 강도 살인의 절반이 백정이었다. 백정은 외딴 외진 곳에 살아야 했고, 명주옷과 평민들의 검은 망건도 쓰지 못하게 했다. 결혼식 때 가마를 탈수 없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었고, 장례 때는 상여도 이용 할 수 없었다. 임꺽정(1559년)은 경기도 양주의 백정 출신이었다.

6. 일본 내 한국 문화

가야, 백제, 고구려가 일본열도로 진출할 때의 경로는 백제는 남해와 세토나이카이(瀨戶內海)를 거쳐 긴키(近畿)평야의 중심지인 오사카(大阪)로 상륙하여 죽내가도(竹內街道)를 따라 나라(奈良)지방에 정착하였다. 고구려는 서해를 거쳐 규슈의 가고시마(鹿兒島)와 도쿄의 오이소(大磯)해안으로 상륙해서 사이타마 현(埼玉縣)과 도쿄를 개척하였다.

1) 백제문화

일본열도 각지에 많이 남아 있는 또 하나의 한(韓)민족의 지명으로 백제(百濟)가 있으며 '구다라'로 읽히는 백제라는 이름은 여러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 긴키의 히라가타(枚方)에는 백제왕신사(百濟王神社), 백제사지(百濟寺趾), 백제사적(百濟寺跡)이 있으며 오사카에는 백제역(百濟驛), 백제천(百濟川), 백제교(百濟橋), 백제대교(百濟大橋), 고려정(高麗町), 고려교가 있고 나라에는 백제촌(百濟村)이 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곳이 히라가타시 동북쪽에 나카미야(中宮)라는 곳에 있는 백제왕신사와 백제사가 있는데 나카미야의 옛이름도 백제야(百濟野)였다. 이 백제왕 신사는 백제 부흥운동이 실패하고 일본열도에 건너온 의자왕의 아들 부여융의 자손들이 만든 것이고 백제왕신사와 백제사가 만들어진 것은 750년으로 여기에는 역대 백제왕들의 위패가 모셔졌었다.

또 구주지방에는 고려정, 고려교, 고려통(高麗通)이 있고 가고시마에는 백제마을(百濟の里), 한국악(韓國岳)이 있으며 가야의 선조를 모신 한국우두봉신사(韓國宇豆峯神社)가 있다.

2) 고구려 문화

일본열도의 수도 도쿄(東京)에서 서북쪽으로 50㎞ 떨어진 사이타마 현 히다카시(日高市)에는 고구려신사인 고려신사(高麗神社)가 있고 고구려 마지막 왕인 보장왕의 아들인 약광(若光)을 모시는 곳이며 무덤이 있는 성천원(聖天院)과 사당이 있다.

고구려가 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본열도로 건너갔고 황무지 개척이나 토기, 농기구, 금은 장식, 무기의 제조에도 기술이 뛰어났고 해안지방에서는 소금을 만들어 팔았으며 무사시노지역에 터전을 잡고 이곳에 고려군(高麗郡)을 신설하고 고려약광(高麗若光)에게 왕(王)의 칭호를 주면서 군(郡)을 통괄하도록 했다. 고구려 유민들은 동경만 인근 오이소(大磯)해안으로 상륙하여 사이타마에 정착, 고려 촌을 이루어 살아왔던 것이다.

일본열도의 관동(關東)지방의 사이타마(埼玉)에는 고려신사, 고려천신사(高麗川神社), 고려천역(高麗川驛), 고려교(高麗橋), 고려천(高麗川)이 있는데 일본열도에서 고려(高麗)라는 지명이나 유적은 고구려를 일컫는다. 대마도(對馬島)의 가미(上島)에는 고구려유적인 고려산(高麗山)과 한국연산전망대(韓國連山展望台), 가라(加羅)가 있다.

3) 일본으로 건너간 한인 성씨

일본은 왕실과 귀족들은 한국의 영향으로 오래전부터 성명을 가졌으나 대부분 서민들은 19세기 후반에야 성명을 가진 것으로 보여 진다. 일본의 고대사에는 수많은 한국 고관 명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고대 씨족을 기록한 사서(史書)는 815년에 편찬된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이다. 이 성씨록에 등장하고 있는 고대 선조들은 신라, 백제, 고구려 왕족과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고관들의 후손이 대부분이다.

(1) 백제
백제 왕족의 성씨로는 일본어로 쿠다라(百濟), 이와노(石野), 오오카(大丘), 마쓰다(沙田), 스가노(菅野), 오카야(岡屋), 하루노(春野), 오하라(大原), 나카노(中野), 쿠니모토(國本), 나가다(長田)등의 복성과, 하야시(林), 후미(文)씨 등 단성이 있다.

(2) 신라
신라 후예 성씨들은 야마무라(山村), 미야께(三宅), 우나바라(海原), 오이치(大市), 다께하라(竹原), 야마다(山田), 토요하라(豊原) 등의 복성과 이토(系)시 등 단성이 있다.

(3) 고구려
고구려 성씨는 고마(高麗), 나가세(長背), 나니와(難波), 고부(後部), 다카이(高井), 다카다(高田), 쿠와하라(桑原), 아사케(朝明), 요시이(吉井) 등의 복성과 고(高), 오(王), 시마(島)씨 등의 단성이 있다.

성 씨	유 래
야마또	일본(日本)을 야마또라고 읽기 시작한 것은 7C~8C이후부터이다. 야마또(혹은 야마토)는 일본서기의 등장인물 환무천황의 어머니쪽 성씨이다. 백제 무령왕의 후손으로 원래는 기비지방의 요시이 강 부근과 와께 이와나시에 있던 백제국에 서 살다가, 8C경 기내 야마또 지방(현재의 오오사카 주변 지역)으로 이주하여 이 지역의 사무라이 집안이 된다. 이때 이주를 하면서 `야마토`씨로 성씨를 바꾼다.
아야씨 (가야, 가라)	가야에서 이주해 왔다는 뜻이다. 대지주이며 대노예소유주였다. 에도시대(17C~19C)까지도 기비지방의 사무라이 집안이었다. **현재는 기비 씨다.**
소가(蘇我)씨	백제 개로왕때 백제->이시가와->다까이지 가루->아스까로 이어지는 경로로 이동을 해서 야마또에 자리를 잡았다. 6C~7C전반기 까지 야마또 정권의 실권자였다. 가장 백제적 성격이 강했던 왕족이다
나까도미 (中臣)씨	7C중엽 소가씨 가문을 몰락시킨 후 야마또노 아야씨(백제에서 온 선진 기술인집단)를 쥐어흔들면서 야마또 정권의 실세로 등장했다. 야마또에서 제사를 담당하던 가문이다. 이 집안은 나중에 '후지와라'라는 성씨를 받았다.
아스까베노 미야쯔고	백제 곤지왕, 혹은 말다왕의 후손(신찬성씨록)

[한반도 관련 다인종 다문화 성씨]

1) 275개 성씨

한반도 거주민은 해양이나 육지를 통하여 이주하고 합류하여 구성 되었다. 단일민족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 된 한반도이다. 한반도가 다인종 다민족 사회였음을 보려면 가장 쉽게는 성씨를 보면 된다. 1985년을 기준으로 136여 성씨가 귀화 성씨이다. 귀화 성씨는 신라시대 40여개, 고려시대 60여개, 조선 시대 30여개 성씨가 귀화 했다.
허 씨의 조상인 김수로왕의 왕비 허황옥은 인도 출신이며, 덕수 장씨는 아랍, 경주 설씨는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위구르, 화산 이씨, 정선 이씨는 베트남, 연안 인씨는 몽골 등이다.

2) 화신이씨

고려 고종 13년(1226년) 망망대해를 떠돌던 베트남인이 황해도 옹진반도의 화산(花山)에 상륙했다. 쩐(陳) 왕조에 권력을 빼앗긴 베트남 이(李) 왕조(1009-1226)의 둘째 왕자 이용상(李龍祥)이었다. 이용상은 9대왕 혜종의 숙부이자 왕자였다. 필담(筆談)으로 이 왕자의 신분을 알게 된 고려 조정은 그를 화산군으로 봉했다. 화산 이씨의 출발이다.

베트남에선 매년 음력 3월 15일에 리 왕조의 종묘 제례를 지낸다. 멸족한 줄 알았던 이 왕조의 후손이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베트남 정부는 1995년 제례 때 화산 이씨 종친회장을 제주(祭主)로 초청했다. 베트남 말을 모르는 종친회장은 한국말로 제문을 읽고 베트남인이 통역을 했다고 한다.

한반도에 이렇게 많은 성씨가 있는 것은 그만큼 다른 민족과 인종들이 모여 살아왔기 때문이다. 중국인의 경우 명나라가 청나라로 바뀌는 시기에 수십만이 한반도로 이주하였고, 고려와 조선 초기에 여진과 거란, 몽골이 한반도로 대거 이주하여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다. 특히 신라 시대 때부터 아랍 사람들이 한반도에 거주하며 살았다.

3) 현재로 늘어나는 성씨

2000년대 들어서도 성씨는 계속 늘어난다. 최근 귀화한 로버트 할리는 영도(影島) 하(河)씨의 시조가 되었고, 귀화한 파키스탄 출신은 안산 정씨의 시조가 되었다.

다문화 이름 '라모스 주연'

2008년 4월 2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홍창우 판사는 이주연(11·가명)양의 어머니가 딸의 성을 재혼한 남편인 필리핀 국적의 대니얼 라모스(가명)씨의 성으로 바꿔달라며 낸 성본(姓本)변경 신청을 허가하였다. 라모스씨가 본(本)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양은 본 없이 성만 바뀌었다. 이양은 최근 '라모스 주연'이란 이름으로 된 새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양은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친아버지를 만난 기억이 없었다. 이양에게는 어머니가 재혼한 2003년부터 늘 함께 지내는 필리핀인 새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였다. 이양은 종종 "나는 아빠 딸인데 왜 아빠랑 성이 다르냐"며 어머니를 곤혹스럽게 했다. 새 아버지와 성(姓)이 다른 게 이양에게는 상처였다. 이양의 어머니는 고심 끝에 법원에 성본 변경을 신청한 것이었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7차시]

1. 이주노동자 이해의 기초

1) 이주노동자의 이해

국제통합과 난민협회(The International Integration and The Refugee Association)는 2005년 현재 국제이민이 전세계인구의 2%인 1.75억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30년 전인 1975년과 비교하여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1970년-1990년간 노동이민 송출국은 1970년 23개국에서 1990년 55개국으로, 노동이민 수용국은 39개국에서 53개국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세계화에 따른 빈부, 기술, 임금, 노동력, 시장, 인구격차의 확대는 국제적인 노동이동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2004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에서 외국인노동자 비율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가별 격차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전체노동자 가운데 외국인이 무려 25%에 달한 호주가 가장 높고, 이어서 스위스가 22%, 뉴질랜드, 캐나다가 약 20%, 미국 15%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오스트리아, 그리스, 독일, 벨기에 순서로 약 7-9%대이며, 최근 아일랜드가 6%이상으로 급증하였다. 프랑스, 영국,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웨이, 체코, 핀란드 각국에서 5%이하로 나타났으며, 한국과 일본은 외국인노동자의 비율이 1%이하에 머물러 있다.

다양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구비율 만큼이나 각국의 수용제도와 방법은 다르다. 노동인구의 유입량을 중시하는 유럽과 미국, 싱가폴 등에 비하여, 노동인구의 전문기술이라는 질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한국과 일본, 양자를 병행하는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싱가폴 등이 있다. 노동량을 중시하는 싱가폴은 외국인 고용시 고용주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기업당 외국인비율을 한정하기도 한다. 프랑스는 직종, 업종, 능력과 관계없이 임시체재를 허가하거나, 독일은 국적을 제한하여 방문노동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국내노동시장이 부족할 경우에만 외국인인력을 충당하고, 인력활용 후에 귀국시키는 노동시장보완과 교체순환원칙을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 노동을 하는 소수자들은 인종차별, 강등, 혐오증, 증오, 법적 배제, 인권침해 등에 시달리고 있다.

2) 국제법적 지위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준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관한 국제기준의 주요한 것은 ILO와 국제연합에 의하여 정립되어 왔다.

① ILO 기본원칙(베르사이유 평화조약)

각국에서 법률에 의해 정립된 노동조건에 관한 기준은 그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노동자의 공평한 경제적 대우에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제427조)고 규정하고 있고, 1919년 제1회 총회에서 ILO는 이주노동자와 내국인의 대우의 평등을 촉진하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채택했다. 1919년에 이주 노동자의 상호대우 권고(제25호), 1925년에 재해보상에서의 대우평등조약(제19호), 1935년에 이주노동자의 연금에 대한 권리에 관한 조약(제48호), 1939년에 고용목적의 이주에 관한 권고(제66호; 이주노동자 조약)와 조약(제61호)을 채택했다. 국제연맹하의 ILO를 승계 하여 국제연합 전문기구로 재출발한 ILO는 1939년의 조약과 권고를 개정하여 고용목적의 이주에 권고(제86호)와 조약(제97호)을 1949년에 채택했다. 또한 ILO는 1955년에 노동자를 송출하는 입장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이주노동자 보호조약(제100호)을 채택했고, 1958년에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제111호 조약;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약칭 '차별대우협약')을 채택하였고, 1962년에 사회보장에서의 대우평등조약(제118호)을 채택하였고, 1975년에 제97호 조약과 제111호 조약을 보완하여 "부정한 조건에 의한 이주 및 이주노동자의 기회와 대우의 평등촉진에 관한 조약"(제142호) 및 동 권고(제151호)를 채택하였으며, 1982년에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에서의 권리유지에 관한 조약(1982년, 제157호)과 권고(제167호)를 채택했다. 이 중에서 1949년의 조약과 권고 및 1975년의 조약과 권고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직접적 목적으로 한 것이다.

② UN의 규정

국제연합은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의한 차별 없이 모든 자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장려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연합은 제3회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고, 1966년에 국제인권장전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을 채택하였다. 1985년 제40회 총회에서 "체재국의 국민이 아닌 개인의 인권에 관한 선언(외국인의 인권선언)"을 한 후에 1990년 12월 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약칭 '이주노동자권리조약')"을 채택하였다. 이들 국제조약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생활의 보장 등 많은 측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국제노동기준의 근저에 있는 기본적인 원칙은 자국민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의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노동법상의 추세는 이주 노동자에 대해 내국인 노동자와 균등한 대우를 할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러한 노동법상의 균등한 대우는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이 국내법에 위반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이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국내 법적 지위

국내법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종속성 여부, 노무수행과정에서의 종속성 여부, 대가로 지급 받는 보수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2조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6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H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는 기회 균등과 차별금지조항으로 이주노동자의 근로자 지위를 보호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도 근로자의 신분을 갖는다. 이주 노동자들은 출입국관리법의 체류자격 기준에 의해 불법 또는 합법으로 분리되어진다. 불법체류자는 형법의 범죄자의 개념이 아닌 행정법(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기간 초과자이다. 불법체류라는 행정법의 위반을 민 형법상의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 되어야 한다.

6) 이주노동자들의 자조 모임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이주노동자들의 조직은 주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하거나 본국의 정치 상황이 주요 동기로 하여 만들어진다. 이주노동자 조직은 필리핀(1992년), 네팔(1993년), 미얀마(1993년), 방글라데시(1993년), 스리랑카(1997년), 인도네시아(1998년) 등이다.

(1) 필리핀

1988년부터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이 입국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자양동 성당에 나가 필리핀 수녀와 만났다가 1990년 말에 '착한 목자회'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필리핀이주노동자들의 조직인 필리핀공동체(Filipino Community)가 1992년 9월 처음으로 조직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공동체'라는 이름에 근거해 소수민족 집단거주지로 규정해 해체시켰다. 10월에 다시 조직한 것이 삼빠기따 필리핀 공동체(Sampaguita Philippines Community)였다. 처음에는 종교 활동 중심으로 모이다가 차츰 임금체불 상담, 임금 송금 등으로 다양해졌다. 그러다가 조직이 커지면서 여러 문제가 생겨 수녀원에서 사무실을 폐쇄하였다가 서울대교구가 혜화동 성당에 사무실을 마련해줬다. 혜화동 성당에는 두 명의 필리핀 신부가 있어 이들의 활동을 지원했다. 이들 신부들을 중심으로 1998년 5월에 필리핀 이주자를 위한 사목회를 설립했다. 주일 미사에는 4천 명 정도가 참석하며, 종교 활동 이외에도 정보교환, 물건 구입과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 주간지(Sambayanna)를 발행하며, 체육대회도 연다.

(2) 미얀마

미얀마 조직은 1992년경에 조직되다. 조직의 지도자들이 1994년과 1995년에 출국해서 활동을 멈췄다. 1996년에 다시 조직되었는데 이 때 네팔의 조직과 조선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미얀마는 미얀마 족과 13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의 군부는 미얀마 부족 출신들로서 소수민족을 탄압한다. 영국의 간접 식민지 시절에 영국이 분리통치 하기 위해 소수민족들에게 기독교를 전하며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종교 갈등을 유도했다.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버마 민족민주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이하 NLD)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부가 부천에 있으며 이주노동자 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며, 소식지를 월 2회 발간하며, 체육대회도 개최한다. 미얀마 조직과 NLD 한국지부, 미얀마 민주화에 관심을 갖는 한국인들이 모여 인터넷 카페 '버마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도 있다. 태국과의 국경지대에 공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2002년 5월에는 지난 3년간의 조직 활동을 모은 자료집을 발행했다. 2002년 5월에는 미얀마 조직 회장이 부천시장상을 받았는데 이유는 미얀마인들에게 한국을 널리 알렸기 때문이다. 미얀마 노동자 7명이 유레카라는 밴드를 만들었으나 해산하고 Stopcrackdown 밴드에 합류했다.

(3) 네팔

네팔 노동자는 1993년 2월 서울에서 22명이 모여 네팔인 자문위원회(Nepalese Consulting Committee in Korea)를 결성했다. 1995년 명동 농성시 네팔노동자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이후에 모두 추방되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네팔인들이 입국하기 어려웠다. 네팔 조직은 본국의 네팔 노총과도 관련을 맺고 있다. 네팔 국민의 80%가 불교도이고 인도의 영향으로 카스트 제도에서 살았지만 한국에 온 뒤로는 카스트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4) 방글라데시
1993년 처음 방글라데시 노동자협회로 발족되었다. 그러나 이 조직이 해쳐 모여가 되어 1994년에는 방글라데시복지협의회(Bangladesh Workers Welfare Association) 모임으로 바뀌었다. 1997년 이후에는 국내와 방글라데시 내에 방글라데시노동자센터라는 NGO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자신들의 언어로 된 잡지를 발행하였으며, 이들은 모금운동을 통하여 1999년에 안산시 원곡동에 자신들의 이슬람 사원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5) 스리랑카
1997년에 스리랑카 독립협회(Sri Lanka Independence Association)가 창립되었다. 이들은 상호부조 활동이 활발하며 매년 4월이면 자국의 설날 행사 등을 통하여 일만 여명에 가까운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안산에 모여 자국의 행사를 벌인다. 스리랑카 현지인들을 위하여 컴퓨터 보내기, 자전거 보내기, 쓰나미 피해자 돕기 행사 등을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다.

(6) 인도네시아
1997년에 인도네시아 이스와라(Iswara)가 조직되었다. 주로 경기도 일대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이다. 인도네시아 노동자센터를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현지에 귀환노동자를 중심으로 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주로 밴드를 중심으로 문화동아리 활동이 활발하다.

7) 정부 차원의 이주 노동자 복지 실태
(1) 사회보험
① 건강보험 : 의료보험법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의료보험법 제83조 제2항; 국민의료보험법 제71조의2도 같은 취지). 통합의료보험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도 같은 취지를 정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는 1995년 이후 의료보험의 혜택이 부여되도록 운영되고 있다. 2004년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합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2006년 1월 1일 부로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당연 적용되도록 하여 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07년 7월 1일부터 '장기체류 재외 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 기준'에 대하여 법 개정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②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의 적용범위에 외국인도 당연히 직장가입자가나 지역가입자가 되고 있다(1998.12.31.) 그동안 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국민연금 반환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2007년 5월부터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 범위 확대로써 최소 가입기간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게 되었다. 나아가 이미 본국으로 귀환한 외국인도 적용 대상이 된다.
③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에는, 이주노동자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축적되면서 노동부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해 94년 2월 7일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되고, 근로복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④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입사 후 15일 이내 고용보험 가입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주는 근로자 임금에서 매달 고용보험 공제를 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않은 경우가 발생되어 근로자가 실제 회사의 사유로 퇴사가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청구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근로기준법 제8조 중간착취) 회사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으나 다국어 홍보 미비로 인하여 인지를 하지 못하거나 회사 측에서 개인 사유로 퇴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기타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1999년 12월 1일 부터는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 되고 있다.

(2) 무료진료

이주민들은 원칙적으로 무료진료의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자)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0년 8월 <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자) 건강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16개 시,도를 통하여 전국 242개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저 소득층 및 외국인 무료진료 사업을 위하여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재원은 주로 복권기금과 자치단체경상 보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16개 시도에 2,461,451,000(약24억)원을 배정하였고, 26년 한 해 동안은 총 4,590,396,000(약 46억)원을 지급하였다.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은 입원 및 수술비 등 본인부담이 큰 항목 위주로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지원대상은 2005년 외국인근로자에 한정하던 것을 2006년 6월 현재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 확대하였다. 이주노동자 지원 대상 선정방법으로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 확인, ② 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 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 전 현직 근로 여부 확인 ④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2. 고용허가제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언급함에 있어서는 이주노동자를 제도적인 용어인 외국인근로자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겠다. 고용허가제란 이원화된 외국인력 규제수단으로 업종별 고용비중에 차등을 두고 특정업종에 한하여 취업허가를 해주는 방식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제도적으로 정부가 정한 고용 관련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2004년 8월 17일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래, 2007년 8월 현재 15개국이 송출국가로 선정되어 있다. 필리핀, 베트남, 몽골,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키즈스탄, 동티모르 등이다.

1) 고용허가제에 도입 개관

1991년에 해외투자법인연수생제도가, 1993년에는 산업기술연수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들 제도들은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연수생'의 신분으로 도입하는 편법적인 정책으로 제도적으로 노동자성을 부정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및 산재보상법 등의 적용을 배제하였고, 사업장에서는 강제적립, 폭언폭행, 감금노동, 여권압류 등의 문제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및 인권의 침해의 온상이 되었다. 나아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한 수협, 농협, 건설협 등의 민간 이익단체들이 인력도입 및 관리를 담당함에 따라 송출비리와 사후관리를 빙자한 횡포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필연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이탈을 가속화시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양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산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1995년부터 이주노동자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1996년 고용허가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재오의원 대표 발의)」과 노동허가제를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방용석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사용자단체의 반발과 제 15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인권단체들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및 인권보장을 위한 법안'에 대한 지속적인 입법청원운동을 전개하였다. 2002년 대선 후보들이 고용허가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외국인력정책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거쳐 2003년 3월 고용허가제 도입을 및 인권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2002년 11월 제출)을 토대로 하여 2003년 8월 16일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법안 제정 후 1년이 유예기간을 거친 2004년 8월 17일자부터 고용허가제는 새로운 외국인력정책으로 본격 시행되었으며, 정부는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외국인력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시켜 운영하고 있다. 외국국적 동포에게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도록 한 취업허가제 역시 고용허가제에 흡수 통합되었다.

2) 고용허가제 도입 배경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1993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 도입했으나, 불법체류가 증가하고 연수생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인력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고 특히 영세사업장에서의 활용이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소득증가, 고학력화, 고령화 등으로 인해 3D 업종과 같이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업종에서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고착화되어 이들 업종에서의 외국인력 공급확대 요구가 높아졌다.
(1) 고용허가제 도입 목적
① 외국인력 선정·도입절차를 투명하게 하여 외국인력 도입과정에서의 송출비리를 방지하고,
②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여 내외국인간 균등한 대우를 보장하며,
③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와 취업을 억제하여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질서를 확립한다는 것 등이었다.
(2) 고용허가제를 도입 준수 원칙
① 외국인력의 합법적인 고용을 허용하면서도 내국인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도록 "국내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을 견지
② 저숙련 외국인력의 고용은 1회에 3년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만 허용하여 저숙련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를 방지
③ 저숙련 외국인력의 고용이 사양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국제경쟁력을 저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산업구조조정 저해 방지의 원칙 등이 제시되었다.

3) 고용허가제 관장 및 지원기관

기관명칭	관장내용
국무총리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	매년 국내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와 도입업종, 송출국가 등을 결정. 외국인력정책위원는 재정경제부·법무부·산업자원부·노동부의 차관, 중소기업청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조정실장)	20명 이내로 구성.
노동부 외국인력고용위원회 외국인력고용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등을 사전에 심의, 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사·정 및 공익대표를 위원으로 하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를 노동부에 설치 운영. 외국인력정책실무 담당 노동부의 외국인력고용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민간대행기관	산업인력공단: 외국인근로자 도입과 관련하여 송출국과의 협력, 근로계약 체결 대행 등 송출국과의 관련 업무 일체 일원화,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전반의 총괄 관리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교육을 전담. 산업연수생제도 연수추천단체였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은 민간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근로자 도입관리를 위한 국내사용자 편의제공 업무, 취업교육, 사후관리 등 사용자를 대행하는 성격의 업무를 수행. 2007년 7월 1일부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해온 일반외국인근로자교육은 국제노동협력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민간대행기관으로 이관.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글학회, 한국어세계화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별로 나누어 맡고 있다.
비정부 민간 위탁기관	2007년부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설치되어 현재 5개가 운영되고 있다. 2007년 하반기부터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활동을 수행해온 비정부기구(NGOs) 등을 외국인근로자 서포터스기관으로 선정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상담, 언어지원, 의료지원, 교육상담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체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조치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건강검진

국내 고용주와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외국인근로자는 자국의 송출기관이 실시하는 취업능력 배양 및 한국 적응에 필요한 총 80시간 내외의 사전교육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외국인취업교육기관에 입소하여 20시간 이상의 외국인취업교육을 이수하고 다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고용허가제에서의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가 계속 고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국내에서 5년간 취업할 수 있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상여금 등에 대한 투명한 고용관리를 위해 고용허가제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한 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③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한다. 출국만기보험·신탁은 중소기업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 후 귀국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④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취업교육기간 중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귀국비용보험은 귀국 시 필요한 비용(항공료)에 충당하기 위한 보험이며, 상해보험은 업무상재해 이외의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다.

⑤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일로부터 90일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입국 전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의 사업체에서 근로를 개시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 이동의 경우 입국 전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의 사업체에서 근로할 수 없는 정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 3회까지 다른 사업체로 이동하여 근로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1회 추가 할 수 있다. 다만 외국국적동포는 신고만으로 사업체 변경이 가능하다.
⑦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금지된다.

(3)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① 고용허가제에 의해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받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금지된다.
② 사업주의 근로계약 위반, 부당해고 등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 및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등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③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은 강제적으로 적용되고, 고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만 임의 적용되며,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3. 미등록 이주 노동자 문제

1) 쉽게 해결 될 수 없는 불법체류문제와 정주화

전 세계적으로 불법체류자가 없는 나라는 없다. 그만큼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강제 퇴거 혹은 사면 조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불법체류를 할 수 밖에 없을 만큼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의 문제가 절박하다. 그렇다고 불법체류를 무조건 방치 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국내에서 2003년 경 전체 36만 명의 이주노동자 중 29만 명이 미등록 신분(80%)인 때도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신분의 약점을 이용하여 심하게 인권침해를 받고 살아가는 경우도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카슬과 밀러는 뵈닝(Böning)의 연구에 근거하여 국제이주과정을 네 단계의 모델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로 젊은 노동자의 일시적 이주, 소득의 송금, 고국에 대한 지속적인 지향하며, 둘째로 체류연장 필요성과 친족 유대 또는 동일한 출신지에 근거하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상호부조 필요성에 근거한 사회연결망의 발전한다. 셋째, 가족의 재결합, 장시간 정착의식의 성장, 이 입지 사회에 대한 지향 증대, 자체 기관을 가진 인종공동체의 출현한다. 넷째, 입국하는 국가의 정부와 인구의 조처에 따른 법적 지위를 획득(결과적으로 시민권의 획득, 정치적 배제), 사회 경제적 한계 및 소수인종 집단의 영구적 정착한다.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나라는 반드시 장기 체류자 문제를 접하게 되고 이들의 정주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갈 문제가 된다. 한국인들도 독일과 미국으로 건너가 장치 미등록의 상태에 있다가 지금은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아 현지에 정착하여 살고 있기도 하다.

2) 다시 늘어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최근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이주노동자들도 기업의 부도 등으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새로운 사업장을 2개월 이내에 찾아만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장 이동의 제한 조건이 문제이다. 경제가 어렵고 문을 닫는 기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다. 결국 두 달 이내에 일자리를 못 찾은 사람은 자국으로 돌아가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야 한다. 그러나 일자리를 못 찾았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은 적다. 결국 이들이 선택하는 것은 불법체류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강제적으로 발생되는 불법체류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이 뚜렷이 없다. 불법체류가 방치되고 있을 뿐이다.

3) 2만 명이 넘는 10년 이상 미등록 이주노동자

거주이전의 자유와 일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실제 상황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일할 권리로서 인간의 기본권은 국경을 경계로 체류 제한을 받는다. 비자가 없는 사람은 불법체류자가 되며, 비자 없이 일하는 사람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살아간다. 이들은 언제 강제 퇴거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간다. 국내에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정주권과 자녀들의 인권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국제 관례상 일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5년 이상 계속 체류자의 경우도 4만4천여 명에 이른다. 이중 10년 이상 장기체류자의 경우도 2만1천 여 명이 넘는다.

국가별, 연도별 불법체류자 강제퇴거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중국	베트남	타이	몽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기타
2000년	6,890	3,859	257	160	392	228	163	520	142	1,169
2001년	10,301	4,957	399	260	729	411	392	514	462	2,177
2002년	5,670	2,596	242	211	407	173	201	157	325	1,358
2003년	5,861	3,356	205	139	369	176	151	217	156	1,092
2004년	19,307	8,714	903	1,152	899	829	927	1,451	974	3,458
2005년	38,019	15,159	2,770	2,896	1,992	2,233	1,631	3,771	1,577	5,990
2006년	18,574	7,397	1,390	1,399	1,418	1,188	706	1,591	549	2,936
2007년	18,462	7,294	1,398	1,609	1,495	1,079	747	1,517	504	2,819
2008.7	14,368	5,659	1,180	1,376	1,195	1,098	703	919	345	1,893

체류기간별 미등록체류자 상황 ('08. 7. 31. 현재, 단위 : 명)

계	1년 이내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7년미만	7년이상~9년미만	9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223,229	52,673	74,715	47,278	8,848	11,507	6,371	21,837

4) 4천여 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 가정 아동의 방치

특히 10년 이상 체류자의 경우 본국의 가족과의 관계도 오래 동안 단절 상태로 단절 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자국에서 결혼을 한 사람들의 경우 이미 가정이 파괴된 경우도 자주 발견 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결혼을 한 상태에서 자녀를 출생하거나 자녀와 동반 입국한 경우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무국적 혹은 그 자녀도 부모에 의하여 불안정한 신분을 유지 할 수밖에 없다.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서 미등록의 상태인 아동의 경우도 4천여 명에 이른다. 이들 청소년의 경우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한국사회의 부적응 등의 문제로 한국 사회의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소지가 크다. 프랑스 이주민 청소년들이 일으킨 소요사건과 유사한 일이 한국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이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들 청소년들이 아동노동의 현장으로 내 몰리고 있는 것에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

연령별, 국가별 미등록체류자 상황 ('08. 7. 31. 현재, 단위 : 명)

연령별 / 국가별	총계	0세~10세	11세-20세	21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이상
계	223,229	3,600	5,000	47,822	81,327	52,310	18,258	14,912
중국	69,731	559	588	15,233	23,074	19,829	5,637	4,811
중국(한국계)	32,182	124	214	2,451	5,976	8,406	7,222	7,789
베트남	16,308	35	80	7,014	7,370	1,573	199	37
타이	15,415	33	181	3,725	6,596	3,982	769	129
필리핀	14,252	93	97	2,584	7,072	3,601	643	162
몽골	14,172	112	573	3,903	5,839	3,100	572	73
방글라데시	9,491	22	133	881	5,344	2,782	271	58
우즈베키스탄	9,116	27	127	1,986	4,247	2,097	587	45
기타	42,562	2,595	3,007	10,045	15,809	6,940	2,358	1,808

4. 취업 실태와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1) 취업 실태와 현황

(1) 구직신청서 작성에서부터 입국까지 소요된 기간

구직신청서 작성에서부터 입국까지 소요된 기간 (단위: 명, 일)

	사업체수	구직신청서작성~근로계약체결(A)	근로계약체결~입국(B)	총 소요일(=A+B)
전체	299	111.4	47.6	159.0
중국 조선족	100	51.2	54.3	105.5
몽골	32	161.5	54.1	215.6
태국	49	209.5	43.2	252.7
필리핀	68	75.4	34.3	109.7
베트남	36	109.3	66.4	175.7
인도네시아	14	309.7	37.5	347.2

자료: 노동부, 고용허가제 3년 실태 조사보고서, 2007.

국적별로는 중국 조선족(105.5일)과 필리핀(109.7일)이 3개월 내외로 소요기간이 가장 짧았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347.2일로 무려 11.6개월이 소요되었고, 태국과 몽골도 7~8개월에 이른다. 이는 구직신청서 작성부터 근로계약 체결까지 소요된 기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즉, 근로계약 체결 후 입국까지는 47.6일이나 구직신청서 작성부터 근로계약서 체결까지는 111.4일로 3.7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인도네시아는 2005년 6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몽골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도입중단된 것도 일부 요인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사업주가 외국인고용허가를 신청한 시점부터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는데 까지 걸린 시간은 71.5일로 나타났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2) 취업 현황

2007년 4월 현재 약 41만 명의 외국 인력이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같은 시점의 국내 취업자 2,352만 명의 1.74%에 해당한다. 2004년 8월 17일에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고용허가제에 의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는 2007년 5월까지 모두 162,193명인데, 이 중에서 일반외국인이 73,036명(45.0%)이고, 외국국적동포가 89,157명(55.0%)이다.

고용허가제 취업자 현황(누계, 단위:명)

구 분	'04.12	'05.12	'06.12	'07.1	'07.2	'07.3	'07.4	'07.5
총 계	7,095	67,568	146,767	149,765	152,133	155,456	158,832	162,193
일반고용허가제	3,167	34,826	63,802	65,429	66,912	69,025	71,032	73,036
특례고용허가제	3,928	32,742	82,965	84,336	85,221	86,431	87,800	89,157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2007년 5월

(3) 취업형태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일반외국인근로자는 97.2%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외국국적동포는 건설업(46.5%)과 서비스업(38.5%)에 주로 취업해 있다.

고용허가제 취업자의 취업사업체 분포 (단위: 명, %)

		일반 고용허가		특례 고용허가	
		인원	빈도	인원	빈도
업종	농축어업	1,807	2.5	735	1.1
	제조업	70,988	97.2	12,579	18.7
	건설업	141	0.2	19,538	29.1
	서비스업	100	0.1	34,347	51.1
규모	5인 미만	18,422	25.2	42,151	62.7
	5-9인	13,982	19.1	7,764	11.6
	10-29인	25,045	34.3	11,247	16.7
	30-99인	12,197	16.7	4,925	7.3
	100-299인	3,144	4.3	969	1.4
	300-499인	246	0.3	97	0.1
	500인 이상	-	-	46	0.1
지역	서울	1,286	1.8	30,199	44.9
	수도권	48,398	66.3	25,561	38.0
	충청	6,566	9.0	3,627	5.4
	호남	6,382	8.7	3,295	4.9
	영남	10,013	13.7	3,809	5.7
	기타	391	0.5	708	1.1
전 체		73,036	100.0	67,199	100.0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고용허가제 원자료(2007년 5월 30일 현재).

(4) 취업환경

고용허가제 하에서 외국인근로자는 대부분 영세업체에 취업해 있다. 일반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사업체의 규모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체 취업자가 25.2%, 5-9인이 19.1%, 10-29인이 34.3%, 30-99인이 16.7%, 100인 이상이 4.6%이다. 즉 3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 취업해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전체의 78.6%이고, 10인 미만 사업체 취업 외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국인근로자도 44.3%나 된다.

(5) 임금과 근로시간

외국인근로자 임금수준 변화 (단위: 만원, 시간, 원)

	월평균통상임금	월평균총근로시간	시간당임금
2003년 조사	101.2	260.5	3,883
2005년 조사	100.3	228.3	4,390
2007년 조사	114.4	210.8	5,505

주: 2003년 조사는 제조업, 건설업, 음식업에 취업해있는 외국인근로자의 통상임금이며, 2005년과 2007년은 제조업취업자의 임금만 구한 것임.

자료: 유길상 외(2003), 유길상 외(2005), 본 연구를 위한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6) 사업체 이동 사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체 이동 사유 : 근로자조사(복수응답) (단위: %)

낮은 임금	**직장 휴.폐업**	과중한 노동	근로조건저하	임금체불	비합리적대우	사적인 이유	근로계약갱신거절	상해상병	기타
53.1	**21.9**	15.6	15.6	12.5	12.5	12.5	9.4	6.3	3.1

자료: 노동부, 고용허가제 3년 실태 조사보고서, 2007.

2) 고용허가제도의 개선 방향

(1) 총론적 차원

① 외국인근로자는 한계산업의 생명과 경쟁력을 유지시켜주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걸 맞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② 고용허가제는 외국 인력을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임. 그러나 제도의 미비점과 외국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③ 궁극적으로 법과 제도만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임.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근로자를 이방인으로만 여기지 않고,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국가의 발전과 국민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일깨워 가야 할 것이다.

(2) 도입과정의 차원

① 사용편리성의 증대 : 도입기간의 단축, 사용사업주의 필요에 맞는 인성, 기능을 갖춘 근로자의 선발권 보장, 일시적·단기적 필요에 따른 외국인력 사용 허용 등의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② 모집 인원의 5배수 추첨 제도도 지켜지지 않는다. 송출 브로커 근절은 현지 정부의 노력이 절대적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현지 공무원이 브로커로 개입한다. 무료로 받는 근로계약서가 5만원, 한국어 2주 교육비용은 40만원으로 현지 평균 월급 7-10만원에 비하면 무척 비싸다.

③ 교육을 받아도 한국어를 거의 못한다. 교육기관이 브로커 집단화하고 있다.

④ 외국인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권리 침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자신이 일해야 할 곳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자신의 전문 기능을 인정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받지도 못한다.

(3) 입국 후 개별 과제
① 방문 취업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4대 보험의 가입 의무화, 저 숙련 단순근로자로 전락 예방을 위해 고용보험법상의 전직·직업능력개발 기회 부여, 향락·유흥업종으로의 진출 차단대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

② 사업장 이동제한 수정이 필요하다. 사업장 이동가능 횟수 조정, 사업장 이동의 합리적 사유와 방식의 조정 등 필요하다. 최근 세계경제의 어려움으로 기업이 문을 닫는 경우가 늘어 본의 아니게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여 비자가 있어도 귀국해야 하는 사례가 속출 하고 있다.

사업체 이동이 허용되는 주요 사유는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한 경우, 휴업·폐업 그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체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폭행 등 인권침해,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해진 경우,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체에게 계속 근로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체에서의 근로는 가능한 경우이다.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는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있음. 그리고 동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30조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귀책으로 3회의 이직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1회의 이직을 허용하고 있다.

③ 기숙사 비용의 자부담, 때로는 숙소를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최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제공 조항이 삭제되어지고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기숙사 비용을 본인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고 회사에서는 본인의 기숙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회사가 지정하여준 기숙사만 이용하라고 강요한다.
④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권리 증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분증 회사 압류가 여전하고, 최저임금에서 보험료와 기숙사비, 식대 등을 공제하고 월급을 40만원 받기도 한다. 여전히 폭언과 폭행이 행해지기도 한다. 외출과 외박에 제약을 받기도 한다.
⑤ 사업장 해고 및 강제 귀국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경제 불황으로 사업장 이동의 제한이 외국인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
⑥ 사후관리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확충, 지자체의 참여시 매칭 펀드 방식 도입, 민간의 지원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
법무부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나오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일단 도망을 가게 된다. 직장을 다른 도시로 옮기기도 한다. 심지어 태국인의 경우 돼지머리 잡고 절하기도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불법 체류 단속'을 가장 큰 고민, 스트레스로 여긴다. 심지어 단속이 심할 때는 단속 스트레스 때문에 지하철에 뛰어내려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① 불법체류 신분으로서 당하는 인권
공장에서 일하면서 임금 체불과 폭행 등의 사건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부를 찾거나 경찰서를 찾는 경우, 관공서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 하지만 불법체류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본국으로 강제 퇴거 당한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있어도 노동부나 경찰서를 찾아 갈 수가 없다. 기업주나 내국인들은 이러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들의 인권을 유린시킨다.

② '불법 체류자' 과잉 단속
정부는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단속한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도망을 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나고, 과잉 단속 및 인권침해가 일어난다. 단속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건물 옥상에서 뛰어 내리다가 다리가 골절 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이주노동자 밀집 주거지역을 합동단속 하는 과정에서 단속반원이 단속의 기본 수칙을 어기고 과잉 단속을 벌이다가 인권을 침해 한다든지, 주민과 마찰이 일으키거나, 도망가던 사람이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도 종종 발견 된다.

③ 외국인 보호소 내 인권
불법 체류 하다가 단속 되면 외국인 보호소로 가게 된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행정범이지 형사범이 아니다. 일반 죄수하고는 다른 신분이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단속 되면 교도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갈 수속을 마치는 동안 머무는 곳이 보호소이다. 그러나 이 시설에서 과거에 욕설, 폭행 등의 인권유린의 사건이 자주 나타났다. 여수 화재 참사 사건과 같이 다수의 사람이 보호소 내에서 화제로 사망한 경우도 있다. 때로는 보호소내의 관리 보호가 허술한 틈을 타 보호소에서 탈출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④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범죄자 취급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법과 질서를 넘어선 갈등의 문제도 발생 한다. 특히 법질서를 넘어서는 문제를 외국인을 저질렀을 경우 외국인 범죄라 한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사실을 과장하여 불법체류자는 흉악한 범죄인이라는 도식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도 예외 없이 기초질서를 지키지 못하거나 범죄를 지키지 못할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마치 모든 외국인이 흉악 범죄인 취급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또하나의 집단적 차별 현상이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08차시]

1. 국제결혼과 다문화 가정의 이해

1) 국제결혼의 개념

결혼은 개인 간의 결합, 가족 간의 결합,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결합(가족/민족/국가/성 등)이다. 국제결혼이란 부부의 국적이나 주소·혼인거행지 등 혼인관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복수의 나라에 관계되는 결혼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부부의 국적이 다른 것을 국제결혼이다. 국제결혼은 언어·관습이나 문화적 배경의 차이 외에 나라마다 법률이 다른 점에서도,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법률문제가 생긴다. 혼인 후의 동거의무·부양의무 등의 부부간의 신분적 법률관계는 남편의 본국법이 적용되고, 이혼할 때는 이혼원인 발생 당시의 남편의 본국법이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 규정은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의 통로를 보면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상업적 중개업소를 통한 결혼
② 종교기관에 의한 결혼
③ 국제결혼한 부부나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가족 또는 친척들의 소개로 인한 결혼
④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체류가 장기화 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연애를 통해 이어지는 결혼 등이다.

2) 다문화 가정과 결혼이민자의 개념

(1) 다문화 가정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다문화 관점', '다문화사회의 개념', '다문화사회의 지향점'등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이나 사회적 합의가 반영되지 않은 채 '다문화'용어를 법의 내용으로 차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의 다문화는 포괄적인 다문화에 대한 합의 없이 '다문화사회'라는 상위개념을 공유하는 가운데 각각의 영역에서 다문화정책과 사업이 진행 되고 있다.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 등과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결합하여 이주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 가족 등을 말한다고 규정한다.(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초기 이 법안을 작성할 때인 2007년 3월 8일 고경화의원 등 24인이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 체류자격 등을 불문한 일반적 의미에서의 결혼이주민, 이주근로자, 난민, 재외국적 동포 등 다양한 이주민과 이주민가족을 그 적용의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제2조, 제4조). 정부의 동화정책과 배제정책의 결과로 이주민과 그 가족은 배제되었다. 결국 다문화 가정은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배우자와 그 자녀만 포함되게 되었다.

다문화 가정은 복수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 한다.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 가정은 주로 국제결혼 가정을 지칭한다. 복수의 문화가 존재하는 가정은 국제결혼 가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도 다양화 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 가정은 대략 몇 가지로 나뉜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첫째, 내국인이 외국인과 국제 결혼한 가정
둘째, 같은 나라 출신이 결혼하여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 가정
셋째, 서로 다른 나라 출신이 결혼하여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 가정
넷째, 다른 문화권에 살던 동포로서 한국에 정착한 가정(고려인, 중국동포, 탈북 이주민 등)
다섯째, 오래 동안 타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새롭게 정착하는 국민 가정

(2)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라는 용어도 자주 사용된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하면 재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 한다.(제2조 1항),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정부는 이법에 근거하여 재한외국인처우 즉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미등록이주민과 그 가족은 재외 대상이다.

3) 세계화와 이주여성
세계화는 '가난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와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세계의 1억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주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주 노동을 하는 소수자들은 인종차별, 강등, 혐오증, 증오, 법적배제, 인권침해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희생자들의 중심에 이주여성이 있다.

지구상에 가장 가난한 13억의 인구 중 70%가 여성이며, 같은 일을 해도 여성들은 남성들이 받는 것의 평균 3/4를 받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2배 무임금 노동을 한다. GAATW(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여성인신매매에 대한 세계적 동맹) 단체에서는 이주 여성의 국제 이주가 이주 노동자 형태인 신체적 모집에서 상업적 착취로 이어지는 결혼, 가정부, 예술가 매매춘, 조직범죄 피해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한다.

세계화는 다음 다섯 가지 영역에서 영향을 미친다.
첫째, '고용의 여성화' 현상이다. 아시아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에 고용된 노동자의 80~90%가 여성이라 한다.
둘째, '이주노동의 여성화' 현상이다. 아시아에서 '이주노동의 세계화'는 '이주노동의 여성화'와 일치하고 있다. 이주노동의 세계화는 가족의 해체와 파괴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여성에 대한 폭력의 증가'이다. 실업 혹은 비정규 고용상태는 전통적인 남성상이 세계화의 경제재편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이것은 가정에서 여성을 향한 폭력으로 왜곡되어 분출되고 있다.
넷째, '여성의 상품화'이다. 세계화는 가난한 여성들과 나이어린 소녀들이 점점 성장해 가는 세계 섹스 산업의 희생물로 바쳐지고 있다.
다섯째,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여성의 관계'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적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가 축소되고 주요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는 공공 서비스 요금과 생필품 가격인상을 가져온다. 적은 수입에 살림을 해야 하는 여성들은 이중 삼중의 역할과 피로를 강요당한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4) 최근 국내 국제결혼의 흐름

① 88올림픽 이전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1950-1970년대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국에 주둔한 미군 병사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이 주류를 이루었다. 1980년대부터는 종교단체(통일교)를 통해 일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외국과의 교류가 확대되고 유학이나 해외파견 등의 이유로 중상류층 여성들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면서 국제결혼에 대한 시각도 점차 줄어들었다.

② 한중수교이후부터 2002년까지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중국동포와 중국한족의 결혼이주가 활발히 이루어 졌다. 한중 국교수립이후 조선족들의 취업이주 및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와 맞물려 국제결혼이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1990-1995년부터는 '한국농촌총각 구제' 명목 하에 중국동포 여성들이 대거 한국남성과 결혼해서 한국에 왔다.

1995년 이후 부터는 동남아 남성 이주노동자들이 점차 자리 잡아 나가면서 국내 여성과 국제 결혼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졌다. 외국인 남성과 국제결혼 하는 한국인 여성에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과 출입국의 차별 대우로 국제 결혼한 한국인 여성들이 많은 수도를 겪어야 했다. 지난 1998년 국적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외국인 남성 배우자에게도 간이 귀화를 통한 국적취득이 용이해졌고, 한국인 어머니의 호적에 자녀를 등록할 수 있는 등 국제결혼 후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배우 규제가 엄했던 외국인 남성 배우자에 대한 체류자격 연장, 취업허가, 미등록 배우자의 재입국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③ 2003년 한중 양해 각서 폐지 이후

2003년 7월1일 한중 양해각서 폐지로 한국·중국 어느 일방국가에서 혼인등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후, 중국인과 국제결혼이 급격히 더욱 빠르게 증가하였다.2003년 '한국 여자, 중국 남자' 결혼은 총 3621건으로 2002년에 비해 202%나 늘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신부는 1990년 619명에서 2004년 25,594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중국국적의 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이주 노동력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수적 우위와 함께 같은 핏줄이라는 민족적 동질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중국 교포와 국내인과의 위장 국제결혼의 폐해가 자주 노출과 상업화된 국제결혼 시장의 확장으로 국제결혼은 베트남, 필리핀, 구 소련계, 몽골, 태국, 등의 나라로 확대되었다. 본래 베트남의 국제결혼 시장은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대만 남성들을 대상으로 본격화되었다. 2,000년 대만에 있어서 베트남 여성은 한해 34,291명의 외국인 신부 중 12,327명을 차지하며 전체 이주 여성 배우자 중 34%를 차지하는 주요 국가로 부상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점차 대만에서 베트남 신부의 인권문제가 사회화 되자 대만에서의 베트남인과의 국제결혼이 시들해 졌다. 베트남에 뿌리를 내린 결혼 중개업자들은 새로운 활로를 한국으로 삼았다. 2003년 이후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혼인이 비율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2. 국제결혼의 실태와 현황

1) 국제결혼의 년도 별 증가 추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국제결혼은 총 결혼건수 270,000건 중 122,552건으로서 총 결혼건수의 20.3%를 차지한다. 즉 100명중 20명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사회의 국제결혼 추이에 의하면 1997년~ 2007년 지난 10년 동안 국제결혼 건수는 261,079명의 한국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였으며, 그 가운데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이 186,758건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2007년 외국인과 혼인은 38,491건으로 1990년의 12,448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국제결혼의 증가와 여성화 현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특히 두드러지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반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간의 결혼이 70%이상으로 주를 이루었다면 1995년부터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이 76.8%로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 국제결혼의 여성화현상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국제결혼 추세 및 인구구성 (단위: 건, %)

연도	총 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결혼건수	구성비율	결혼건수	구성비율	결혼건수	구성비율
1997	388,591	12,448	3.2	9,266	2.4	3,182	0.8
1998	375,616	12,188	3.2	8,054	2.1	4,134	1.1
1999	362,673	10,570	2.9	5,775	1.6	4,795	1.3
2000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1	320,063	15,234	4.8	10,006	3.1	5,228	1.6
2002	306,573	15,913	5.2	11,017	3.6	4,896	1.6
2003	304,932	25,658	8.4	19,214	6.3	6,444	2.1
2004	310,944	35,447	11.4	25,594	8.2	9,853	3.2
2005	316,375	43,121	13.6	31,180	9.9	11,941	3.8
2006	332,752	39,690	11.9	30,208	9.1	9,482	2.8
2007	345,592	38,491	11.1	29,140	8.4	9,351	2,7
1997 ~2007	3,698,141	261,079	7.1	186,758	5.1	74,321	2.0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2008

2) 결혼이민자의 국적 · 지역별 체류 현황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는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이러한 경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국적도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출신 국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35,707명(34.3%)으로 가장 많고, 중국한족· 베트남필리핀·일본·캄보디아·몽골·태국 순으로 나타난다. 지역별로는 결혼이민자의 41.4%가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며, 나머지 6개 광역시까지 포함하면 70.2%에 해당하는 등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가 107,799명(88.0%)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남성 결혼 이민자는 14,753명(12.0%)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난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결혼이민자 체류현황

국적별 체류현황			
출신국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22,552	14,753	107,799
한국계 중국인	35,707	6,189	29,518
중국	32,080	3,068	29,012
베트남	27,092	141	26,951
일본	5,223	515	4,708
필리핀	5,819	162	5,657
몽골	2,325	37	2,288
캄보디아	2,683	9	2,674
타이	2,041	40	2,001
미국	1,558	1,053	505
우즈베키스탄	1,208	38	1,170
기타 (112개국)	8,024	3,539	4,485

지역별 체류현황			
전 국	전체	남성	여성
	122,552	14,753	107,799
서 울	29,560	5,958	23,602
부 산	5,476	517	4,959
대 구	3,692	347	3,345
인 천	7,201	1,030	6,171
대 전	2,731	258	2,473
광 주	2,413	171	2,242
울 산	2,273	142	2,131
경 기	31,722	4,652	27,070
강 원	2,976	151	2,825
충 북	3,795	234	3,561
충 남	5,714	278	5,436
전 북	4,930	178	4,752
전 남	5,453	123	5,330
경 북	6,261	249	6,012
경 남	7,308	389	6,919
제 주	1,047	76	971

※ 결혼이민자(국민의 배우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상 체류자격 F-1-3과 F-2-1을 가진 자를 말한다.

자료: 법무부, 국제결혼 체류현황 '08.12.31.

3)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및 자녀 현황

국적 미 취득자는 체류자에 해당된다. 국제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08년 행정안전부 조사 자료가 '07년 말 외국인 등록인원(93,786명)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외국인등록 지역과 실제 거주지역이 다른 경우도 있고, 조사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인원이 있을 수도 있다.

결혼이민자의 가족 체류 현황

결혼 이민자									자녀현황		
계			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44,392	16,702	127,690	102,720	13,711	89.009	31,672	2,991	38,681	58,547	29,837	28,710

자료 :'08.7. 행안부 조사자료

4) 국제결혼의 재혼

결혼 유형에 있어서도 초혼에 비해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1년 32.3%의 재혼 비율이 2004년에는 45.3%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이혼이나 사별 후 자녀문제,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재혼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남성들에게 있어서 이주 여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성은 비교적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배우자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적 특성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다가 점차 도시의 주변화 된 즉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남성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의 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은 총 69%에 달한다.

3. 베트남 사례로 본 결혼이민자 실태

1) 한국- 베트남 국제결혼의 시작과 출신 지역

1992년 베트남과 한국이 정식적으로 수교한 이후에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으로 진출하고 이 기업의 한국 남성들이 베트남 현지처를 먼저 맞이했고 베트남 노동자들이 1995년에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한국 남성과 베트남 이주 노동자 간의 결혼도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만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에 비하면 한국 남성과 베트남 혼인건수가 적었으며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결혼을 경로로 한국으로 이주한 베트남 여성은 2000년에는 95명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5,822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2) 출신 지역과 학력

베트남 서남부지역으로 불리는 메콩델타지역 출신 여성들이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 절대 다수가 남부 지역의 13성(省) 출신인데 그 중의 Cần Thơ(껀터)성, Tây Ninh(떠이닝)성, Vĩnh Long(빙롱)성, 호치민시(市)출신 여성이 압도적이다. 이 도시들 역시 한국으로 신부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다. 2006년에 접어들면서 베트남 내 결혼 시장이 북부로 확장되었는데 주로 Hải Phòng(하이퐁)시, Quảng Ninh(꽝닝)성, Hải Dương(하이즈엉)성에 집중되었다.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은 최종학력이 극히 낮으며 그들의 남편들보다도 더 낮은 편이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베트남 여성의 한국 남편의 교육수준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 미만은 13.5%, 중학교는 40.50%, 고등학교는 45.9%, 전문대이상은 없고 베트남 여성의 교육수준은 중학교 미만은 5.4%, 중학교는 27%, 고등학교는 56.8%, 전문대는 10.8%이다 (보건복지부 2005: 58).

3) 연령과 혼인 상태

베트남 여성들 중의 57.5%가 20세에서 30세이며 36.2%가 20세 미만이고 06.3%가 30세 이상이었다. 국제결혼을 한 한국 남성 중 20대가 8.7%, 30대가 35.6%, 40대 이상이 55.7%를 차지하였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부부일수록 부부의 나이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5: 56). 한국의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 부부의 평균 연령 차이가 11세인데 10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이주여성은 34%인데 비해 베트남 여성은 72%이다(보건복지부 2006: 55).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부부의 혼인상태는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 전에 베트남 여성들 중 98.4%가 미혼자였으며 1.6%가 이혼자였다.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 간의 국제결혼이 시작된 초창기에는 대부분 미혼자였지만 점점 재혼 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4) 혼 중개 업체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1) 중계업체 수
베트남정부는 베트남 여성과 외국 남성들의 결혼알선업체를 통해 급속도로 이루어진 상업화된 국제결혼을 불법화하지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대외적 입장을 견지하기만 한다. 한국에 있는 수천 개의 국제결혼알선업체 가운데 베트남결혼알선업체는 1500여 개로 추산된다. 결혼알선업체들은 본사와 베트남과 국내 지역별의 지사로 나뉜다. 베트남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은 결혼 당사자들에게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의 자율의지를 심각하게 제한한다. 또한 중개업자의 조직적인 연결망에 의해 여성을 모집, 관리, 통제하고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국제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신매매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2) 결혼 과정의 불평등
일반적으로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은 낯선 사람끼리 조건이 맞아 서로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주고받을 뿐이고 교제하지 못한 채 결혼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결혼은 잘 사는 나라의 남성이 가진 자원과 가난한 나라의 여성이 가진 자원의 교환을 의미한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주로 농촌마을을 돌며 여성들에게 국제결혼을 권유하거나, 마을에서 여성을 모집해서 인수하는 중매업자가 존재한다. 여성이 모집되면 이들을 호치민시 등과 같은 대도시로 데리고 가 소정의 커미션을 받고 마담이라 불리는 사람에게 여성을 인계한다. 여성들은 결혼할 때까지 현지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숙소에서 생활을 하며 맞선을 보러 오는 남성들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맞선을 본다. 그 기간은 짧게는 수일에서 수개월에 이른다. 베트남 여성들이 맞선을 준비하며 숙소에서 생활하는 동안 드는 생활비는 '빚'으로 계산되다가 결혼할 때 한국 남성이 지불하는 비용에서 제하게 된다. 따라서 맞선을 거부하거나 중간에서 결혼할 의사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이곳에 오래 머무를수록 불리하기도 하다. 결혼 후 베트남여성이 한국에 입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20일에서 보통 2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된다. 그 기간 동안 고향에 돌아가 대기하는 여성도 있지만, 대부분 한국중개업체에서 운영하는 숙소나 한국인 중개업체로부터 교육 위탁을 받은 베트남 현지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합숙생활은 한국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 때문이라고 하지만 여성들이 변심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결혼이 결정된 여성들은 외출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고, 결혼을 파기 할 때는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고 가족들을 협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여성의 피해 사례도 종종 생겨난다.

남성은 수십 명의 여성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선택할 수 있지만 베트남 여성은 여러 명의 한국 남성 중 마음에 드는 남성을 선택할 권리가 없으며 자기를 선택한 남성과 결혼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만 갖는다.

(3) 범죄 창구 악용
범죄자들은 국제결혼알선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들과 결혼하여 이 여성들을 외국의 사창가에 팔거나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한다. 호치민시 법원에서 여러 번 대만의 결혼알선업자를 통해 베트남 여성과 위장 결혼해서 성매매를 강요한 대만 남성을 재판한 적이 있다. 13-14세인 미성년 여성을 위조서류를 작성해서 외국인 남성과 위장결혼을 시켜서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시킨 범죄자도 있다. 이 문제는 대만에서 만연하며 심각하지만 한국에서도 발생했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고 보고되었다. 2003년 8월 19일의 미디어다음에서 한 퇴폐 이발소 주인이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시킨 베트남 여성에게 윤락을 강요하였다고 보도되었다.

(4) 허위 광고
문제는 베트남 여성들이 자기와 결혼할 한국 남성에 대해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나 한국사회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 지난 10년 동안 베트남의 중앙방송과 지방방송에서 한국 드라마를 방영해 왔지만 그 드라마들은 한국사회의 일부 사람, 구체적으로 재벌의 회장, 판사, 의사 등의 상류층의 생활을 반영하는 것이지 한국 사회의 각층의 생활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에 대한 이러한 지식들은 단편적이고 지나치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신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삶이 한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만을 품고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 부자가 되어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결혼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이 자기가 기대하던 것과 완전히 달라서 후회했다고 한다.

(5)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 부족
베트남에서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의 가족에게 지참금과 예물을 주고 신부는 신랑의 가족에게 혼수를 주지 않는다.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 남성과 결혼할 때 한국에도 그런 풍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남성이 자기에게 지참금을 주는 것을 당연시한다. 다만 한국 남성이 잘사는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참금을 많이 준다고만 생각하고 자기가 팔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한국 남성도 마찬가지로 베트남 풍습을 모르며 자기가 돈을 주기 때문에 부인을 소유물로 여기기도 한다.

현재 메콩델타지역에 수천 명의 여성들이 대만 남성과 결혼했다가 남편이 가난하거나 성폭력, 노동착취 등을 당해 이혼하거나 별거하거나 도망쳐서 돌아왔다. 그래서 한국 남성과 혼인을 맺은 베트남 여성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람은 운이 안 좋아서 그렇다", "그것은 남이 당한 일일 뿐 자기가 당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장사'나 '투자', 또는 '도박'으로 여기기까지 한다.

4. 국제결혼 가정의 갈등과 이혼

1) 국제결혼 가족 부부 적응 특성

구분	부인 입장	남편 입장
국제결혼과정 결혼 초 경험	·동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탈피, 한국사회에 대한 동경, 한국남성 선호 ·성향: 적극적, 긍정적인 주체자, 삶을 개척하고자 노력하는 자 ·결혼방법: 중개업체(숨기려함), 연애, 소개로 결혼 ·특성 - 한국남성의 자상함보다 가부장적 권위 -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고립, 외로움 - 식생활, 주생활 차이로 적응 어려움	·동기: 결혼적령기가 지나서, 재혼의 대상자, 한국에서 결혼이 어려워서, 가부장적 사고, 전통적이고 순종적인 여성과 결혼 원함. ·중개업체에 대한 불신과 상업성에 피해 주장 ·특성 -2-3개월이면 적응이 될 줄 알았는데, 의사소통이 안되어서 어려움 - 살수록 문화적 차이를 느낌, 자괴감과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 상황에 따른 대응방식의 차이로 갈등과 소외 - 시댁의 지나친 간섭과 관심으로 교류를 꺼림 ·도움이 된 점 : 남편의 한국말 교육, 긍정적인 감정 표현(의지하는 사람- 남편)	후회 -자녀출산 후 어머니로서 자녀교육을 잘 할지 걱정 미흡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는 모습이 고마움 ·원하는 것 : 빨리 한국어를 배워서 소통하기를 바람.
결혼 초기 이후 경험	-한국말(의사소통가능), 집안일, 음식장만, 예절 등에 익숙해 짐 -체계적인 한국어학습(능력시험 등) 노력 -한국사회에서 취업을 위해 노력(일할 곳)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가정경제 어려움 -자녀의 학습지도 및 교육에 대한 부담 -시어머니는 지지자로서 또한 전통적 가부장 권위 유지자로 인식 ·이웃은 대화의 상대자, 혹은 지나친 참견자로 인식 *아내, 어머니, 며느리로서 역할 강조로 직접 취업하여 가정과 친정에 도움 기대 * 모국어와 출신문화에 대한 이해를 요구	-아내와 집안의 며느리, 자녀의 어머니로서 역할 요구 -가족과 친지, 이웃의 지지는 한국인으로 동화되기를 요구 -부인이 자녀를 잘 양육해 주기 바람 -부인의 취업에 대해서는 가정형편에 따라 입장이 서로 다름(취업을 바라기보다 집안을 지키는 아내로서 역할 강조, 반면 취업해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길 바람). * 아내 출신국가의 이해와 모국어 습득 소극적

출처: 이혜자.(2009.2). 다문화가족의 적응과 우리사회의 대응. 행정학회 발표자료

2)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율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가출과 이혼은 주로 '남성' 입장에서 이해된다.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여성의 몫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남성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여성들이 참고 감내하며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시된다. 많은 경우 남성들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결혼생활 속에서 아내가 무엇을, 왜 그리 고통스러웠는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 남성들이 돈을 주고 데리고 왔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결혼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 깨어졌을 때 모든 책임은 이주 여성들에게 돌려진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국제결혼과 국제이혼추이

연도	총 국내결혼		국제결혼				총 국내이혼		외국인과 이혼			
연도	총결혼 건수	증감률	국제 결혼 건수	구성 비율	증감	증감 률	총이혼 건수	증감 률	외국인과 이혼 건수	구성 비율	증감	증감률
1997	388,591		12,448	3.2			91,159					
1998	375,616	-3.3	12,188	3.2	-260	-2.1	116,727	28.0				
1999	362,673	-3.4	10,570	2.9	-1,618	-13.3	118,014	1.1				
2000	334,030	-7.9	12,319	3.7	1,749	16.5	119,982	1.7				
2001	320,063	-4.2	15,234	4.8	2,915	23.7	135,014	12.5				
2002	306,573	-4.2	15,913	5.2	679	4.5	145,324	7.6	1,866	1.3	-	-
2003	304,932	-0.5	25,658	8.4	9,745	61.2	167,096	15.0	2,164	1.3	298	16.0
2004	310,944	2.0	35,447	11.4	9,789	38.2	139,365	-16.6	3,400	2.4	1,236	57.1
2005	316,375	1.7	43,121	13.6	7,674	21.6	128,468	-7.8	4,278	3.3	878	25.8
2006	332,752	5.2	39,690	11.9	-3,431	-8.0	125,032	-2.7	6,280	5.0	2,002	46.8
2007	345,592	3.9	38,491	11.1	-1,199	-3.0	124,590	-0.4	8,828	7.1	2,548	40.6

3) 국제결혼 가정의 갈등 문제

대표적인 문제	문제 내용
편견과 선입견	- 저개발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깊은 차별과 편견 - 돈 벌기 위해 위장 결혼 한 것처럼 오해 - 외국인 신부가 이탈 방지목적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 - 성적 역할의 편견, 성적 서비스, 자녀출산, 집안 살림, 시부모 모시기
언어의 장벽	-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제결혼 - 시간이 지나가도 말이 통하지 않아 갈등과 좌절, 분노, 폭력 - 한국인 배우자 역시 외국인 출신 배우자의 언어와 문화 문외한
문화적 차이	- 문화예절과 음식, 관습 문화의 차이, 배우자 상호 문화 이해 부족 - 가부장적인 남편의 태도와 시댁의 문화 - 자녀의 소속과 양육방식, 친족과의 관계 등
술과 가정폭력	- 국제 결혼한 여성 100명 중 30%가 남편의 폭력으로 시달림 - 57%가 폭행, 18%가 폭언, 경제적 학대가 12% - 이들 중 64%가 그냥 참는다. - 한국인 배우자의 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경제적 빈곤	한국의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2005) - 결혼 이민자 가구의 절반 이상인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는 가구도 15.5% - 20.0% 이상이 의료보장 혜택을 전혀 받지 못 받음. - 이주 여성들 농한기에 인근 공장근로 생활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 남편들 대부분 건설업과 같은 비정규직, 수입 불규칙 - 재혼 여성 경우 본국에 자녀 양육비 책임으로 경제적 압박
한국생활의 실망	- 배우자 낮은 경제력, 농부나 저임금 노동자, 실업자, 정신장애자, - 농촌의 경우 농사일과 가시 일에 시달림 - 재혼한 경우 아이들 뒤치다꺼리, 시부모 간병 등
낮은 사회적 성취감	- 결혼 이민자의 제한적인 사회진출, 대부분 노동일 - 국적을 받아도 외국인 취급 - 이주 여성 임신, 출산, 육아, 부양 등 경제적인 자립에 한계.
국제결혼에 대한 낮은 자의식	- 실직, 성격 신체적 장애 등 혼인 시기는 놓쳐버린 내국인 남성 - 중개업소 소개 결혼 비용 대부분 부모나 가족 부담 - 본인 스스로 결혼을 선택 보다는 부모 강요 - 결혼 생활 노력이나 배우자에 대한 배려 부족
자녀에 대한 교육 문제	- 외모와 피부색은 놀림의 대상 - 부모의 언어부족으로 학습 지도의 어려움 - 자녀의 문화적 정체성 혼란

5. 국제결혼과 결혼 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1) 정부의 결혼이민자 통합정책(7개 정책과제와 26개 단위과제)

(1) 탈법적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① 결혼중개업체 탈법행위 단속
②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를 위한 입법 추진
③ 인신매매 등 중개행위에 대한 관리방안 검토
④ 재외공관에 여성·인권 담당관 배치 검토
⑤ 결혼사증 발급 서류·절차 표준화 및 사전 인터뷰제도 도입
⑥ 외교채널을 통한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⑦ 결혼 당사자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 제공

(2)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①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신청 요건 강화
② 혼인파탄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③ 이혼 이후 간이귀화 신청 시 입증요건 완화
④ 사실혼 부모 출생 자녀 및 외국인 모에게 국적 또는 영주권 부여
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및 보호

(3)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

①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②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지원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4)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① 다문화교육추진체계 구축, 학교의 결혼이민자 자녀지원 기능 강화
교사역량 강화, 집단 따돌림 예방
② 복지 및 상담서비스 제공

(5)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① 기초생활 보장 및 건강증진 지원
②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③ 직업상담 및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진출 지원

(6)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① 정부정책 안내 및 일반국민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②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③ 공무원 교육 실시
④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7) 추진체계 구축
①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②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운영
③ 자원봉사자활동 인프라 구축 및 통역, 상담, 교육인력 양성
④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및 중앙, 지방정부간 정책네트워크 구축

2) 정부 정책의 보완 사항

(1) 국제결혼 가정의 상호 문화이해 교육의 강화

결혼이민자나 국민 배우자 및 가족에 대한 상호 문화이해 교육이 선행 되어야 한다. 한국인의 결혼이민자 문화의 이해가 전무한 것도 사실이지만, 결혼이민자 나라의 현지인 교육 체계 등도 매우 취약한 형태이다. 따라서 국제예비결혼준비교육, 국제결혼 생활 초기의 다각적인 서비스지원, 이주여성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생활권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

(2) 이혼율이 높은 사회주의권에 대한 종합 대책

이혼율이 높은 나라가 대개 중국, 베트남, 몽골, 중앙아시아 계열의 사회주의권이다. 이들 나라에 대한 결혼 과정과 결혼 이민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에서의 사회적응 교육 역시 '같은 나라 출신이기에 모두 동일한 문화의 사람이다.'는 인식을 넘어 좀 더 심층적인 접근을 위한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

(3) 관주도의 동화 및 통합 정책의 재고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한국 사회적응 교육 등이 지나치게 관주도의 동화 교육중심이다. 특히 사회통합교육을 국적과 연계 시키는 등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 결혼 이민자 집단의 다양한 의견과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소통의 장이 먼저 선행 되어야 한다. 다문화는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성을 중시한다. 다양성의 확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세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4) 멘토 및 자조모임의 활성화
말이 다르고 문화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를 먼저 결혼 한 분들에게서 조언을 듣는 자리가 필요하다. 자조모임은 결혼 이민자들의 수다방의 역할도 겸할 수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것을 관 주도의 모임은 형식적인 것이 치우칠 수 있기에 민간단체의 활용이 필요하다. 쉼터와 지원 시설을 만들고 개방하여 이주여성들의 모임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

(5) 경제교육의 강화
한국에 오기 전에 일할 수 있는 취업 교육 등이 필요하다. 결혼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적 욕구 불만 으로 취업을 원한다. 이들이 취업 할 수 있는 고용의 기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경제적인 자립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직업교육, 취업알선, 양육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확장 및 쉼터의 설치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은 다문화 적이며 다양성에 기초해야 한다. 결혼이민자 문제 상담 지원에 대한 전문 인력 등이 부족하다. 이혼과 관련된 지원 단체의 전문성 부족이 상담 자체에 대한 수준을 저하시키고 지원 단체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전문교육이 요청된다. 아울러 결혼이민자가 이혼의 위기에 있을 때 그 자녀와 임시 피해있을 수 있는 친정집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쉼터 등이 필요하다.

(7) 자녀 교육지원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를 위한 지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사회의 의식 개선에 대한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
자녀들의 정체성 지원교육, 아동에 대한 건강지원, 아동상담서비스 제공,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다문화 교육 및 인권교육 시행 등이 필요하다.

(8) 상업적 결혼 중개 업체에 대한 철저한 규제
현재 상업적 결혼 중개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알선은 다분히 인신매매의 형태를 띠고 있다. 저소득층의 남성들이 비싼 결혼 수수료를 지불하다 보니 매매 혹은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여성에게 그런 복종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심각한 갈등으로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결혼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내 놓지 않으면 이혼도 해 주지 않겠다. 고 협박하곤 한다. 또 이주여성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결혼 중개업소에 전화를 하여 자문을 구하는데 이들은 "여권을 압류해라." "친구들이나 가족과의 전화를 차단해라" 심지어는 "빨리 임신을 시키라"거나 중개업자가 여성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너의 부모님에게 얼마를 지불했다.' '이혼을 하려면 그동안 든 모든 비용을 갚아야한다' 는 등의 협박으로 소유물화 한다. 또한 현지에서는 선을 본 후 잠자리까지 한 후 신부가 이런 저런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으니 교환해 달라는 요구를 하며 결혼 중개업체도 이러한 성실한 리콜 서비스를 약속하고 있다. 결혼 중개업소는 사용한 경비를 제외하고 한 쌍의 결혼을 성사시키고 약 200-300만원의 수익이 생기는데 사람을 연결시키면서 얻어지는 막대한 수입은 결국 인간을 상품화하고 매매하게 되는 것이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더 이상 국제결혼을 인간을 매매하는 형태의 돈벌이로 여겨 인권을 유린하고 억압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기준에 따른 관리 감독에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9) 이혼 소송 진행 중 취업활동 허가
한국인과 결혼을 하면 취업이 가능한 F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을 신청하게 될 경우 F2 비자가 동거인 자격의 F1 비자로 전환되는데 F1비자는 취업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들 외국인 배우자들의 경우 한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한 보살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함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들의 취업을 불허하며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들이 적당한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취업 활동을 보장해야한다.

1) 인신매매성, 사기성 국제결혼 풍토
남편을 중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 사람이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런가보다 생각했어요. 중국에서 약 1천만 원의 돈을 주고 소개 받아 결혼했어요. 소개 받을 때 한국에서 농사를 짓지만 땅도 많고 집도 좋고 부자라고 했어요. 남편이 인상도 썩 나쁘지 않아서 결혼했는데 막상 한국에 와보니 시할머니에 시어머니, 시동생들이 함께 살고 있었고 집도 가난했어요. 그래도 나는 남편과 가족들을 위해서 식당일도 하고 아무 일이든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남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툭하면 저를 때렸어요.(국제결혼 중국인 여성)

2) 외국인 남선과 결혼한 내국인 여성
남편은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노동자지요. 남편을 공장에서 만나 교제했어요. 제가 결혼한다고 남편을 데리고 갔을 때 아버지는 저와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 앉으셨어요. 어머니는 울기만 하시고, 동생들은 언니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화를 냈죠. 결혼허락은 당연히 받지 못했어요. 남편과 저는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결혼하기는 힘든 것을 알았어요. 저는 죄송하다는 편지 한 장 써 놓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는 바로 남편의 나라 스리랑카로 가서 그곳 부모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혼식을 올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은 딸아이를 낳고 한국에서 살아요. 아직까지 부모님과 동생들은 완전히 마음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남편을 조금은 인정하는 듯해요. 동생은 처음 제 남편을 보았을 때 온통 까매서 놀랍고 무서웠대요.(스리랑카 국제결혼 한국인 여성)

3) 재혼한 국제결혼 가정
남편은 아이들이 세 명 있어요. 나에게도 딸이 하나 있지요. 남편은 전처와 이혼하여 혼자서 식당을 하였는데 우리는 남편 친구의 소개로 만났어요. 남편의 아이들과 내 딸 아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남편의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내 딸이 주로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요. 남편은 저와 딸에게 잘해주는 편이에요. 저는 남편과 식당일을 하는데 힘은 들지만 그래도 큰 걱정 없이 살아요.(국제결혼 몽골 여성)

4) 증가하는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
2007년 9월 베트남 여성이 불임으로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국인 부부에 의해 "대리모"로 유용되어 두 아이를 출산과 동시에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빼앗기고 "축출 이혼"을 당한 사례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가 보도되어 한국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한국인 부부가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하기 1달 전에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후 베트남 여성과 이혼한지 1달도 채 안되어 재혼신고를 하였다는 정황을 통하여 그들이 베트남 여성을 대리모로 유용하고자 사전 의도하였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같은 해 7월에는 19세의 결혼이주여성이 갈비뼈 18개가 부러진 채 사채로 발견되었다. 결혼중개업체 소개로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을 하고 한국으로 입국한 이주여성을 기다린 것은 지하 월세 방에서 감금과 다름없는 생활이었다. 한 달 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이주여성에게 되돌아온 것은 남편의 무자비한 폭행이었다. 범인으로 검거된 남편은 수사과정에서 "돈 들여 아내를 데려왔는데 자꾸 돌아간다고 해 홧김에 때렸다."라고 진술했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09차시]

1. 중국동포의 이해

1) 중국의 동포 현황

(1) 만주지역의 중국동포 거주 역사

현대적 의미에서 중국동포(중국동포)의 일반적인 개념은 일제 강점기 전후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 만주일대는 한민족의 발원지로서 해방 전후사를 기준으로만 중국동포의 역사를 보는 것은 좁은 시각이다. 만주일대의 중국동포 거주 분포는 다섯 갈래이다.

① 한민족의 형성시기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한민족인
② 조선말기 흉년 등으로 이주해간 조선인
③ 독립운동 등을 하기 위하여 만주로 갔다가 해방 후 귀국하지 못한 사람 또는 그 자손
④ 일제 치하에서 강제 이주를 당해 온 세대 중 해방 후 귀국하지 못한 사람 혹은 그 자손
⑤ 생계차원에서 만주로 이주하였다가 해방 후 귀국하지 못한 사람들 등이다.

(2) 만주의 중국동포 거주 분포

중국의 13억 인구는 93%의 한족과 7%를 차지하는 55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있다. 이중 현재 중국에는 약 192만 여 명의 중국동포가 살고 있다. 만주지역의 중국동포 집거지역과 산재지구에는 민족마을을, 촌 일급에 해당하는 촌에는 민족 촌을 형성하며 살고 있다. 중국의 동북 3성(만주)에는 43개 조선향족이 있다.

<만주의 중국동포 거주 분포>

지역	거주인수	거주지역	다수출신고향
길림성지역	1,180,000명	연변, 목단강, 밀산지역	함경도, 평안도
흑룡강지역	450,000명	하얼빈, 오상, 상지 지역	경상도, 전라도 등 주로 일제 강점기 강제 이주
요녕성지역	350,000명	심양(봉천)	지역별 고루 유입
기타지역	20,000명	내몽고, 북경 등	지역별 고루 유입

(3) 중국동포의 재이주

최근 중국의 중국동포들의 대 도시와 연해 도시로의 이동은 약 55-60만 명으로 본다. 2007년부터 재외동포정책의 일환으로 발문취업제가 실시되면서 국내에 입국한 중국 동포는 약 38만 명에 이른다. 특히 중국동포들이 내국인과 결혼을 하거나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은 약 8만 명에 이른다. 최근 46만 여명의 중국 동포들이 취업 및 귀화 형태로 국내로 이주한 것이다. 특히 일부는 미국과 일본 등지로 이주하였는데 이수가 약 15만 명에 이른다. 그동안 중국에 거주하던 중국동포 인구 192만 명 중 60%가 넘는 120만 여명의 사람들이 중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재이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4) 중국동포의 재이주에 따른 중국동포 사회문제

중국의 동북3성 거주 중국동포의 대량 인구 이주는 중국동포 공동체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다. 절대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중국동포의 민족공동체 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전통적 민족문화가 유실되어 가고 있다. 오히려 중국 거주지역의 중국동포들이 중국화를 통한 민족 동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중국동포 사회의 민족공동체성의 위기가 중국동포 사회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동포 사회의 해체 과정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중국동포 사회 일부에서는 민족 허무주의 확산이다. 두 번째는 극단적인 민족주의 현상이다.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은 모두 중국에서 살아가는 중국동포들의 그동안의 이중정체성이 중국에 거주하려는 자들과 이주하려는 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정체성 정립을 향한 혼란기라고 보여 진다. 일부에서는 중국동포 사회의 해체를 막기 위하여 중국동포 농촌집거지역의 재구성도 제기 하기도 한다.

2) 국내의 중국동포 현황

(1) 중국동포 일반 체류 현황

중국민항기 사건 이후 1986년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중국 중국동포들의 국내 친족 방문 목적으로 입국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서울역 등지에 한약재 상을 하면서 생활을 하였다. 1987년 이후에는 200만호 주택 건설 호황으로 중국동포들이 건설현장에 투입되면서 노동자로 자리 잡아 나갔다. 그러던 1992년 한중수교로 중국동포들의 국내 입국의 기회가 확장되었다. 동북 3성에서의 중국동포들에게는 한국이 이들의 희망이자 부자가 되는 기회로 여겨졌다. 특히 재외동포법시행('99년), 방문 취업제 시행('07년)으로 국내 체류하는 동포의 수 지속 증가 하면서 전체 체류외국인의 34.3%가 중국동포로 구성되고 있다. 2007년 26만 33321명이던 중국동포는 2008년 37만 8345명 무려 44% 급성장하게 되었다.

① 체류자의 수

중국동포 체류자수

구 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율
			16-60세	전체	
총 계	1,158,866	958,377	184,074	200,489	17.3%
중 국	556,517	463,307	82,110	93,210	16.7%
중국동포 계	376,563	349,356	20,524	27,207	7.2%

<출처: 법무부, 2008.12>

② 거주분포

한국 이주 중국동포의 거주 분포

거주지역	거주인구
구로	2만 5889명
영등포	3만 5338명
안산	1만 9947명
금천	1만 6585명
수원	1만 5649명
성남	1만 2297명
관악	1만 934명

(2) 중국동포 영주 귀국자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중국동포의 국적 회복 및 국제결혼을 통한 국적 취득자가 늘어나고 있다. 중국동포는 한국 외국인 주민 중 국적 미취득자의 42%, 국적취득자의 59%를 차지한다. 이중 남성이 68.9%를 차지하고 여성은 9만 9336명으로 44.6%를 차지한다.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중국동포는 3만 2457명으로 국제결혼자의 31.6%이다. 외국국적을 지닌 결혼이민자가 '02년 34,710명에서 '07년 110,362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향후 혼인귀화 신청자수의 지속 증가 예상된다. 결혼 이외의 귀화 중국동포는 3만 8455명으로 국제결혼 귀화자의 58.7%에 이른다. 2007년 국적신청자(귀화+국적회복자)는 23,485명으로, 2002년의 5,161명에 비해 약 4.5배 증가하였다.

(3) 중국동포의 법적 권리 및 지위 역사

① 1999년 9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정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가 단순노무 및 사행행위를 제외한 분야에서 자유로운 취업 가능해졌다. 그러나 주로 구주·미주지역의 동포들이 부여받았다. 이는 법제정 당시 1948년 정부수립 이전 출국한 중국과 구소련 지역 동포들은 재외동포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② 2001년 헌법재판소에서 재외동포에 관한 헌법불일치 판정

이 판정을 계기로 중국동포와 구 소련계 동포들이 재외동포로 인정받게 되었다.

③ 2002년 12월 "취업관리제" 시행

중국, 구소련 동포의 입국문호 확대 및 취업(20개 업종으로 제한) 허용하였다. 그러나 25세 이상의 국내 친족·호적이 있는 동포(연고동포)에 한정하고, 무연고 동포는 배제되었다. 취업관리제는 고용허가제 시행('04.8월)으로, 고용허가제의 특례로 운영되게 되었고, 고용허가제 특례의 경우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만 취업 가능하게 되었다. 국내 친족·호적이 있는 동포(연고동포)가 방문동거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후 비전문취업자격으로 자격변경을 해야 하는 등 절차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④ 2003년 7월1일 한중 양해각서 폐지

한국·중국 어느 일방국가에서 혼인등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후, 중국인과 국제결혼이 급격히 더욱 빠르게 증가

⑤ 2004년 재외동포 개정안 국회통과

국내 연고 중국 동포 입국 시 외국인 등록증 받고 조건부 이동의 자유 허가되었다. 그러나 국내 체류 중국동포는 여전히 불법체류자 혹은 강제 추방 대상자로 남게 되었다. 결국 2006년 중국동포의 중국 출국 후 재입국 조치조건의 사면조치로 불법체류 해소 되었다.

⑥ 2005년 6월, 1992년 한중 수교 이전 입국 중국동포 한국국적 취득 허용

⑦ 2007년 3월 중국동포 방문 취업제(H-2) 실시

방문 취업제의 의의는 그동안 무연고 동포 등 재외동포 소외현상 극복하고 동포 포용정책으로서 불법체류자 사면과 국내 무연고 중국 동포 입국 기회 허용조치였다. 국내 연고동포(쿼터설정X) 및 무연고동포(쿼터설정)에 대해서도 취업기회 확대(가정용품 도매업 등 34개 업종 취업 허용)한 것이다. 5년 유효한 복수사증인 방문취업자격(H-2)신설하여 입국 후 자유로운 구직활동 가능하게 되었다. 단,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지역 거주 동포, 1회 입국 시 최장 3년 간 체류 및 취업을 허용하는 특례고용허가제 였다. 취업 위해서는 3일간 20시간 의무교육이수를 받아야 한다.

(4) 방문취업제의 비판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① 방문취업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무작정 입국하려고할 경우 송출과정에서 부조리나 사기사건 발생 소지 많다. 안정된 취업을 보장받도록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무작정 입국한 무연고동포들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② 중국동포들이 국내 입국 당시부터 철저히 단순 노동에 종사하도록 편재 되고 있다는 것이다.
③ 중국동포들이 비자유형에 따라 국내 입국부터 철저히 통제, 서열화 되고 있다.
- H-2-A 친척방문 재입국(F-1-4 비자변경)
- H-2-B 친척방문
- H-2-D 재입국자
- H-2-E 연수생 정상 귀국 후 재입국자
- H-2-F 무연고 동포
④ 방문취업제 중국동포 대부분이 업종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서비스업(식당)과 건설업에 종사함에 따라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 및 경쟁 관계에 놓인다.

2. 탈북 이주민의 이해

1) 탈북 이주민의 실태와 현황

(1) 탈북 이주민의 실태

한국에 들어온 탈북 이주민 숫자가 곧 1만 명에 이른다. 북한에서 나와 중국, 몽골, 베트남, 태국 등지에 머물며 정착하거나, 한국 등으로 갈 기회를 찾고 있는 재외 탈북 이주민도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 이주민은 입국한 뒤 3개월 과정의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곧바로 한국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새로운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탈북 이주민들이 중국동포와 마찬가지로 남한 사회에서 장밋빛 꿈을 꾸지만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낯선 문화와 일자리 문제이다.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단지 소득의 원천이 없다는 것 이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경제·사회·문화적 수단으로부터 배제된 상태(social exclusion)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들이 취업과 사회적 서비스의 혜택으로부터 장기적으로 소외될 경우 사회통합에도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탈북 이주민 300명에 대한 최근의 한 조사에 의하면 실업자가 61.4%, 월 소득 100만원 이하가 65.7%, 제3국으로의 이민을 원하는 자가 66.4%, 기회가 되면 미국 망명을 원하는 자가 70.5%, 만약 처벌이 없다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자도 54.6%이다.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차별이다(47.5%). 한 탈북 이주민의 증언이다.

"한국 사회에서 탈북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다. 겉으로는 잘 대해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업신여긴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나 중국동포를 고용하면서도 탈북 이주민을 고용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알바에서도 잘 고용하려 하지 않는다. 탈북 이주민이라는 것을 알면 한국 사람들의 태도가 바뀐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북한에 대한 무지나 몰이해이다. 북한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북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사회는 북한에 대해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북한이탈주민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4-5년 동안 인내를 갖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 적응 기간 동안 북한이탈주민들이 철없는 행동을 하거나 이해 못할, 예측불허의 행동을 하더라도 인내로 기다려줘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본 자신들의 문제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인내력이 부족하고, 체력의 한계로 직장생활에서 한국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하기 어렵고, (자긍심이 지나쳐) 자격지심을 갖기도 한다."

남한 거주 7년 이상 된 북한이탈주민들의 70.35%가 남한 언어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다. 취업자 중 정규직의 비율은 16.7%에 불과하다. 강서구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역시 남한 사람들의 부정적 선입관이었다(58.5%). 남한 주민 가운데에는 북한 출신과 결혼할 의사가 23.9%에 불과하지만, 북한 출신은 남한 사람과 결혼할 의사가 40.7%에 달한다.

(2) 탈북 이주민 현황

① 년도 별 현황

1990년대 중반 북한의 대홍수와 가뭄으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이후부터 늘기 시작하였다. 탈북 이주민 숫자는 1995-1998년 사이에는 40명-70명 사이를 유지하다가, 1999년에 100명 선을 넘기 시작하더니 불과 3년 뒤인 2002년부터 연간 1천명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4년에는 1,894명이, 2006년에는 2천명(2,019명)을 넘었다. 이제 연간 2천명 탈북자 입국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남녀 비율의 경우 2003년에는 여성 비율이 전체의 63.4 %였으나 2004년에는 70%, 2005년에는 69.5%, 2006년 상반기에는 72.8%로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탈북 현황(1989-2007.5)

구분	~'89	~'93	~'98	~'01	'02	'03	'04	'05	'06	'07.5	합계
남	564	32	235	564	514	468	625	422	510	221	4,155
여	43	2	71	479	625	813	1,269	961	1,509	778	6,550
합계	607	34	306	1,043	1,139	1,281	1,894	1,383	2,019	999	10,705
여성비율	7%	6%	23%	46%	55%	63%	67%	69%	75%	78%	61%

② 연령별 현황

성인들의 경우 20-30대가 압도적이며, 20세 이하 청소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성인들의 일자리 문제와 아동 청소년들의 교육문제가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탈북 이주민 연령별 현황(2007.5)

구분	10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계
2004까지	260	844	1.842	2.024	750	304	280	6.304
2005	40	184	374	475	187	53	70	1.383
2006	84	259	527	688	258	73	130	2.019
2007.5	35	121	266	363	141	29	44	999
누계	419	1.408	3.009	3.550	1.336	459	524	10.705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③ 거주 지역별 현황

지역별 거주현황을 보면 서울과 경기지역에 전체의 602%인 5,971명으로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기타 인천(887명), 부산(523명), 제주(48명) 등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다.

지역별 거주현황(2007.5) (단위 : 명)

지 역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부산	강원
인 원	3,701 (37%)	2,270 (23%)	887 (9%)	321	219	352	134	523	199
지 역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계	
인 원	240	291	249	252	147	156	48	9,987명	

④ 탈북동기 : 생활고

2000년 이후 탈북 이주민은 탈북 동기로서 식량난 등 생활고를 지적한 이들이 가장 많다. 중국동포와 국내 일반 외국인 이주민들과 마찬가지로 탈북 이주민도 이주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문제이다.

탈북 동기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생활고	처벌 우려	체제 불만	가족 동반	중국 정착	가정 불화	기타	계
'01	293	73	33	171	7		6	583
'02	607	93	96	258	37	39	9	1,139
'03	774	80	123	194	46	53	11	1,281
'04	1,125	104	156	401	12	87	9	1,894
'05	849	81	96	308	7	36	6	1,383
'06.6	543	39	19	208	4	24	17	854

2) 탈북 이주민의 정착문제

(1) 학교적응과 교육문제

2004년 한국교육개발원조사 결과 학교가기 싫은 이유는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 때 29.6%, 친구들이 무시하거나 놀릴 때 26.8%, 어울릴 친구들이 없을 때 26.4%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 학령기 청소년의 24%가 무학력자이며, 중학교 졸업자가 8%이다. 이러한 기본적 학력결핍은 탈북 이주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와 학교에 적응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된다. 또한 탈북 이주 청소년들은 보통 북한을 떠나 제 3국을 거쳐 남한에 들어오면서 2~3살 어린 친구들과 공부를 하게 되며, 학제와 교육내용의 차이 때문에 학습능력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집단따돌림과 언어적 문제로 인하여 일반 학교에서 부적응을 보이게 되고, 결국 검정고시나 대안학교를 찾는 탈북 이주 청소년들이 늘어간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탈북 이주 청소년의 학력 현황

학력	인원	비율(%)
무학	99	24.0
소학교 중퇴	81	19.6
소학교 졸업	12	2.9
중학교 중퇴	186	45.0
중학교 졸업	33	8.0
대학교 중퇴	2	0.5
계	413	100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4.

(2) 문화 차이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 문제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이러한 영향은 탈북 이주민에게도 이어져 남한사회 적응에 많은 혼란을 겪는다. 청소년의 경우 언어문제 등으로 선생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자신의 말에 친구들이 웃거나 놀리는 것이 더해져 이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부적응의 문제로 이어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면서 낮은 자아 존중감 형성 등의 여러 심리적 문제를 보이게 된다.

(3) 경제적 문제

탈북 이주민들의 북한에서의 직업은 대다수가 무직(부양포함)이거나 노동자가 많았다. 가장 많은 탈북자가 입국한 2004년의 경우 무직자와 노동자 출신이 전체 1,894명 가운데 1,761명으로 93%를 차지했다.

통일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1997~2004년 입국자중 1,336명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탈북 이주민들의 한국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고독감, 건강, 일자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세대는 수급대상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이다(2006).

탈북 이주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구분		2006.7월		
		대상	비대상	계
계	인원	5,454명	2,106명	7,560명
	비율	72%	28%	

취업형태를 보면 2005년 기준으로 정규직은 114명으로 24.5%에 머물렀다. 나머지는 모두 비정규직(27.9%) 또는 일용근로자(222명, 47.6%)로서 전체의 75.5%를 차지했다. 최근의 세계의 경제적 위기는 이들 탈북 이주민들의 실업도 증가시켜 나갈 것이다. 탈북 이주민의 취업과 경제적 빈곤은 이주노동자나 중국동포와 같이 이들을 한국의 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탈북 이주민 비정규직 취업 비율

조사년도	주관 단체	조사 대상 (경제활동인구)	취업률	취업자중 정규직	취업자중 비정규직
2001	연세대 통일연구원	'90이후 입국자	63.5%	61.7%	38.3%
2002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96~'00 입국자 (286명)	79%	69%	31%
2003	연세대 통일연구원	'01 입국자 (411명)	63.5%	67.4%	32.6%
2005	북한인권정보센터	'97~'04년 입국자 (663명)	70.3	24.5%	75.5%

3) 교육적 차원에서의 탈북 이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지원

(1) 교육지원

국가 차원의 교육지원으로 크게 하나원 내의 하나둘학교와 한겨레학교, 무지개청소년센터를 들 수 있다. 먼저 하나둘학교는 탈북 이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이 하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청소년만 단독입국하거나 무의탁 소년소녀가장 입국이 증가함에 따라 특성화 프로그램이 요구되면서 하나원 내에 하나둘학교를 두어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청소년들만의 별도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12주, 420시간이며, 크게 심리안정 및 정서순화, 기초학습 및 사회생활 이해, 남한사회 적응능력 배양, 정착지원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한겨레학교는 2006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중고등학교 통합형 대안교육특성화학교로 기존의 공부방 형태의 대안교육 기관과는 달리 정식 학교로 출범하여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되는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무지개청소년센터는 탈북 이주민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2006년 개소하여 탈북 이주민청소년 현황조사, 학력과 정서발달 수준을 판단해 하나원, 한겨레학교 등 기존 민간 교육기관 등과 함께 체계적인 통합 교육프로그램 실시한다.

(3) 다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 이주민의 지원정책

① 경제적 문제

탈북 이주민도 다문화사회의 또 다른 축이다. 탈북이주민 역시 대부분 경제적 이유를 목적으로 자신이 오래 동안 남한 사회와 단절된 또 다른 문화권에 살다가 남한 사회를 찾아온 이주민이다. 탈북이주민들은 남한 사회에서 문화적 갈등을 겪으며, 일자리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북 이주민들은 남한 사회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가운데 기대와 현실 사이에 괴리를 느끼며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형성한다. 북한과 비교해서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생산성이 높은 것은 인정하지만 약자 층에게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비인간적 사회로 인식한다.

② 문화적응과 사회적 관계

한국 언어를 불편 없이 사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3년이라고 한다. 사고방식에 있어서도 유교적 태도나 직선적, 경직된 사고방식, 집단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에 남한 사회에 적응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탈북 이주민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에서 접근을 할 경우 탈북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문화적, 가치관에서의 다양성을 수용해 내지 못한다. 또 남한 사회에 연고가 없는 이들은 정보와 기회에 연결될 수 있는 사회연결망 부재의 문제를 안고 있다.

③ 청소년 교육의 문제
청소년들의 경우 언어문제, 문화적 차이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단위의 입국이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가 크게 대두하고 있다. 제3국이나 중국에 장기거주하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남북 사이의 교육과목이나 과정의 차이로 인한 혼란도 있지만 무엇보다 남한 학생들로부터의 집단 따돌림을 견디지 못한다.

④ 소수자로서 탈북 이주민 인식
소수자란 "성, 연령, 인종 및 민족, 종교, 사상, 경제력, 성적 취향, 출신 지역 등을 근거로 사회 내 지배적 기준과 가치와 상이한 입장에 있어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탈북 이주민을 소수자라고 보는 것은 탈북 이주민이 출신지에 의해, 언어에 의해 식별되고, 숫자도 적을 뿐 아니라 북한의 학력이나 경력도 거의 인정받지 못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력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이다. 탈북 이주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남한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취업이나 심지어는 알바에서도 차별대우를 받는 집단이다.

탈북 이주민은 한국말을 하고 얼굴이 같은 민족 형이라지만 문화가 다른 곳에서 온 이주민이다. 결국 탈북 이주민들은 학력이 낮고 저소득층인 사람들로 전락 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다. 탈북 이주민들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다문화적 관점에서의 새롭게 탈북 이주민의 문제를 접근해 나가야 한다. 다양성의 문제에서 접근 할 때 탈북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문제를 최소화해 나갈 수 있다.

3. 난민의 이해

1) 난민의 일반적 이해

(1) 난민(refugee)의 개념
① 협의(법적의미) : 난민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의 난민개념
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 이유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상주국) 밖으로 피난한 사람들이다. 즉, 박해로 인하여 국민으로서의 법적 권리보호를 상실한 사람들

② 광의(사회적 의미)
재난으로 자신의 사회적 토대를 잃고 비자발적으로 낯선 곳으로 이주한 사람들.

③ 난민 보호의 목적
난민보호조치의 핵심은 국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학립하는 것이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2) 세계 난민의 실태

① 난민규모

세계의 난민은 2006년 현재 전체 32,861,300명으로서 2005년의 21,020,500명에 비하여 56.3%가 증가하였다. UNHCR 보호대상자로서 난민은 대상유형별로 난민 9,877,700명, 난민 신청자 740,200명, 국내피난민 12,794,300명 무국적자 5,805,900명 난민귀환자 733,600명 국내피난민귀환자 1,864,200명이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14,910,900명, 아프리카 9,752,600명, 유럽 3,426,700명, 중남미 3,542,500명, 북아메리카 1,143,100명, 오세아니아 85,700명이다.

② 주요 난민발생국

콜롬비아(3,561,757) 이라크(3,518,544) 아프가니스탄(2,749,915) 수단(2,124,523) 콩고민주공화국(2,040,167) 소말리아(889,898) 아제르바이잔(815,668) 레바논(765,492) 코트디부아르(742,081) 스리랑카(683,213) 라이베리아(511,335)

③ 주요 난민 수용국, 신청국

파키스탄(1,044,462),이란(968,370), 미국(843,498), 시리아(702,209) 독일(605,406), 요르단(500,229), 탄자니아(485,295), 영국(301,556), 중국(301,027),

(3) 난민의 지위와 보호조치

국제적인 남니 보호제도의 법 구조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1951)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1967)에 기초한다. 2003년 11월까지 145개국이 협약안과 의정서에 가입하였다.

① 난민의 보호는 일차적으로는 국가에 있다. 정부가 자국 시민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거나 보호 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은 박해, 일반화된 폭력 또는 분쟁, 중대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고향과 가족을 떠나 타국에서 안전을 찾는다. 이것은 개인적인 이동일 수 있고, 기아, 질병, 부상 등을 겪는 취약 층의 대규모 이동일 수도 있다.

② 난민은 난민지위 신청이 공정하게 신사될 때까지 강제송환 금지원칙이 적용된다. 난민신청자는 귀환되지 않을 권리 및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 난민에 대하여는 난민협약 가입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도 난민을 송환 할 수 없다. 특히 유엔난민 기구는 난민에게 국제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난민문제에 영구적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③ 국가는 진정한 난민과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 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결정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효과적인 난민 인정제도가 갖추어야 할 5가지의 기본 원칙은 신속성, 효율성,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이다. 그러나 난민지위 인정 절차는 해당국가의 법체계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④ 난민의 불법적 입국 및 체류에 대한 논쟁이 있다. 난민 신청자가 불법입국이나 체류의 상당한 이유를 제시 하는 한 불법입국이나 체류에 따른 형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난민신청자의 불법입국 문제와 구금문제는 각 국가의 어려운 정책적 선택이 된다. 난민신청자가 고의로 난민 신청 자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각국의 정부가 상대의 상당한 이유를 듣지 않고 무시 또는 입증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여 난민지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다.

⑤ 각국은 난민 신청자에 대한 임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국은 임시거처 및 기숙할 곳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난민신청자들에 대하여 성급한 귀환을 강요하지 아ㄴㅎ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⑥ 난민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은 일시적 보호 및 위기 대응에서부터 항구적 해결책으로서 현지 통합, 자발적 본국 귀환, 재정착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2) 한국의 난민 실태

현대적 의미에서 한국의 난민보호의역사는 1975년부터 18년간 부산에서 2,954명의 베트남 보트피플을 일시 보호한 것을 효시로 본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난민은 고대시대부터 이어졌다. 전쟁과 기근 등으로 이웃 나라에서 한국을 찾아오기도 하였고, 이 땅에서 이웃 나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이주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역사는 이주와 난민의 유출입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역사는 다인종 다문화의 역사가 기초를 이루고 있다.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고,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과 1994년 6월 30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난민인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난민인정제도를 도입 하였다.

(1) 연도별 난민현황

국내 난민 신청 대기 중 인자는 대략 2,000여 명에 이른다. UNHCR의 집행이사국이 된 2000년까지 단1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다가 2001년에 1명, 2002년에 1명, 2003년에 12명, 2004년에 18명의 난민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2008년 말 현재까지 총101명의 난민과 71명의 인도적 지위를 인정하게 되었다.

연도별 난민 현황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구분 / 연도	신청	허가	인도적 지위	불허
총계	2,168	101	71	413
'94-'2000	96	0	0	35
2001	37	1	0	3
2002	34	1	8	7
2003	84	12	5	2
2004	148	18	1	7
2005	410	9	13	79
2006	278	11	13	115
2007	**717**	13	9	86
2008	**364**	36	22	79

※ 철회 291, 심사대기 1,289(이의신청 1, 1차 심사중 1,288)

난민신청인 대부분은 독재정권, 종족간의 갈등, 내전, 폭력사태 등으로 그 인권상황의 심각성이 이미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는 국가들의 출신임 남자 88.6%, 여자 11.4%; 30대 54.3%, 20대 21.4%, 40대 18.6%; 대학 및 대학원 학력 61.5%이다.(2004.12 국가인권위원회)

사유별 현황

구분	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정치	가족결합	기타
신청자 수	2,168	247	266	5	181	1,027	138	304

(2) 국적별 난민현황

2004년부터 난민신청자가 한해 100명을 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한해 400명, 2007년에는 한해 700명을 넘을 정도로 급증하였으나 2008년에는 2007년의 50%로 신청자 수가 급감하였다. 2007년 난민신청 급증은 산업연수기간을 마친 네팔인들의 대규모 난민신청과 관련이 있으며, 2008년 난민신청의 급감은 불법체류자 단속강화에 대응하여 난민 신청 접수를 통제한 결과로 관측 된다.

국적별 난민 신청자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구분	신청	인정	불인정		철회	심사대기	
			인도적지위	불인정		이의신청	1차심사중
계	2,168	101	71	416	291	1	1,288
네 팔	376	0	0	34	47	0	295
중 국	322	5	7	159	51	0	100
미 얀 마	208	42	15	8	20	1	122
나이지리아	172	0	1	35	13	0	123
우 간 다	147	1	0	20	26	0	100
콩고	86	13	11	13	13	0	36
방글라데시	90	19	0	14	4	0	53
코트디부아르	74	3	5	6	9	0	51
에티오피아	59	7	13	12	6	0	21
이 란	44	3	4	19	4	0	14
기 타	590	8	15	96	98	0	373

(3) 난민의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도움을 받아 민간단체의 조사 결과(2004. 12)를 보면 다음과 같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항목	내용
심사기간	조사대상의 73.1%가 신청 후 1년 이상 기다려 난민지위를 얻었거나 기다리고 있으며 4-5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17.9%에 달함. 심사대기 기간 동안 체류자격이 분명치 않고 사회적 지원책이 전무함
의료, 주거	20%가 신체건강에 대하여 41.4%가 정신건강상태에 대하여 좋지 않다고 답변. 협약난민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난민신청인의 경우 14.5%만 직장의료보험이나 민간단체운영의 의료공제회에 가입. 주거는 41.4%가 공장 등에 딸린 기숙사나 공동숙소 이용.
직업, 노동	본국에서의 직업은 학생, 교사, 엔지니어, 회계사, 변호사 등 다양했던 반면, 한국에서는 대부분 제조업 공장노동자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함. 21.4%는 현재 무직이고 61.4%는 3번 이상 일자리를 옮기는 등 불안한 경제상황이며, 일자리를 구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한 구직의 곤란. 난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해고와 임금삭감을 경험하기도 함
일상생활의 어려움	날씨, 음식, 의복, 주거, 건강/의료,의사소통,교육,가족결합,혼인문제, 개인신변의 안전, 불안정한 지위(강제송환의 두려움),난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부족, 인종차별, 문화적 차이 등 일상생활의 문제들 가운데 난민신청인이나 협약난민 공히 난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답변하였고, 다음으로 난민신청들의 경우에는 불안정한 지위, 협약난민들은 교육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
가족결합	응답자의 21.4%가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자족이 본국이나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78.2%가 한국에서의 가족결합을 원함
정부의 사회적 지원	정부에 바라는 사회적 지원으로 난민신청인들은 법률지원과 의료를, 협약난민의 경우에는 직업훈련과 교육문제를 들었고, 양자 공히 다음은 주거지원 문제임

[국내 난민 문제의 대책]

비록 국내 난민 인정자의 수가 적고 신청 대기 중인 자가 2,000여명이다. 그러나 점차 난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난민들에 대하여 국내에서 이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여야 한다.

(1) 난민 문제의 체계적인 접근

난민문제는 국가 간 예민한 사항이 많아 정부가 이들의 수용을 꺼린다. 난민 신청자를 난민으로 받을 경우 영주 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 할 수밖에 없다. 유럽의 경우에서와 마찬 가지로 난민 개방 국으로 소문이 나면 전 세계에서 난민 대상자들이 모려 올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염려를 인정하더라도 정부는 난민 정책에 대하여 지금과 같이 난민 문제에서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부터 벗어날 필요는 있다. 보다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경제 및 기초생활 안정 측면

난민에 대하여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 중요하다. 탈북 이주민과 강은 법적 지위를 가지고 국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내에 체류하지만 탈북 이주민에 비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은 전무 하다 시피 한다. 아무것도 없이 한국에 입국한 이들에 대하여 거주문제, 경제적 지원, 취업알선, 개인 생활 안내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난민 신청자의 많은 경우가 아프리카 출신자들로서 이들의 일자리 구하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3) 자녀의 양육과 교육 측면

자녀양육과 교육의 측면은 이주가정의 아동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다. 다만 다른 점은 신분적으로 미등록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난민인정 대기 중인 자는 역시 신분상 불안 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무국적의 상태에 놓이기가 쉽다. 특히 아프리카 계열은 피부색이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하여 맞춤형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4) 난민 여성에 대한 정책적 배려

난민 여성들은 재난 및 탈출과정에서 강간 등 더욱 가혹한 상처를 입는 반면, 정착과정에서는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가장의 실직 등으로 인한 가정경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매우 많다. 결혼 이민자들과 마찬 가지로 이들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각종 보완정책이 필요하다.

(5) 정체성에 대한 다문화적 자긍심 고취

난민자로서 자기 출신 국에 대한 경멸 감등으로 자신의 기존 고유문화에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현지의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기존의 자기 문화와 새로운 곳의 주류문화 모두에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내에서 다수 중에 하나인 아프리카 계열이 더욱 문화적 고립과 한국 문화에 대한 반감을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다문화적 관점에서 자신들의 문화에 자긍심을 갖도록 지지해야 한다.

(6) 시민사회영역에서의 관심

이주민의 문제가 그렇듯 난민에 관한 문제 역시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들이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드,f에 관심이 낮은 편이다. 향후 다문화 사회에서는 난민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아 나갈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필요하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10차시]

1. 다문화 가정 아동 이해의 기초

1) 아동의 개념

아동이란 용어와 개념이 통일되게 정의되지 않고 다양하게 사용된다. 아동은 일반적으로 출생에서 만 18세까지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인지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의 인간을 말한다.

영역		아동의 유사 개념	연령 구분
발달심리학		아동기	5~12세
교육학		초등교육 대상자	6~12세
법률	민법	미성년자	20세 미만
	형법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19세 미만
	소년법	소년	20세 미만
	근로기준법	연소자	18세 미만

<아동의 유사개념과 연령 구분>

2)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

다문화 가정은 국제결혼 가정과 이주가정으로 세분화 된다. 국제결혼 가정은 국민의 배우자가 외국인 출신과 혼인하여 살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이주 가정은 국민이 아닌 자들로 이루어진 가정 혹은 국적이 다른 동포가 국내와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하다가 국내에 거주하며 살고 있는 가정이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은 국제결혼 가정 하나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① 국제결혼 국민 배우자의 출신 국에 따른 분류(출신국)
② 이주민 출신 배우자 성별에 따른 분류(남, 여)
③ 배우자의 출신 국별 결합 형태에 따른(내국인-외국인, 외국인-외국인 등)
④ 배우자의 문화 환경에 따른 분류(출신대륙, 종교, 인종 등)
⑤ 가족 형태에 따른 분류(사실혼, 한-양 부모, 사별, 이혼, 별거, 재혼 등) 등

다문화 가정의 다양한 분류에 따라 그 아동의 범주도 다양하다. 첫째, 국제결혼 가정 아동 둘째, 이주가정 아동 셋째, 동포 가정의 아동 및 탈북자 아동 넷째, 난민 가정의 아동 등이다. 특히 비자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주가정에 속하며 이들을 미등록 이주가정 아동이라 한다.

3) 다문화 가정 아동의 새로운 개념 '코시안'

다문화 가정 아동의 명칭은 초기 미군정 시절엔 혼혈아로 불렸다. 그러나 혼혈아는 순혈주의를 바탕으로 차별적 용어이었다. 이 용어를 1996년부터 '코시안'으로 널리 불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용어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반쪽 한국인이란 말이었다. 결국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나 단체들 역시 다문화 가정 아동을 국적자 중심의 법리적 사고만 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논조에 인권단체도 동조한 것이다. 대표적인 규정이 "누가 더 한국인인가?, 다문화 가정 아동은 한국인입니다."이다. 다문화 가정 아동의 문화적 정체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국가주의적 편견 이었다. 이러한 편견의 발전이 다문화 가족지원법에서 국제결혼 가정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제외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코시안이란 용어는 지금까지도 온누리안, 다문화 가정 아동, 결혼 이민자 2세, 이주가정 아동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문화적 권리와 평등성을 담지 하는 대체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용주가 근로자로 사용하지만 근로를 지공하는 사람은 노동자를 자기 정체성을 표현 하듯, 다문화 사회에서의 그 자녀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평등성에 대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코시안(Kosian)이란 명칭은 Korean과 Asian을 합친 말이다. 코시안(Kosian)은 단순한 단어의 결합 (Korean+Asian)을 넘어 '평등 됨(=)'과 '하나 됨(+)'의 철학과 인권의 사회적 실천(praxis)의 뜻을 가지고 있다. 즉, 국내에서 오랫동안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코시안은 다문화 가족을 우리의 가까운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양성과 존엄성을 인정되는 사회 형성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다. 코시안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단순히 국적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도 한국인이다.'를 넘어선다. 문화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 의미가 있다.

코시안(Kosian) 용어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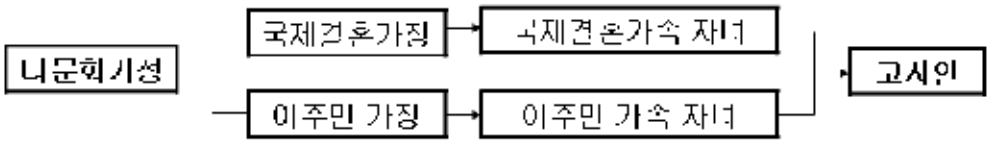

4) 미등록 이주가정 아동의 발생 경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가정 아동의 발생유형 경로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이주노동자인 부모의 입국을 통해 출생한 아동이나 이주노동자의 본국태생 아동이 다양한 방법으로 입국하는 경우, 둘째, 밀입국 이주민 부모 혹은 이주가정 아동, 셋째, 유학 등으로 입국하게 되는 아동, 넷째, 결혼이민자가정의 본국태생아동(자녀 및 미성년 친인척 등), 다섯째, 난민의 아동 등이다.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미등록 상태의 국내출생 미등록 아동, 불법입국을 통한 미등록 이주가정 아동, 비자기일만료에 따른 불법체류인 미등록 이주가정 아동, 무국적 아동(난민아동) 등의 이주가정 아동이 발생하게 된다.

미등록 이주가정 아동 발생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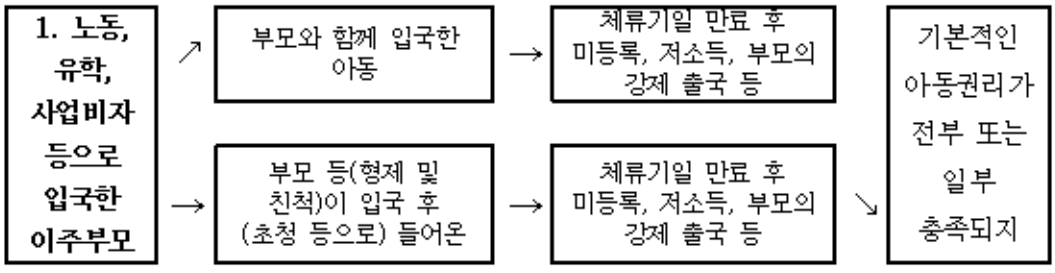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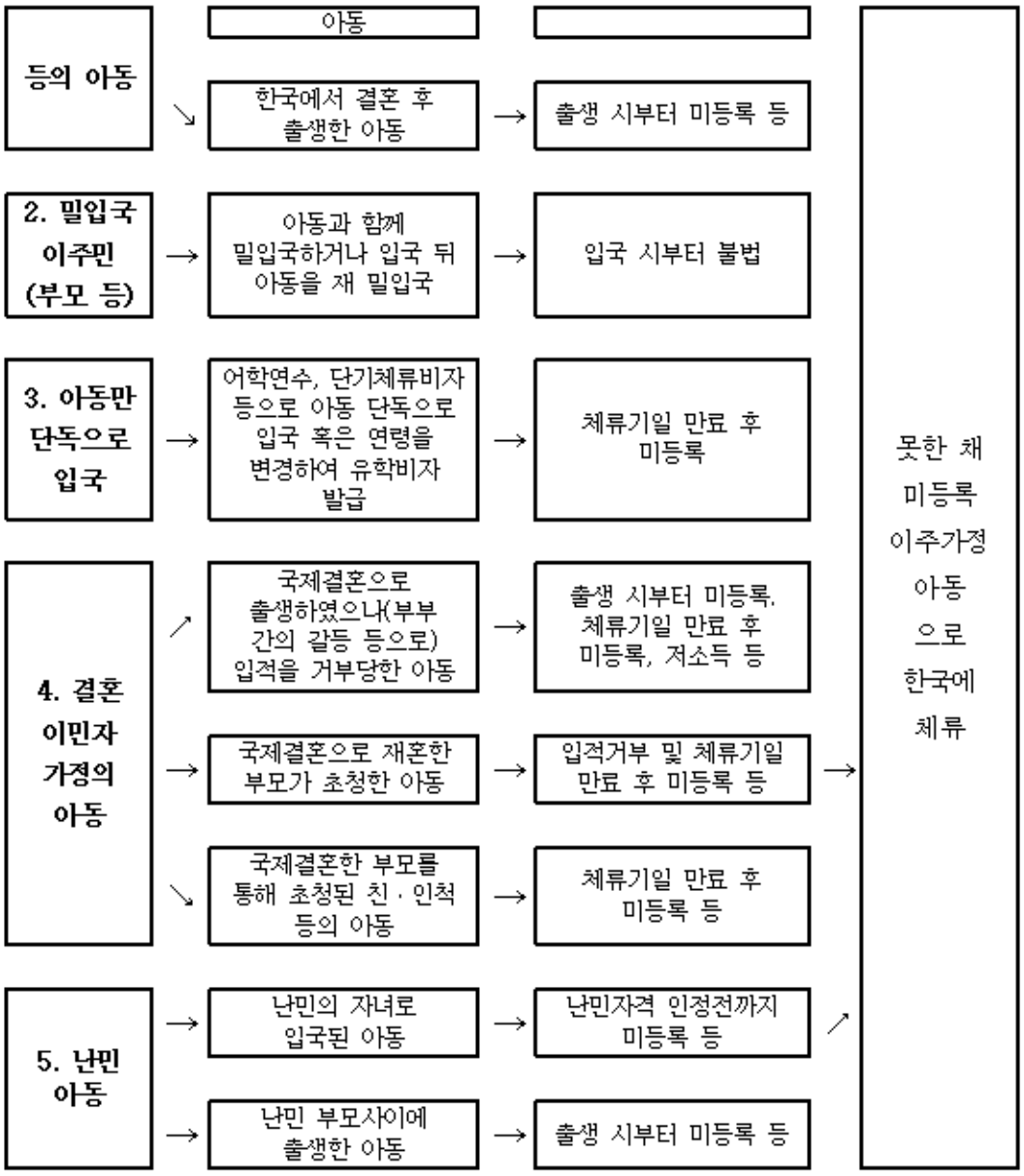

출처: 중앙대 사회과학연구소. 미등록이주가정 아동의 권리에 대한 실태조사. 2008.

5) 다문화 가정 아동 통계 현황(국제결혼 가정과 이주가정의 아동을 중심으로)

(1) 국제결혼 가정 아동

행정안전부가 2008년 발표한 국제결혼 가정 및 아동의 지역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39,395(27.3%)로 가장 많았고, 서울 25.3%, 인천 5.7%, 경남 5.5%, 부산 5.1% 순으로 국제결혼가정자녀의 수가 많게 나타났다.

가.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연령별 현황

국제결혼 가정 아동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국적 / 연령	계	동북아	동남아	남부아 (네팔 등)	중앙아 (우즈베키스탄 등)	미국	러시아	기타
만6세이하	33,140	17,706 (53.4%)	12,865 (38.8%)	281 (0.9%)	538 (1.6%)	865 (2.6%)	171 (0.5%)	714 (2.2%)
만7세~만12세	18,691	14,085 (75.4%)	2,937 (15.7%)	130 (0.7%)	121 (0.6%)	829 (4.4%)	88 (0.5%)	501 (2.7%)
만13~만15세	3,672	2,751 (74.9%)	316 (8.6%)	30 (0.8%)	28 (0.8%)	391 (10.6%)	24 (0.7%)	132 (3.6%)
만18세이하	2,504	1,857 (74.2%)	201 (8%)	14 (0.6%)	26 (1%)	306 (12.2%)	21 (0.8%)	79 (3.2%)

출처: 2008. 5. 행정안전부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지역별 현황

구분	계		국적 미취득자 국제결혼이주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혼인귀화자		국제결혼가정 아동	
합계	144,385	100.0%	102,713	11.5%	41,672	4.7%	58,007	6.5%
서울	36,532	25.3%	24,048	2.7%	12,484	1.4%	7,500	0.8%
부산	7,287	5.1%	5,431	0.6%	1,856	0.2%	3,057	0.3%
대구	4,436	3.1%	3,424	0.4%	1,012	0.1%	2,254	0.3%
인천	8,291	5.7%	6,068	0.7%	2,223	0.2%	3,054	0.3%
광주	2,807	1.9%	2,094	0.2%	713	0.1%	1,608	0.2%
대전	3,032	2.1%	2,196	0.2%	836	0.1%	985	0.1%
울산	2,431	1.7%	1,797	0.2%	634	0.1%	1,068	0.1%
경기	39,395	27.3%	27,770	3.1%	11,625	1.3%	11,131	1.2%
강원	3,636	2.5%	2,665	0.3%	971	0.1%	2,590	0.3%
충북	4,160	2.9%	3,015	0.3%	1,145	0.1%	2,584	0.3%
충남	5,874	4.1%	4,284	0.5%	1,590	0.2%	3,421	0.4%
전북	4,947	3.4%	3,565	0.4%	1,382	0.2%	4,283	0.5%
전남	5,919	4.1%	4,501	0.5%	1,418	0.2%	4,902	0.5%
경북	6,503	4.5%	4,894	0.5%	1,609	0.2%	4,235	0.5%
경남	7,934	5.5%	6,057	0.7%	1,877	0.2%	4,601	0.5%
25제주	1,201	0.8%	904	0.1%	297	0.03%	734	0.1%

출처: 2008. 5, 행정안전부

(2) 이주가정 아동 수의 추계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이주가정 아동 수의 추계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08.6)		법무부 (2008.3)	교육과학 기술부 (2007.9)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08.8)	교육과학기술부 (2008.4)
총 이주가정 아동 (20세 이하)	총 미등록 이주가정 아동 (20세 이하)	취학대상 이주가정 아동 (연령미표기)	외국인학교 재학생 (한국국적 미소지자 중·초·중·고 재학생)	취학대상 미등록 이주가정 아동 (7세~18세)	취학 이주가정 아동 (초·중·고 재학생)
69,987명	**8,259명**	**27,844명**	**7,618명**	**2,053명**	**1,402명**

(3) 이주가정 자녀 재학 증감 현황

이주가정 자녀 재학 증감 현황

연도	초		중		고		계	
	인원(명)	증감(%)	인원(명)	증감(%)	인원(명)	증감(%)	인원(명)	증감(%)
2003	570(131)	-	191(6)	-	76(2)	-	**837(139)**	-
2004	615(84)	7.9	207(26)	8.4	99(5)	30.0	**921(115)**	10.0
2005	995(99)	61.8	352(43)	70.0	227(6)	129.3	**1,574(148)**	41.5
2006	1,115	12.1	215	-38.9	61	-73.1	**1,391**	-11.6
2007	755	-32.3	391	81.9	63	3.3	**1,209**	-13.1
2008	981	29.9	314	-19.7	107	69.8	**1,402**	**16.0**

2. 다문화 가정 아동의 실태

1) 다문화 국제결혼 가정 아동 양육의 문제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 아동을 양육하는 있어 경험하는 갈등과 어려움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사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은 가명으로 한다.)

➔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양육의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동영상 강의로 짧게(3~4분 내외) 구성하면 좋겠습니다. 아래 사례는 동영상 강의 끝나고 별도로 구성해 주세요.

① 사회적 환경에 의한 차별 피해 의식

(사례1) 조선족 결혼이민자 가족

정숙(가명)씨는 조선족 여성으로 초등학교 1학년 딸과 5세 된 딸, 두 아이의 엄마다. 정숙씨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현재 사는 연립주택에는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 정숙씨는 동네 주민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주민들이 자신을 보면 중국에서 온 여자라고 깔보고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있다고 생각한다. 큰딸이 동네아이들과 놀다가 싸움이 일어나면 그 원인을 자신의 딸이 중국에서 온 엄마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숙씨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아이교육을 한국에서 시키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중국에서 아이를 교육시키면 누가 자신의 가족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포기했다. 정숙씨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누가 뭐라 해도 지지 말라.'고 일상적으로 말한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본인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인식은 결혼이 순수하지 못한 거래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혼하는 여성·남성 모두를 경제적 빈곤, 낮은 교육 정도, 장애(신체·심리)인, 기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정적인 인식은 또한 이들 결혼이민자 가족을 하층민으로 취급하여 항시 문제 집단으로 보려는 경향을 갖는다. 이러한 경향은 자녀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준다. 일반적인 문제까지도 자신이 차별받는다는 의식을 갖게 하여 스스로를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시켜 낼 수도 있다.
사회적인 낙인이 한 집단, 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연결되어질 수 있다. 결혼이민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자의 자녀 기르기는 위와 같은 어려움 외에도 빈곤가정과 가족의 해체로 오는 문제도 있다. 빈곤가정의 아동들은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으며, 교육환경도 빈곤하여 아동들의 전인적인 성장이 저해되어질 수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이혼이 늘어나고, 별거와 사별이 발생하면서 한 부모나 조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아동도 있다. 이러한 아동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고민되어져야 할 것이다.

② 외모로 인한 차별 걱정

(사례2) 방글라데시 가족

자하드(가명)씨는 방글라데시 남성이다. 자하드씨는 한국인여성과 결혼한 지 7년이 넘었으며, 아들(6세)과 딸(4세)을 각각 두고 있다. 000씨는 산업연수생으로 1994년 입국하여 12년 넘게 한국에서 살고 있다. 자하드씨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신분이었을 때 현재의 부인을 만났고, 처가의 거센 반대로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첫아이를 낳고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혼인신고 후 방글라데시를 다녀와 결혼비자를 발급 받았으며, 최근 들어 국적을 취득했다. 자하드씨는 국적취득 후 대리로 승진하였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 요즘 자하드씨는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는 아직 어려서 괜찮지만 학교에 입학하면 외모가 다른 아이들과 달라 차별 받을 것이라고 걱정한다. 또한 학교를 졸업해도 자기와 같은 이주노동자취급을 받아 좋은 직장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한국도 방글라데시도 아니 다른 나라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국제결혼 가족은 자녀들이 한국사회에서 차별 받을 것이라는 걱정을 한다. 피부색과 종교, 인종, 출신국, 문화에 따라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녀들 역시 차별의 문제가 발생되어질 것이라 본다. 이는 우리 사회가 1960년대 이후 기지촌 중심으로 혼혈아동이 태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당시 국제결혼 가정 아동은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부모로부터의 양육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양육을 거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교육, 취업, 결혼,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부모의 지위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대가 되어버린 지금,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의 미래에 까지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출산율이 최근 들어 1.05%까지 떨어진 시점에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일은 없어야 한다.

③ 가사와 양육의 어려움

(사례3) 우즈베키스탄 결혼이민자 가족

준수(가명)엄마는 농촌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 준수엄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꿈많고 활발한 여성으로 지금의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꿨다. 그러나 직장문제로 남편은 준수엄마를 신혼 초부터 시댁에 놓고 자신은 남동생과 같이 살며 가끔 아내와 아이를 보러 온다. 준수엄마는 결혼 2년 만에 시댁을 뛰쳐나와 이주여성쉼터를 찾았다. 준수엄마는 이른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가사일과 농사일을 도맡아야 했고, 아이도 혼자서 키워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으며, 경제권도 없어 필요에 따라 조금씩 시부모가 주는 용돈에 의존해 사는 것도 문제였다. 또한 남편의 무관심도 큰 상처가 되었다.

준수엄마는 결혼초기부터 신혼기간이나 적응기간도 갖지 못한 채 가사와 양육, 시부모 봉양에 농사일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벅찼다. 본인은 한국어도 배우고, 친구도 만나면서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한다. 가사와 양육의 전담자는 여성이 아니라 부부 또는 가족 모두가 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가사와 양육을 여성의 몫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에게는 부담스럽다. 결혼은 했으나 한국인 배우자의 문화를 배울 기회조차 갖지 못하여 전전긍긍하는 이들에게 요구하는 과제는 비록 일상적일지라도 벅차다. 또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부부관계, 가족관계는 가사와 양육이 여성의 전담이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못 할 수도 있다.

④ 소통과 이중 언어 문제

(사례4) 태국 결혼이민자 가족

희수(가명)엄마는 태국사람이다. 한국인 남편과는 종교단체를 통해서 결혼했고, 현재 3세된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희수엄마는 현재는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나 한국에 오기 전에 는 태국에서 간호사였다. 희수엄마는 한국에 와서 혼자 한국어 공부를 하였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하기도 하고, 태국에서 올 때 가져온 교재를 보면서 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태국인 친구의 소개로 민간단체의 한국어교실을 알게 되었고, 일주일에 2차례씩 한국어를 배웠다. 당시 아이는 돌 이전이어서 데리고 다니면서 공부하였다. 희수엄마의 남편은 공장에서 단순직으로 일하는데 수입이 적고, 이들의 가정도 경제적으로 빈곤하다. 그래서 희수엄마는 한국어를 3개월도 배우지 못한 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공장에 다녔다. 아침 7시30분이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고, 저녁 9시가 다 되어야 다시 아이를 찾는다.

요즘 희수엄마는 한창 말을 배우는 아이 때문에 걱정이다. 아이가 엄마의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도 아이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혹시나 아이의 언어가 늦게 발달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다. 희수엄마의 자녀는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게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연령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으나 부모의 염려는 끝이 없다.

희수엄마의 고민은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이다. 의사소통의 방법이 한국어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 한국어를 잘 할 수 없는 결혼이민자 배우자는 답답하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지만 단순한 이야기 이외 속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언어를 배우는 시기의 유아들에게 자신의 부정확한 발음이 주는 영향으로 인해 결혼이민자 부모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자녀 양육시 한국어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사회는 조기 영어교육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조기 유학이 증가하고 있다. 조기 유학은 영어권뿐만 아니라 중국어연수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한다. 결혼이민자 가족은 다문화가족으로써의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잘 살려내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한다.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부모, 두 문화의 풍부한 경험들, 폭넓은 가족관계 등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주어야 한다.

양육에 대한 의견은 사회, 문화, 민족, 종교, 개인 간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있고, 다양할 것이다. 결혼이민자 부부의 경우도 자신의 출생 환경에 따른 양육에 대한 방식이 있을 것이다. 자녀양육은 무엇보다도 우선 부모가 올바른 가치관속에서 자신감과 일관성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배우자의 양육방식을 서로 존중하여 자녀에게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2) 다문화 이주가정 아동의 양육에 따른 문제

(1) 임신과 출산

이주가정 아동의 삶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불안정하다. 이주여성은 임신 기간 동안 산부인과 진료는 합법적인 체류자의 경우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미등록 이주가정의 경우에는 무보험 처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임신 기간 동안 태아의 건강을 위한 정기적인 검진이나 검사를 받기에는 부담이 많아 이주여성들이 출산까지 여성과 태아의 안전을 보호받기가 어렵다. 또한 이주여성노동자는 한국 내 상황에서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낙태를 선택하기도 한다.

이주가정 아동이 무사히 태어나도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대상자가 아닌 이주가정 아동들은 의료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엄청난 비용으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기도 한다.

(사례5) 미숙아

베트남 임산부 레티(가명)가 얼마 전 시흥시 시화공단 근처 개인 산부인과에서 쌍둥이를 출산하였다. 레티부부는 모두 국내 체류 5년 이상자로써 미등록 이주노동자이다. 쌍둥이 중 한명은 미성숙아로써 체중이 2kg 미만이어서 인큐베이터가 있는 인근 2차 진료기관으로 응급 이동 되었고, 또 다른 아이는 레티와 함께 퇴원하였다. 쌍둥이는 제왕절개를 하여 출생하였고, 미성숙아인 아기는 한 달이 넘게 병원에 입원하였다. 두 아이의 병원비는 500만원이 넘어 레티부부에게는 감당하기 벅찼다. 이들은 당시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50% 이상을 지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원 받을 수 있었으나 미성숙아로 태어난 아기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퇴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병원에 다녀야했다. 또한 아기를 혼자서 돌보아야 했던 산모는 간이 나쁘고, 신장병이 있어 출산 후 6개월 동안 두 번이나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 결국 이들 부부는 아기가 백일이 되었을 무렵에 베트남에 있는 외가로 보내졌다.

(사례6) 장애아

엠마(가명) 부부는 난민신청자로 콩고 출신이다. 한국에서 2005년에 부부는 첫딸을 낳았다.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호흡기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기도가 일반아동보다 좁아 늘 숨쉬기가 불편하였고, 감기에라도 걸리면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 응급실에 수차례 다닐 수 밖에 없었다. 엠마부부의 딸이 백일이 넘어서 또 다시 응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 안산의 병원에서 서울의 종합대학 병원으로 응급 이송 되었다. 당시 아기는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고 있었고, 병원에서도 엠마부부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수 없었다. 그러나 다행이도 아기는 증세가 호전되어 일주일 정도의 치료에도 회복이 빨랐으나 난민가정 역시 무보험 상태에서 350 여 만 원의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벅찼다. 이들 부부는 남편이 월80 여 만 원을 벌어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이도 아기의 딱한 사정을 알고 같은 병원에 입원한 독지가가 일부 병원비를 감당하여 아기는 퇴원할 수 있었다. 퇴원 시 아기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어서 생후 6개월이 지나고 몸무게가 10kg이 넘으면 기도확장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아기는 퇴원 후 약 한 달 정도를 넘기고 급작스럽게 사망하였다. 사망의 원인은 호흡기 문제였다.

(사례7) 영양부족

필리핀 출신의 마미린(가명)은 안산의 산부인과에서 딸아이를 출산하였다. 2.3kg의 저체중아로 태어난 아이는 자연분만으로 태어나기는 했으나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이었다. 마미린은 초기에 아기를 위해서 모유를 먹였으나 아기가 설사를 하고 체중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겨 병원 진료 후 분유를 먹이게 되었다. 당시 일반분유보다는 아기들이 선호하는 수입 분유를 먹이라고 권유받아 산모는 힘든 가정형편에 한통에 분유를 먹이게 되었다. 남편이 혼자 벌어서 본국 가족과 현재의 가족생활을 꾸려야 하는 상황에서 아기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지역단체의 지원으로 일부분을 해소하기는 했으나 장기적으로 아기를 양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산모는 결국 아기양육을 포기하고 아기를 본국의 시부모에게 보냈다.

(사례8) 심장병

린(가명)은 한국에서 태어난 베트남 이주 가정의 자녀로 4개월 된 여아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국에서 만나 결혼하였다. 아기의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은 생후 3주 때 BCG 접종을 하러 인근 병원에 갔을 때였다. 소아과에서 좀 더 큰 진료기관으로 가서 진찰받을 것을 권유받은 부모는 소아과를 찾아갔다. 소아과와 흉부외과 진료를 통해 린의 병명이 '심실 중격 결손'과 '동맥관 개존증'임이 밝혀졌다. 심장에 두개의 구멍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수술을 권유받은 부모는 병원에서 초기에 이천만원이라는 수술비에 집으로 발길을 돌렸으나 다시 병원의 입원허가 전화를 받고 아기를 입원시켜 수술을 받게 하였다. 수술 후 인공호흡기를 달기도 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2) 영유아 보육기

이주가정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사설 시설을 제외한 국공립 시설에서 보육 받기 힘들다. 국민의 자녀가 아니기에 우선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모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른 보육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는 합법적인 체류자의 자녀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주가정 아동이 집 근처의 보육시설에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며, 가정형편에 따른 보육료지원, 물품지원 등이 필요하다.

난민가정은 부모가 난민이기에 본국 대사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자녀가 태어나도 무국적자이다. 부계혈통을 따라 국적을 올리도록 하고 있으나 부모가 서로 국적이 다른 경우 아버지의 혈통을 국적을 올리는 것도 양계혈통주의를 따르고 있는 국내법상과도 일치하지 않아 어느 일방 국가로 호적을 올리는 것이 무리이다. 일반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정 역시 자녀가 태어나도 출국 이전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 따라서 아동들은 일시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국적을 갖지 못하며,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정의 아동은 외국인등록이 안됨으로 인해 미등록외국인체류자로 살아가게 된다. 한국은 혈통중심으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국내 출생 이주가정 아동에게 국적이나 영주권 등 법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주가정 아동의 삶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내 출생자와 기타 이주가정 아동에게 어떠한 형태라도 체류허가가 주어져야 한다.

(3) 학령기
학교등록에 있어서도 2003년 5월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출입국 사실증명서나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학교 입학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전월세 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초·중등학교 교육법 시행령 제75조(귀국 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따르면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는 제68조 및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장의 재량이라는 단서가 붙는 현실은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입학 · 졸업 · 진학 · 전학 등에 있어 제한이 있다. 그 책임을 학교장이 아닌 상위기관에서 질 수 있도록 하며, 제도적으로 명확한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외 출신 이주가정 아동은 초기 학교적응이 순조롭지 않다. 한국어교육의 기회를 따로 갖지 못하여 학습을 따라 가기가 힘들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맺는 인간관계(교우, 교사 등)와 교과목들, 문화적 차이, 편견 등에 의해 갈등한다.

(사례9) 진학
아난드(가명)는 몽골 청소년으로 한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였다. 부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아난드가 중학교에 다닐 때 이혼하였다. 이혼 후 어머니는 몽골에서 살고 계시며 아난드는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서 거주하며 학교를 다녔다. 아난드는 학교에서 학업성취도가 높고, 반에서 임원을 맡는 등 교우관계도 좋다. 교사가 모두 칭찬을 할 정도로 모범생이다. 아난드의 외모도 한국학생과 차이를 느낄 수 없고, 적극적인 학교생활은 청강생으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로 입학한 학교에서 졸업장을 주겠다는 결정을 내릴 정도다. 아난드는 올 초 중학교를 졸업하고 인근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그러나 입학을 앞두고 아난드는 몽골로 돌아갔다. 몽골로 간 아난드는 긴 한국생활에서 자국의 언어가 미숙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현재 몽골어를 교습 받고 있다. 7년 만에 돌아간 본국은 무척 낯설고 친구도 없어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사례10) 학년 배정

빌게(가명)는 초등학교 6학년인 몽골 여아다. 빌게는 16세이다. 초등학교 입학당시 한국어 실력이 낮아 자기 나이 보다 낮은 학년에 배치되었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아동들과 공부해야 하고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위축감이 커 학교에 결석도 잦았다. 일 년 간을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하다가 현재는 졸업을 목표로 열심히 학교에 다니고 있다. 빌게는 같은 반 교우보다 세 살이나 많아 정서적인 차이가 있어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한다. 올 초에 초등학교를 중단하고 중학교로 입학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일단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진학문제를 고민하기로 하였다. 빌게는 일하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동생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며 학교에 다니는 바쁜 생활을 한다. 연예인이 되는 것이 꿈이 빌게는 자신이 외국인이고 미등록이라서 차별 받는 다고 생각한다.

(사례11) 이주가정 아동 노동

학교 안의 이주가정 아동 외에 학교 밖의 이주가정 아동은 대부분 노동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다. 중·고등학교 연령의 이주가정 아동은 현장에서 낮은 임금의 임시직으로 장시간 일한다. 부모들의 지원 외에는 사회적인 지원이 없기에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아동들은 교육받기를 포기하게 된다. 들어(가명)는 동네에서 홍보 전단지 돌리는 일을 한다. 공부를 하고 싶지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다. 특히 중학교를 졸업해도 고등학교에 진학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이후로는 중학교 학업을 포기하였다.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함과 더불어 가정상황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하며 노동현장에 있는 이주가정 아동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4) 기타

이주가정 아동이 학교에 적응한다 해도 이들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 불법체류자라는 낙인이 미래를 꿈꾸지 못하게 한다. 교육의 기회를 허용한다면 관련법에 의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 중·장기 동안 교육받은 이주가정 아동은 언어를 비롯한 문화이해가 높다.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이주가정 아동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정착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례12) 부모와 아동의 강제출국

지난 2006년 2월 20일, 몽골 출신 미등록이주노동자와 미성년 자녀 아기(가명)가 불법체류로 단속 되었다. 집까지 정확히 파악한 경찰이 밤 11시 30분경 집을 찾아와 이들을 데려간 것이다. 경찰은 이들을 곧 바로 아기출입국관리소에 넘겨졌다. 여권을 변조한 혐의도 있다. 함께 연행 된 아기(15세)는 미성년자이다. 아기가 비자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기는 엄마를 따라 한국에 왔다. 자신의 의지로 불법 체류를 하였거나 한국의 실정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이 아이는 다만 엄마를 따라 한국에 온 것뿐이다. 그러나 아기는 엄마와 함께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출입국관리소에 넘겨져 보호소에 수감되고 말았다. 면회 신청 후 아기와 아기엄마를 면회하였다. 아기는 "밤에 한숨도 잠을 자지 못 하였어요 나 여기 있기 싫어요, 나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했다. 아기는 현재 초등학교 5학년에 올라간다. 아기는 "학교에 계속 다니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고 호소하였다. 아기가 연행된 소식을 들은 아기지역 이주 아동들은 학교 가기가 무섭다고 한다. 학교 입학과 새 학년이 되는 부푼 꿈을 꾸고 있는 수많은 이주 아동들에게 아기의 단속 이야기는 공포 그대로였다. 아기의 소식을 전해들은 이주 아동들은 학교 가기가 무섭다며 마음을 졸이고 있다.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아동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미성년자가 연행되고, 출입국 보호소에 수감되고, 강제 퇴거 조치되는 일은 불행이다.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아동인권협약의 정신에 따라 이주가정 아동의 인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3. 다문화 가정과 아동의 권리 보장

아동의 권리란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제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 성인의 권리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동의 특성상 다른 점이 있다. 아동의 권리는 아동의 자격으로서 승인되는 아동 고유의 권리와 인간의 자격으로 승인되는 일반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아동 고유의 권리라는 것은 아동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신체적 요구를 법적으로 승인하는 것이고, 그 내용적 원칙은 아동이 인격을 전면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생존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아동의 권리에는 국제결혼 자녀든, 미등록 가정의 자녀든 상관없이 모든 다문화 가정의 아동을 포함 하는 권리이다.

1) 국제 법으로서 아동권리 협약

(1)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어린이 관련 인권 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연 본 협약은 2003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91개국의 비준을 받음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법이 되었다.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의 정부는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유해한 것으로부터의 보호받을 권리, 학대받고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참여의 권리, 문화적·사회적 삶에 대한 권리 등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협약의 이행상황을 처음 비준한 후 2년 후, 그 후에는 매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비준 국들은 각 나라의 다양한 전통문화나 국내법 체계,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협약의 일부만을 수용, 실천해서는 안 된다.

1948년: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 채택 (아동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나 어린이만을 위한 별도의 선언은 채택하지 않음)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1959년: 유엔총회에서 어린이권리선언 채택 (서명 국가들에 법적 의무 없음)
1978년: 폴란드 정부, 아동권리협약의 초안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
1979년: 유엔인권위원회, 세계아동의 해를 맞아 실무팀 구성하여 각국 정부의 의견 조정, 협의
1989년: 11월20일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
1990년: 10월 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법으로 효력 발휘
2002년: 5월 유엔총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2개 선택의정서 채택
-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 아동의 매매, 매춘,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2003년: 191개 나라가 협약을 비준

2) 국내법

(1) 다문화가족 지원법

2008년 9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령 하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의 협의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 법에서의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 등과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 가족 등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서 국제결혼 가정, 입양, 귀화 허가 가족은 이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배제된다는 배타적 의미를 갖는다. 이 법이 입법될 당시에 그 대상에는 이주민이 당연히 포함되었으나 정부의 동화와 배제정책의 결과로 이주민과 그 가족이 배제되고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와 자녀만이 대상이 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였다. 결국 다문화가족지원법이란 결혼이민자를 한국에 동화시키려는 지원법이 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이주가정 아동이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의 모법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까지 진행된 수차례의 개정작업에서 이주가정 아동에 대한 명시가 배제되어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제3항과 제4조 제5항에 의하면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야 하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하며,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의 적용대상에는 모든 이주가정 아동이 포함되지 않으며 한국국적을 가진 아동으로만 제한되어 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정부의 제2차보고서 제출에 따른 권고로 '모든 외국인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국내법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상태이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에 이주가정 아동 관련 법조항을 규정해야 하고, 법 규정 전에도 아동복지법의 이주가정 아동관련 사항 중 일정조치는 해석을 통하여 모든 유형의 이주가정 아동에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3)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권

학교장 재량에 맡겨진 전입학 처리문제와 상급학교 진학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졸업장이 아닌 수료증 혹은 본명과 다른 이름의 졸업장이 주어지기도 한다. 18세 이하의 모든 이주가정 아동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는 초중등교육권이 법률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명시적인 교육접근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주가정 아동은 일선 학교의 학교장 재량으로 입학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 경우 학교장이 다른 학생이나 학부모의 편견을 사례로 들면서 입학 허가를 거부하더라도, 이에 대한 현실적인 불복 또는 구제방법이 없다. 더 나아가 부모의 미등록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협박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 정비, 특히 법률로써 미등록 이주가정 아동의 교육 접근권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미등록 이주 아동 교육권의 법적 근거

① 세계 인권선언

<제 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제 24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29조>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성명, 출생등록 및 국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②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해당국의 국민과의 평등한 대우를 기초로 하여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다. 어느 부모의 체류 또는 취업이 비정규적이라거나 취업 국에서의 자녀의 체류가 비정규적임을 이유로 공립의 취학 전 교육기관이나 학교의 입학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제30조)고 규정하여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내외국인이 동등한 교육 접근 권을 가지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③ 유엔아동권리협약

첫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든, 미등록 이주가정 아동이든 모든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아동권리협약 제2조) 나아가 비차별의 원칙은 국가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그들의 권리의 인정과 실현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개별 아동과 아동 집단을 찾아낼 것을 요구한다. 차별을 가져오는 조건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입법, 행정,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특별 조치를 채택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있다.

둘째,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최우선적 고려사사항으로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에 의한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모든 입법 행정 및 사법 기구나 기관은 아동의 권리와 이익이 어떻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한다.

셋째, 생명에 대한 아동의 고유의 권리와 가능한 최대한으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할 당사국의 의무(아동권리협약 제6조)를 규정 한다. '발달'은 총체적인 개념으로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도덕적, 심리학적 및 사회적 발달을 포함하는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조치들은 모든 아동이 최적의 발달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넷째, 당사국 정부는 모든 아동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초등교육을 의무화해야 하는 한편,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아동권리협약 제28조)

(2) 국제법과 국내헌법과 불일치 문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즉 한국은 헌법에 명시된 국제법 존중주의에 의해 한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조약 등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인권보장 역시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인종 차별 등에 관한 명시 사항이 헌법 조항에서 발견되지 못하다.

다만, 한국 정부는 2003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를 개정하여 미등록 이주가정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하였다. 이주가정 아동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개정 2006.6.12, 2008.2.22)

그러나 미국의 경우 미등록 이주가정 아동의 교육 접근 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들이 적어도 다음의 사항은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관련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미등록 이주가정 아동의 권리 접근성을 방해하는 기존의 교육권 관련 법제 및 관행(예컨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학력 등까지도 요구하는 생활기록부 등)의 개선과 적절한 수위에서의 권리보장 장치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 교육접근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 체류자격과 관련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학교 차원의 신분증을 부여하여야 한다.
- 예방접종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는 있다. (다만, 의료상 혹은 종교상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
- 거주의 증명이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는 있다. (출생신고서, 병원기록 혹은 진술서로 나이를 증명할 수 있다.)
- 특별프로그램의 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 무료급식을 신청함에 있어, 학교는 아동의 부모와 연락하여 부모의 신분증이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수 있지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미등록 부모의 경우 단지 관련 신분증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 출생신고서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체류자격을 질의하거나 관련 서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 미등록 지위에 기초하여 학생들이 다르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 부모나 학생의 지위를 노출시킬 수 있는 질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지위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의 참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 교육에 접근함에 있어 두려움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른 규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 신분증의 신청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 미등록 이주가정 아동과 관련하여 출입국당국을 접촉하거나 출입국당국이 영장 없이 학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 지역에서의 교육접근권의 위하여 부모 아닌 보호자로 하여금 법적 후견인의 지위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안 되고, 아동에 대한 책임의 수용을 확인하는 공증문서로 충분하다.

(3) 이주가정 아동의 국적 적용 논쟁

이주가정 아동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국적의 권리에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결혼 이민자의 이중국적의 허용뿐 아니라, 한국에서 출생한 이주 가정의 자녀에게 속인주의를 적용하여 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는 속인 속지주의적인 국적 허용제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적 허용은 곧 아동의 권리가 국민에 준하여 적용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적적용기준 유형별 모형

	국적적용기준	실행국가	정책내용사례
A형	속지주의	미국, 호주 등	미국은 이주민에게 일정한 심사기준을 정해 영주권과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주민을 포용하기 위한 이민정책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음
B형	속인주의	한국, 대만 등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국적을 보유한 부 또는 모에게서 출생되거나, 귀화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음
C형	속인주의+자국동포	일본	일본은 단순 노동력에 대해 폐쇄적인 정책을 펼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국적적용기준	실행국가	정책내용사례
	인정	(니케이진)	치다가 내수산업의 기피현상으로 인해 90년대 이민법을 개정하여 일본계 외국인(뉴커머)의 합법이주를 허용함
D형	속인+속지주의	독일, 프랑스 등	독일의 경우 외국인법과 국적법이 제·개정되면서(1999년) 속인주의에 속지주의가 결합되어 2000년도부터 외국인 부부의 자녀도 국적취득이 가능함

C형 국가로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혈통을 중시하여 속인주의를 취하지만 장기간 거주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를 자국민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도입한 일본을 꼽을 수 있다. D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인정하는 국가들로 독일과 프랑스 등이 속해있으며, 독일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이민국가'라는 정식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하고 있지만 이미 국적법과 이민법 등을 개정하여 국적부여에 대한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고 있다. 국적부여 방식이 근간에 변형된 C형과 D형의 경우, 대부분 국가경제의 성장을 꾀하는 등의 이유로 외국의 인적자원을 도입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4. 다문화 가정 지원 대책 및 과제

1)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정책

과 제	'08	'09	'10	'11	'12	소관 부처
학습 및 학교생활 지원						
[1] 이민자 2세 학습 지원						
이중 언어 교육환경 조성	■	■	■	■	■	교육부
한국어교재 및 학습교재 개발	■	■	■	■	■	교육부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지원 강화	■	■	■	■	■	복지부
[2] 이민자 2세 학교생활 지원						
다문화교육 지원체제 구축 강화	■	■	■	■	■	교육부
다문화교육 담당 전문 인력 양성·배치			■	■	■	교육부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	■	■				교육부
사회적응 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						
[1] 이민자 2세 사회적응 지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	■	■	■	■	교육부
다문화청소년 종합지원 모델사업	■	■	■	■	■	복지부
종합정보 제공 강화	■	■	■	■	■	복지부
진로상담 강화	■	■	■	■	■	교육부
다문화청소년 전문가 양성	■	■	■	■	■	복지부
[2] 이민자 2세 자립능력 배양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과 제	'08	'09	'10	'11	'12	소관 부처
청소년 자활지원관 사업 대상에 포함						복지부
다문화교육 관련 분야에 활용						교육부

2)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1) 다문화 국제결혼 가족 자녀대상 지원 서비스

다문화 국제결혼 가족과 자녀를 위한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을 받은 '아동양육 도우미 사업',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받은 '다문화 교육 강화 등 학교생활적응 지원 사업', 농림부의 지원을 받은 '방문교육도우미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다문화 국제결혼 가족 자녀대상 지원 서비스

사업명	서비스 내용	부처	서비스 기관
자녀양육지원 프로그램	① 부모교육시 아동보호: 돌보미방 운영, ② 문화, 예술, 놀이를 통한 자녀지원 ③ 자녀학습능력 향상: 방과후 학습 등 ④ 지역 내 보육시설 연계 및 일시보호 ⑤ 대학생 멘토 매칭으로 학습 지원 ⑥ 다문화 영유아 언어발달 지원 ⑦ 자녀대상 한국어, 영어, 결혼이민자 출신국어 교육 ⑧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보건복지 가족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앙 및 지자체 관련기관 사회단체/학교 광역/기초지자체 지자체산하기관 전국 보건소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아동관련서비스	①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정보 제공 ② 건강검진 및 출산시 병원 방문 ③ 산후 가사도우미 지원 ④ 자녀들의 언어지도 ⑤ 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 ⑥ 아동양육기술 지원 등 ⑦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⑧ 아이돌보미사업	보건복지 가족부 교육인적 자원부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① 아동상담 및 학습지도 ② 자녀건강 관리 ③ 인성 및 생활지도 ④ 보육시설 및 취학준비 지원 ⑤ 양육상담 및 육아방법 지도 ⑥ 가족대상 문화이해교육 ⑦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 ⑧보육시설에서의 다문화 프로그램 확대, 강화	보건복지 가족부 교육인적 자원부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 대책	①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개설 지원 ②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 확대 ③ 교사 및 또래 집단과의 1대 1 결연을 통한 자녀의 정서적 안정 도모 ④ 소수자 배려 교육,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교육 등 교육연수 강화 ⑤ 교육과정 개정시 중3 도덕교과에 '타문화 편견 극복' 단원 포함, ⑥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단위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등	교육인적 자원부	-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다문화교육추진 체계구축	① 현행교과서 검토, 분석하여 인종차별적 교육요소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수정 ② 다인종, 다문화의 내용을 담은 보완자료 초·중·고 보급 ③ 대학의 사회복지, 가족분야학과의 교육과정에 다문화가족 인권 및 다문화관련 내용포함 권고	교육인적자원부	-
방문교육 도우미사업	농업인인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영유아 양육지원, 출산농가 농가도우미 지원	농림부	-
결혼이민자 자녀지원 기능 강화	① 학교생활 안내 리플렛 다언어로 제작·배포 ② 이중 언어 학습지원 ③ 교사 및 또래 집단등과의 교류 활성화	교육인적자원부	-
집단따돌림 예방	① 학급중심 소집단 그룹 활동 활성화 및 상담 네트워크 구축 ② 집단따돌림예방 자정운동 등	교육인적자원부	-
육아정보 나눔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내 육아정보 나눔터 설치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단체/학교
자긍심 향상 프로그램	부모-자녀 자긍심 향상 프로그램	보건복지가족부	-
아버지육아교육	다문화가족 남편 육아교육 프로그램	보건복지가족부	-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사업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중심으로 소규모보육 시범지역 지정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시설 미설치 농어촌지역
교재, 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및 사회통합, 일반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및 이해 제고를 위한 교재, 교육, 교수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인적자원부	서울대학교 지정, 운영,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정책연구학교(12개교)지정· 운영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결손, 정체성 혼란 방지를 위한 학교단위교육모델개발 및 실행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을 포함한 12개 시, 도

* 2009년 1월 4일~ 6일 까지 정부정책포털사이트,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관련 정부부처 웹사이트, 다음, 네이버 등에서 검색한 자료임. 출처: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미등록이주가정 아동의 권리에 대항 실태조사, 2008.

(2) 문화 활동 지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거주 이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은 문화행사 개최, 다문화체험, 문화유적 답사, 캠프,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한 도서관 운영, 내·외국인 교류를 통한 상호문화의 이해 도모, 도서 지원 등이 있다. 문화 활동 지원은 이주민 및 가족과 아동이 한국의 전통 및 현대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스스로 구성하면서 문화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실시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활동 지원

지원 대상	프로그램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담당기관
가족	외국인 대상 문화사업 확대 및 지원 강화	- 체류외국인의 국내 적응 지원	- 한국문화 체험 캠프 운영	서울특별시 교육청
가족	다문화인식개	- 결혼이민자들과 지역	- 유관기관별 프로그램전시, 다문	전국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지원 대상	프로그램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담당기관
	선사업	사회 구성원들에게 다문화 체험기회를 제공 - 문화교류 활성화 및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화음식체험, 다문화의상체험, 결혼이민자 나라의 전통 공연 및 결혼이민자 가족 노래자랑, 무료 건강검진코너 운영, 각국 음식 만들기-결혼이민자 출신국의 대표적인 음식 판매 - 다문화 인형극 공연, 다문화 동화책과 UCC 제작 및 보급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아동	자녀지원 사업	-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어머니 나라를 이해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토록 하기 위함 - 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지원	- 한국문화 적응교육 및 체험 교육 - 부모교육시 자녀보호 및 놀이지도 - 다문화청소년연극교실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아동	그림책 / 동화책 수집·지원	- 이주여성가정의 자녀양육지원	- 그림책과 6세 이하용 동화책을 기증받아 각 가정에 지원	전라북도 완주군
가족·아동	다문화 북스타트	- 평생학습의 차원에서 이주여성들의 자기실현 고취 - 다문화가정자녀들이 어머니의 모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 - 이주가정 아동들이 일반 아동들과 차별없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함	- 다국어 오디오북 제작을 통해 이주여성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모국어에 대해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함 - 이주여성들이 직접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도서관을 방문하는 일반 아동 및 그 가족에게 다양한 문화를 체험토록 하고 편견을 줄임	청주 기적의 도서관

출처: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미등록이주가정 아동의 권리에 대한 실태조사, 2008.

(3) 지방자치단체의 상담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프로그램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담당기관
성인	외국인 대상 무료 법률상담	-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법률문제들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외국인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국제도시 인천으로서의 위상 증진	- 임금체불, 비자, 이혼, 국적취득, 퇴직금 미지급 등과 관련된 법률문제 상담 및 해결방안 제시	(재)인천시 국제교류센터
성인	이주민종합	- 결혼이민자 가족들의 안정적인	- 외국인 근로자에 대	충청북도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지원센터	국내 정착과 한국사회에서의 조기적응을 돕고자 함	한 산재, 인권 등 각종 상담	음성군
가족·아동	다문화가정 자녀 심층지도방안 마련	- 다문화 가정 아동을 둘러싼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교육의 애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해와 협조의 관계 설정을 통해 다문화 가정 아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인 다문화가정 방문교사제 운영	경상남도 교육청
가족·아동	가족상담	-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심리, 정서적으로 지지함 - 상담을 통한 결혼이민자 내부 스트레스 완화와 자존감 향상을 지지함	- 심리정서지원(개인, 가족 상담) - 정보자료제공 - 센터프로그램 연계 - 쉼터입소 - 전문기관연계(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어린이집, 학교, 법원, 복지관, 지자체, 기타)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출처: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미등록이주가정 아동의 권리에 대한 실태조사, 2008.

(4) 인식개선활동

지방자치단체의 인식개선활동

지원 대상	프로그램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담당 기관
전체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 세계화에 따른 타문화 이해 등 국제이해교육 강화	- 국제이해교육센터 설립 및 학부모 교육 - 시범학교 지정 운영 및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참여 등 국제이해교육 강화	대구광역시 교육청
전체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 한국유네스코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 교실(CCAP)', '유네스코 협동학교 사업' 등에 초·중·고 참여 - 참가학교별 외국인 자원봉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자국의 역사·문화에 대해 강의·토론 및 평가작업	부산광역시 교육청
전체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	- 국제결혼자녀 또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등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	- 다문화가정 자녀 편견해소를 위한 장학자료 발간·보급(초등 교사 1인당 1부, 총 26,000부 제작 배	서울특별시 교육청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이미지와 편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 사전 예방	부)	
전체	다문화인식개선사업	- 결혼이민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의식을 갖게 함 - 다문화에 대한 인정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문화교류 활성화 및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주민서비스 박람회에 참석하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세터의 활동에 대해 홍보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함 - 다문화강사를 학교와 유치원에 파견하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인식개선교육 실시 - 다문화캠페인과 언론매체 인터뷰 등 홍보활동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처: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미등록이주가정 아동의 권리에 대한 실태조사. 2008.

(5) 지방자치단체의 이주가정 아동의 경제적 지원

이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지원으로 최저생계급여와 급식비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 성동구는 이주노동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주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울산광역시 북구는 '저소득 외국인 복지 분야 지원'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된 저소득 외국인에게 최저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적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의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어 등록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 아동의 경제적 지원

지원 대상	프로그램 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담당기관
가족 · 아동	이주가정 아동 급식비 지원	- 결식이 우려되는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들의 학습활동과 현실적응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고자 함	- 자녀 급식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 · 아동	저소득 외국인 복지분야 지원 추진	- 저소득층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계형 범죄 등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 사회안전망 구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후 자녀교육비 등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후 최저생계급여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3) 미등록 이주가정 아동 정책과 과제

(1) 정부 차원의 미등록 이주가정 자녀교육 지원 정책

이주가정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한국정부의 첫 번째 시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01 개정)'을 통해 초·중학교의 입학 등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2003년 5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나 외국인 등록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이주가정 아동들이 해당 지역의 거주사실 입증을 통해 입학이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현재 교육기술과학부에서는 외국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의 일환으로 이들의 자녀교육 지원 업무와 초·중등학교의 학생복지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2006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정신에 입각한 '제1회 외국인 정책회의'의 후속조치로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불법체류 아동의 건전한 선장을 위해 그 해 11월까지 자신신고자에 한해 2008년 2월까지 특별체류를 허가한 바 있다. 그리고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를 발족하여 이주민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07. 5. 17)' 제정을 통해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홍보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할 것과 이들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의 지원조치를 시행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정부 대책은 미등록 이주가정 아동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영역 조차 포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나마 이러한 미약한 조처마저도 주로 등록 이주민과 그 자녀 혹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등록 이주가정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구비현황은 매우 열악하다. 그나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의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미등록 이주가정 아동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것을 제외한다면, 체류권, 부모와 살 권리, 사회복지보장의 권리, 보호받을 권리 등과 같은 전반적인 아동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보장 방안은 없다.

(2) 미등록 이주 가정 자녀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주요영역	교육받을 권리	- 초·중등 교육권의 법적 보장과 상급학교 진학권의 보장 - 미등록 이주가정 아동 거점학교의 운영 -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 보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호받을 권리	- 미등록 이주가정 아동이 단속되어 강제 출국되는 조치의 금지 -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체류자격과 관련된 비밀의 보장 - 미등록 이주가정 아동의 불법노동을 예방하기 위한 소득지원과 불법고용의 단속 - 지역사회 안전망의 연계를 통한 위기 미등록 이주가정 아동 지원체계 구축
	부모와 살 권리	- 부모와 자녀 간 상호 면접권 보장 - 한시적 아동후견인 제도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다문화 민족사회에 대한 차별 인식의 변화 노력의 제고 - 신분증 (청소년증) 발급과 학생권리의 평등한 보장 - 활동프로그램을 통한 의식제고와 역량개발지원
	사회복지의 권리	- 미등록 이주가정 아동의 사회복지권리 보장을 위한 국내법 근거 마련 - 거점 이주가정 아동 복지센터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 미등록 이주가정 아동 보육시설의 육성과 영유아 성장도우미(보육교사) 파견서비스 - 무연고 미등록 이주가정 아동 보호 및 자립지원 추진 - 미등록 이주가정 아동 특화형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운영
	체류할 수 있는 권리	- '재류특별허가제'의 탄력적 활용 - 한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그린카드제의 도입 - 자발적 귀환 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 - 속인주의 속지주의 국적 병합 운영

<출처: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미등록이주가정 아동의 권리에 대한 실태조사, 2008.>

■ 한 번 더 생각하기 – '코레코레아'

남태평양 키리바시는 33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인구는 8만5천~9만 5천이다. 꼬레꼬레아 실태는 지난 2004년 11월 태국 방콕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주최로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동, 아태 지역 계획 이행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카바라시 NGO가 '꼬레꼬레아' 실태를 폭로하였다. 청소년 위원회가 지난 2005년 6월24일~27일에 실태 파악에 나섰다.

타라와(면적 811㎢)는 한국 선박이자주 정박하는 인구 1만의 도시이다. 카라바시와 한국과의 관계는 지난 1980년 12월 어업협정을 맺었고, 어업수입은 1천만 달러였다. '코레코레아(Korekorea)'는 한국선원과 성매매를 하는 카바라시 여성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지난 1995년부터 생기기 시작했다. 성매매의 개념이 없던 나라인데, 한국 원양어선이 정박하면서 선원들에 의해 성매매가 이루어졌다. 카바라시에 한국인이 처음 매매춘을 퍼트린 것이다.

코레코레아 여성의 나이는 16~20세 사이로 18세 이하가 전체의79%에 달한다. 이들 대부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

분은 초등학교 교육만 받고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서 살아가고 있다. 한국인 선원들을 상대하는 '꼬레꼬레아'는 대략 30~50명 수준으로 이들은 대부분 빈곤층 출신 아동 등 미성년자들이다. 대부분의 가정은 수입원이 일정치 않으며, 코레코레아 부모들은 수도인 타라와가 아닌 다른 섬에서 돈 벌이를 위해 기거하기도 한다.

한국선박이 정박하는 베시오 부근에서 클럽이나 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 클럽 등에서 파트너가 결정되면 보트를 타고 한국 선박으로 가서 성매매를 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성매매 비용은 1회당 50호주달러(4만원)~100호주달러 이다. 술 담배 옷가지 등의 현물을 받기도 하였다. 카라바시는 50%가 실업자이다. 한 달 노동자들의 수입은 8만 원 정도이다. 카라바시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코레코레아를 만들게 한 한국 선박의 입항을 막으려는 시도도 했다. 코레코레아 2세는 현재 5명 정도 잇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마련된 '아동 성착취 관련 유엔아동기금 보고서' 초안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아동인권 가해국'에 포함됐다.

Copyrights©DAOU Tech Inc,All Rights reserved